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朝鮮不動産用語略解》 번역
**Translation of Terms of Real Estate
in the Traditional Korea**

2006. 10.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朝鮮不動産用語略解》 번역
**Translation of Terms of Real Estate
in the Traditional Korea**

연구자 : 鄭 肯 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Jung Geung Sik
田中俊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Tanaka Toshimitsu

2006. 10.

국문 요약

본서는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朝鮮不動産用語略解》에 대해 간단한 해설과 함께 번역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에 앞서 法典調査局과 中樞院 등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입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제도와 관습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다. 다른 한편 위와 같은 목적 외에 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관습을 조사하였다. 《조선부동산용어약해》는 바로 토지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관계를 정리하는 부서에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1911년 9월부터 1913년 3월까지 朝鮮總督府 官有財産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별도의 자료로 만들었다. 1913년 3월 조선총독부 土木局에서는 이와 별도로 같은 목적의 조사를 하여 휴대하기에 편리한 오늘날 수첩 크기의 袖珍本으로 발간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위 두 조사를 함께 종합·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조선부동산용어약해》에는 모두 59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관청 및 이와 관련되는 토지에 대한 항목으로, 무려 284개에 이른다. 그리고 사물의 명칭 등이 13개이며,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든 한국인에게든 자명한 地名 등이 10개이다.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게 부동산 또는 일반적 법률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296개로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내용적으로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본서의 사료적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분적으로는 지금은 사라진 우리 고유의 법률용어가 남아 있다. 예

로서 현재 ‘小作’에 해당되는 “半作, 分作, 並作, 打作”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고유의 법률용어를 복원하는데 하나의 전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것보다는 조사내용에서 간취할 수 있는 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조선총독부의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러한 용어집을 발간한 목적이 더 중요하다. 조선의 재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예산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관청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조세제도는 문란하였으며 국민들이 관청의 경비로 세금을 납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편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유지를 창출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시급한 과제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朝鮮不動產用語略解》가 발간된 것이다.

※ 주제어 : 조선총독부, 관습조사, 제도조사, 부동산 용어, 식민지배

Abstract

Translation of Terms of Real Estate in the Traditional Korea

This book is a translation of *Terms of Real Estate in the Traditional Korea* with simple explanations. The General Government in Korea was investing Korean customs and institutions to prepare new legislations in colonial society. Also due to practical purpose, executive departments of the General Government in Korea researched customs and institutions independently. So *Terms of Real Estate in the Traditional Korea* was published in 1913.

There are 590 titles in this book. Especially, names of institutions of Chosun Dynasty and general terms which commons know their meaning easily nowadays are about 300 titles. In some sense, original terms concerning real estate and laws are half. So it is not new in content.

But this does not devaluate its value as historical materials. In part, there are some Korean proper legal terms which were disappeared presently like *Panjak*(半作), *Punjak*(分作), *Pyongjak*(竝作), *Tajak*(打作) instead of *Sojak*(小作) and so on. So this book is important to find and reuse them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In addition, we need to focus on the purpose of this book. The General Government in Korea investigated land tenure in Korea, he made many lands public properties, and they became government ownership. In

this process, they had to understand public finance and land system in Chosun Dynasty. Owing to this present and practical demand, he published this book quickly in early colonial period.

※ KeyWords : The General Government in Korea, Investigation of Customs, Investigation of Institutions, Terms of Real Estate, Colonial Rule in Korea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편 解説 :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意義	
I. 머리말	11
II. 본 론	15
1. 서지사항	15
2. 편찬방법	17
3. 내 용	19
III. 맺음말	23
제 2 편 翻譯 : 朝鮮不動産用語略解	
일러두기	27
세목차	29
凡 例	41
본 문	
(ㄱ)	43
(ㄴ)	65
(ㄷ)	68
(ㄹ)	74

(口)	74
(日)	83
(人)	90
(〇)	107
(ズ)	128
(ズ)	143
(フ)	146
(E)	146
(V)	148
(〇)	153

제 1 편 解說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意義

I. 머리말

II. 본 론

III. 맺음말

I. 머리말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한국의 관습을 조사하였다. 일본은 관습을 조사하기 위해 統監府 시절에는 ‘不動產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을, 그리고 朝鮮總督府 시절에는 ‘取調局’, ‘參事官室’, ‘中樞院’ 등을 설치하였다. 통감부에서는 민법전을 편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朝鮮民事令의 개정 등 입법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관습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¹⁾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목적 외에 눈앞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관습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행정부서에서 수행하였다. 그 목적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응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내용은 전문기관의 조사에 비해 양적으로나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수준이 낮고, 또 체계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관습조사는 한편으로는 법전조사국과 중추원 등 전문적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는 물론 일선 행정관서에서 조사한 것들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朝鮮不動產用語略解》는 조선총독부 官有財產班에서 조사하여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朝鮮總督府月報》 明治 44年(1911) 9月 第1卷 第4號부터 大正 2年(1913) 3月 第3卷 第3號까지 게재한 것을謄寫하여 별도의 자료로 만든 것이다. 관유재산반은 이름 그대로 조선시대 각종 관청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여 국유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그 조사내용은 부동산 일반에

1)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에 대해서는 鄭肯植, 『日本の慣習調査와 그 意義』,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205-257면 참조.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각종 관청에 대한 내용도 상당하다.

조선시대의 국가재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기본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려말 조선을 건국한 신홍사대부는 科田法을 제정하였다. ‘과전법’은 收租權的 土地支配로, 국가에서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이것으로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백성들로부터 국가의 세금을 직접 거두었다. 즉 관료들은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녹봉 대신에 받은 것이다. 그리고 각종 국가기관은 국가로부터 현물로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직접 수취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토지는 ‘公廩田’이라고 한다. 과전법이 폐지되고 세조대의 職田法, 성종대의 官收官給法이 시행되어도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공해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세로 기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재정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²⁾

이러한 財政制度和 土地制度는 近代法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이상하였다. 공해전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였다. 특히 궁장토는 더욱 그러하였다. 국왕이 될 수 없는 王子와 公主, 翁主에 대해서는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궁에 허여하였다. 그래서 궁은 백성들로부터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이러한 현실이 몇 백 년 동안 지속되면서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였다. 특히 1900년대 이후 황실에서 지주경영을 강화하면서 이들 토지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었다. 즉 궁에서는 자신을 토지소유자로, 소유자인 백성들을 경작자로 인식하여 이전과는 달리

2) 이상의 논의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거칠게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泰永, □□朝鮮前期 土地制度史 研究 : 科田法體制□□(지식산업사, 1983); 李景植,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朝鮮前期□□(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등 참조.

고을의 차지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작하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토지소유자로 인식하여 고을의 차지료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³⁾

이러한 저간의 역사적·현실적 사정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불명확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통감부에서는 토지에 대한 법제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부동산법조사회’와 ‘법전조사국’에서는 1906년부터 1908년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례를 조사하여 9종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⁴⁾ 그리고 합방 후인 1920년에는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면서 법전 등 각종 문헌을 섭렵하여 和田一郎이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를 간행하였다.⁵⁾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관례의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부동산법제의 정비가 일차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는 바로 토지조사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종래 토지조사사업의 ‘收奪性’이 강조되었지만, 현재에는 이는 실증적으로 거의 극복된 상태이다.⁶⁾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민유지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광범위한 국유지와 당시까지 소유관계가 불명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공유지는 ‘一物一權主義’의 근대법의 원칙에 따라 個人名義로 토지신고할 수 없어서 결국 無主地로 인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朴贊勝, 『韓末 驛土·屯土에서의 地主經營의 강화와 抗租』, □□韓國史論□□ 9(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3); 이규수,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회수운동』, 이규수 편, □□궁삼면토지회수투쟁□□(나주시문화원, 2002) 등 참조.

4) 정궁식, 앞의 글, 231면.

5) 이영호, 『조선시기 토지소유관계 연구현황』, 近代史研究會 編, □□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下) -朝鮮後期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울, 1987), 62면 참조.

6) 愼鋪廈, □□朝鮮土地調査事業 研究□□(지식산업사, 1982); 李永鶴 외,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 金鴻植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 배영순,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등 참조. 초기 신용하의 연구는 수탈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배영순의 연구로 실증적으로 극복이 되었다. 이영학 등의 연구와 김홍식 등의 연구는 光武 年間に 수행된 大韓帝國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정되어 국유지로 編入되었다.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총독부는 광범위한 국유지를 창출하였다. 주로 궁이나 각종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속된 토지는 그 성격이 민유지로 종래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조세를 직접 관청에 납부하였던 것이든, 아니면 원래 국유지로 조세가 아닌 地代를 관청에 납부하였던 것이든 모두 관청의 소유지로 하여 국유지를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관청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재정의 정리 및 토지조사사업에서 중요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관유재산을 정리하는 기관에서는 목전의 과제로 다가왔고, 비록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응급적으로 부동산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가 바로 《朝鮮不動産用語略解》를 발간하게 된 동기이며 배경이다.

7) 심희기, 『일본민법의 시행과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韓國法制史講義 -韓國法史상의 판례와 읽을거리-□□(삼영사, 1997) 참조.

II. 본 론

1. 서지사항

본 “不動産用語略解”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雪松文庫에 두 종류가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번호는 각각 “설송 333.33 C456”과 “설송 345.03 C456”이다.⁸⁾ 이 두 책은 본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며, 크기도 다른 전혀 별개의 책이다. 그러면 같은 제목의 책이 두 권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설송 333.33 C456”본에 대해 살펴보자. 이 책의 범례에 따르면 官有財産班에서 집무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조사하여 1911년 9월부터 1913년 3월까지 《朝鮮總督府月報》에 차례로 수록하였다.⁹⁾ 그 후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종합하여 필사하여 왔다.¹⁰⁾

필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1913년 3월에 다른 《朝鮮不動産用

8) 설송문고는 故 雪松 鄭光鉉(1902~1980) 교수의 기증도서이다. 雪松 鄭光鉉은 동경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평양승실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44년 4월 朝鮮總督府 中樞院 舊慣習制度調査課 研究員으로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조사를 하였다.

9) 《朝鮮總督府月報》는 1911년 5월 조선총독부 훈령 제41호를 근거로 발간되었다. ‘조선의 施政, 産業, 기타의 狀況’을 수집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文書課에서 발행하였으며, 게재할 기사의 내용은 조선총독부 내 각부 및 소속부서에서 수집하였다. 수록 내용은 ‘농업, 상공업, 지방행정, 植林’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조선통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1913년 11월에 수정되었는데, 발행목적은 “조선에서 施政 기타 제반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여 강화된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朝鮮總督府月報》는 1915년 2월에 《朝鮮總督府彙報》로 제호가 변경되어 3월부터 발간되었으며, 3.1독립 운동 이후인 1919년 8월 《朝鮮》으로 변경되어 1945년까지 발간되었다. 황민호, 『해제: 韓國近代 雜誌에 나타난 憲政·法律關係 資料의 傾向』, □□韓國近代 憲政·法律關係 資料集 I-朝鮮總督府 機關誌를 中心으로-□□(경인문화사, 2005), 33-9면 참조.

10) 통치의 필요상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의 관습과 제도 등을 조사하여 《朝鮮總督府月報》 등에 게재한 후 이를 다시 필사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 이는 본서 표지 우측 아래에 2행으로 “代筆寫/ (邦文 第十號)”라는 표기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語略解》가 간행되었다. 朝鮮總督府官房 土木局에서 관유재산을 조사함에 불편을 느껴 급속히 같은 서명의 책을 袖珍本으로 발간하였다. 이 수진본이 바로 “설송 345.03 C456”이다. 크기는 가로 9.5cm, 세로 15cm로 오늘날 수첩 크기와 비슷하다. 본문은 214면이며, 부록으로 한국[朝鮮] 연표가 있다.¹¹⁾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파본으로 1면에서 44면까지는 없으며, 45면부터 214면까지는 남아있으며, 부록은 한국·일본·支那(중국)을 비교한 연표가 있는데, 1263년(고려 元宗 4) 이하는 없다.¹²⁾ 그리고 표제어 배열순서도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인 “이로하(イロハ)”음순이며, 한자 표제어 아래에 한글로도 표기하였다.¹³⁾

조선총독부의 어느 기관에서는 《朝鮮總督府月報》에 게재된 위 관유재산반에서 수행한 작업을 정서하는 도중에 위 토목국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¹⁴⁾ 일단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토목국의 책을 반영하여 관유재산반의 책에서 누락된 것은 “補”로 뒤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번역대본으로 삼은 “설송 333.33 C456”이다.

본서의 크기는 가로 28cm, 세로 20cm이며, 표지 외에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 우측 아래에는 2행으로 “代筆寫/ (邦文第十號)”라는 표기가 있다. 이어서 한국에서 한문을 읽을 때 한자로 한글음을 표기하는 ‘口訣’이 2면에 걸쳐 있다. 그리고 凡例가 2면, 정오표가 1면, 50音順으로 일본어 색인이 14면이 있다.¹⁵⁾ 이어서 본문이 있는데, 제1차분은 96면이며, 추록이 13면이다. 본문은 1면에 25행, 1

11) 이 책의 ‘凡例’ 참조.

12) 파손된 채로 도서관에 소장된 듯하다.

13) 이 책을 발행한 목적은 책의 서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 해서이다. 그래서 좀 두껍지만 지니고 다니기 편한 형태로 만들었다.

14) 현재 책에는 이를 필사한 기관이나 인명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래서 작성주체를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5) 이들 부동산용어의 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결과 정오표, 색인은 번역하지 않았다.

행 31자로 정연하게 정서되어 있으며, 모두 당시의 공식문서에 사용 되는 카다카나(カタカナ)로 되어 있다. 본문과 추록 모두 일본어 50音順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표제어는 한자로만 되어 있으나, 색인에는 한자어 아래에 한글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글은 직접 손으로 쓴 것이다.

2. 편찬방법

용어집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로서는 범례에서는 다음을 들고 있다: ①《高麗史》, ②《增補 文獻備考》, ③《大典會通》, ④《萬機要覽》, ⑤《韓國稅制考》, ⑥<屯田ニ關スル調査報告書(둔전에 관한 조사 보고서)>, ⑦<舊各宮司 等 所屬土地 及 賭稅調査>, ⑧<前 宮內府所管 國有各地種考>, ⑨<隆熙2年[1908] 財務一班(大邱財務監督局)>, ⑩<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スル權利一班(한국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일반)>, ⑪《土地調査參考書》. 이 가운데 고려사에서 만기요람까지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사서이다. 나머지 참고서는 모두 일본이 주도적으로 편찬한 자료이다. 《韓國稅制考》는 1909년 9월 度支部 書記官 成夏國과 主事 尹成熙 그리고 臨時財産整理局 事務官 柳興世가 한국의 조세제도와 그 징세의 연혁을 조사하여 司稅局長 鈴木 穆에게 제출한 보고서로, 제1장 총설에서는 조세제도의 연혁을 밝혔으며, 제2장에서는 갑오개혁기 이후 각종 稅種을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징세기관을 언급하였다. 원문에서는 대개는 전거를 서명 정도만 밝히고 있지만, 때로는 그냥 “舊記”, 즉 옛 기록으로만 밝히고 있는 것도 상당하다.

실제 인용된 자료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범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법전류로는 1485년(성종 16)에 편찬된 《經國大典》¹⁶⁾과 1865년(고종 2)에 편찬된 조선조의 종합법전인 《大典會通》과 중앙관청의 행정법규와 사례를 집성하여 1867년(고종 4)에 편찬한 《六典條例》,¹⁷⁾ 그리

16) 경국대전에서는 <禮典> [奴婢土田賜牌式]조와 <戶典> [田宅]조가 인용되었다.

17) 《大典會通》 <戶典> [雜稅]조와 《六典條例》 권4 <戶典> [糧餉廳] 『總例』가 인

고 1808년(순조 8)에 국가의 재정제도와 그 실제 등으로 종합하여 편찬한 《萬機要覽》 <財用篇>이 인용되었다. 조선후기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만기요람이 자료의 성격상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高麗史》가 조선 이전의 제도를 서술할 때에 주로 <禮志>와 <食貨志>가 인용이 되었다. 또한 송 사신 徐兢의 《高麗圖經》과 《周禮注疏》 그리고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후를 기술한 紀事本末體의 史書인 李肯翊의 《燕藜室記述》도 한 곳 인용되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고종대 조선의 문물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增補 文獻備考》이다. 이 책은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勅命으로 편찬된 것으로 조선의 각종 문물과 제도 그리고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增補 文獻備考》가 가장 많이 인용된 이유는 짧은 기간 내에 손쉽게 조선의 문물제도를 조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禮考>, <田賦考>, <財用考>, <學校考>, <職官考> 등이 인용되었다.

이상의 자료는 모두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통감부기에 편찬된 자료로 인용된 것으로는 범례에 제시된 《韓國稅制考》가 있는데, 이는 1909년 度支部 司稅局에서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범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慣習調查報告書》를 인용하였다. 통감부 법전조사국에서 1908년 5월 조사에 착수하여 1910년 9월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해 12월에 초판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912년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1910년 판을 보완조사를 하여 발간하였다. 인용 내용을 살펴보면 1910년과 1912년 모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이다.¹⁸⁾

또 부분적으로 당시의 법령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묘지와 관련하여서는 1905년에 반포된 『刑法大全』 제32조, 제443조에서 제465조까지 인용하였다. 그리고 1894, 5년 갑오을미 개혁 이후 제도의 변화와 그

용되었다.

18) “居間, 契, 都給, 同事, 射亭, 寺刹, 中賭地” 등이다.

에 따른 토지제도 및 재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단행법을 인용하였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법령은 1908년(융희 2) 6월 25일 칙령 제39호 『宮內府所管 및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 및 帝室債務의 整理에 關한 件』으로 그 내용은 “궁내부 등에 소속된 부동산과 궁내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는 모두 국유로 하며, 궁전과 태묘, 능원묘의 것은 예외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1895년(개국 503) 9월 5일 법률 제15호 『地稅 및 戶布錢에 關한 件』으로 “地稅額과 納付期日을 규정하고 아울러 民隱土地를 발견하면 官有로 하고, 또 官隱, 吏隱, 洞隱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탈루세액과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도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관리주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08년(융희 2) 9월 25일 『奎章閣分課規程』¹⁹⁾, 1910년(융희 4) 4월 28일 學部令 제2호 『鄉校財産管理規則』²⁰⁾, 1911년(明治 44) 6월 3일 制令 제7호 『寺刹令』 등 관련 법령을 제시하였다.

3. 내 용

각 항목의 설명은 부분적으로는 전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다만 실제의 필요에 따라 업무, 즉 관유재산을 정리하여 이를 국가재산에 편입시키는 사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그림과 각종 문서 등 실물을 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가권[家券]”에서 “흡창청[吸唱廳]”까지 총 590개 항목을 표제어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502개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였으며, 관련 항목으로 24개를 제시하여 용어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문 외에 追錄에서 90개 항목을 추가하였다.²¹⁾

19) 이는 규장각의 분과규정으로 규장각이 궁내부에 소속된 사항은 파악할 수 없다.

20) 향교재산은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윤,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21) 추록에서 새롭게 보완된 항목은 표제어 다음에 “【補】”로,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

표제항목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관청 및 이와 관련되는 토지에 대한 항목이 무려 284개에 이른다. 그리고 사물의 명칭 등이 13개이며,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 한국인에게 자명한 지명 등이 10개이다.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게 부동산 또는 일반적 법률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296개로 절반에 불과하다.

이러한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구성은 한편으로는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그 당시 한국의 토지제도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전부터 조선의 각종 제도와 관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지만, 1910년대 초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의 재정제도는 국가중심의 근대적 재정제도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근대재정제도의 핵심은 예산제도에 있다. 즉 예산에 따라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수취하여 국가가 이를 각 기관에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갑오·을미개혁 이후 일원적 예산·회계제도를 추구하였지만,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한국에서는 근대적 조세제도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과거처럼 각 기관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토지를 소유 내지 관리하면서 그 토지에 대해 지대 내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조세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여 기관을 운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토지법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를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 내지 관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자적으로 토지를 소유 내지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朝鮮不動産用語略解》는 이러한 실질적인 필요성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된 항목은 문단을 바꾸어 그 내용 앞에 “【補】”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土地臺帳인 量案에 나타나는 토지의 모양과 각종 문서 등 22종을 제시하였다. 양안 상의 토지의 모양에 대해서는 “勾田, 圭田, 方田, 梭田, 腰鼓田, 梯田, 直田” 등 7종의 모양과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²²⁾ 그리고 수세와 나아가서는 소유권의 입증과 관련되는 토지대장과 관련되는 문서로는 “結數申告書, 깃기[衿記], 馬上草, 名子[字]冊, 新量案, 舊量案” 등 6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거래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문서로는 “漢城府 家儉帖, 權賣文券, 文記(文券), 傳貫文記, 完文, 牌田, 牌紙, 牌旨, 牌飭” 등 9종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서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결세 대비표, 量地衙門 구성원, 作紙의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²³⁾ 《用語略解》의 이러한 구성에서 당시에 한국의 토지제도를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일본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2) 《決訟類聚補》 <田算法>에 같은 그림과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정구복, □□決訟類聚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79-186면 참조.

23) 《慣習調査報告書》에서도 실제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중심으로 71종을 제시하고 있다(정공식, 앞의 글, 238-9면). 《朝鮮不動産用語略解》에서는 이와는 달리 양안과 관청에서 발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III. 맺음말

위에서 간략하게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편찬경위와 구성 그리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朝鮮不動産用語略解》는 조선총독부에서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출간한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 관유재산의 정리,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유재산의 창출이라는 현실적인 수요에 부응해서 집무상 필요에 시급히 대응하여 朝鮮總督府 官有財産班과 朝鮮總督府官房 土木局 등 서로 다른 두 개의 기관에서 각각 발간한 책을 사후에 종합한 책이다. 따라서 이는 관유재산을 정리하는 관리들에게 현장지침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朝鮮總督府官房 土木局에서 발간한 袖珍本 《朝鮮不動産用語略解》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朝鮮不動産用語略解》에서는 모두 590개 항목의 표제어를 두고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전거를 밝히기도 하였다. 실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용어는 많지 않으며 관청명칭 등이 제법 된다.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 새로운 것도 없고, 전문가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용어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며, 특히 관청과 지방의 명칭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용어이다.

뿐만 아니라 참고한 자료면에서도 압도적이지는 않다. 주로 참고한 자료는 고종 대에 편찬된 《增補 文獻備考》와 순조대 財政과 군정관련 법전의 기사와 사례를 정리한 《萬機要覽》 가운데 <財用篇>이다. 그리고 통치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經國大典》이나 《大典會通》 등 법전도 적극적으로 참조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용어사전의 부족한 점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 《朝鮮不動産用語略解》의 사료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선적으로 오늘날 사라진 우리 고유의 용어가 적잖이 남

아 있다. 예컨대,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소작’이라는 용어는 표제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半作, 分作, 并作, 打作”이라는 용어가 표제어에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고유의 법률용어를 찾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사료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면에 감추어진 점이다. 즉 부동산과 관련되는 용어를 조선총독부 실무부서에서 시급히 편찬한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오늘날은 물론 당시에조차명한 사실을 용어집의 표제어로 올리는 등의 사실은 그만큼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관유재산을 정리해서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수행이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용어집의 내용과 발간 등은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본이 한국의 사회와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사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또 사료는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사료는 사료일 뿐이며, 그 사료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다. 따라서 사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면 사료를 뛰어넘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1910년대 당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조선의 재정과 조세제도 등의 모습을 피상적이거나 알 수 있다.

제 2 편 翻譯

朝鮮不動産用語略解

일 러 두 기

1. 번역대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설송 333.33 C456)을 이용하였다.

2. 한자 발음과 한글 발음이 다른 경우에는 한글 발음을 우선하여 표기하고, 아울러 한자 발음에도 수록하였다.

예: 배미[夜味; 排味], 야미[夜味]

3. 번역대본에 수록된 문서, 양식 등은 가능한 한 대본대로 작성하였으며, 위 방점은 원문대로 표시하였다. 다만 조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슷하게 하였다.

4. 연대는 서기연호를 먼저하고 괄호 속에 國號와 王曆, 그리고 1893년 이후에는 年號를 기재하였다. 다만 조선왕조는 ‘왕력’으로만 표기하였다.

예: 1047년(고려 문종 1), 1750년(영조 26), 1895년(개국 504),
1899년(광무 3)

5. 추록에서 새롭게 보완된 항목은 표제어 다음에 【補】로,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된 항목은 문단을 바꾸어 그 내용 앞에 【補】로 표시하였다.

예: 계[契] 【補】 계의 종류는 (하략)

예: 가쾌[家儻] (중략) / 【補】 한성부는 (하략)

6. 관련용어는 해당 용어 다음에 행을 바꾸어 표시하였다.

예: 결세[結稅] 결세는 (하략) /※ 관련용어: 결가[結價]

7. 번역대본에 보이는 명백한 오자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고 수정하였다.

8. 번역대본에서는 典據를 간단하게 표시하였는데, 번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원문의 내용까지 밝혔다. 따라서 번역문의 모든 주석은 역주이다.

9.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대본에 인용된 문서 등은 바로 아래에 번역을 하였다.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吏讀이다.

세 목 차

(ㄱ)

가권[家券]

가대[家垜]

가쾌[家儉]

간[間]

간년경[間年耕]

간수선[看水船]

간전[墾田]

감영둔[監營屯]

강등전[降等田]

강속전[降續田]

강전[薑田]

객사[客舍]

객주[客主]

거간[居間]

결[結]

결가[結價]

결민[結民]

결세[結稅]

결수신고서[結數申告書]

결작[結作]

결총[結總]

경리둔[經理屯]

경만[京灣]

경선궁[慶善宮]

경연청[經筵廳]

계[契]

계서청[啓書廳]

계중답[契中畓]

계중산[契中山]

계중전[契中田]

고복채[考卜債]

고복채책[考卜債冊]

공고[工庫]

공랑[公廊]

공방청[工房廳]

공부[貢賦]

공수인청[公須人廳]

공수전[公須田]

공신전[功臣田]

공원[公園]

공인[貢人]

공해기지[公廩基地]

공해기지전[公廩基址田]

과목전[果木田]

곽전[藿田]

관노방[官奴房]

관동[關東]

관리영둔[管理營屯]

관북[關北]

관서[關西]
관은[官隱]
관제묘[關帝廟]
관죽전[官竹田]
관호수[官戶數]
광둔[廣屯]
광선[廣船]
광흥창[廣興倉]
괴원[槐院]
교방[教坊]
교서관[校書館]
구고전[勾股田]
구문기[舊文記]
구분전[口分田]
구전[勾田]
군관둔[郡官屯]
군기둔[軍器屯]
군기청[軍器廳]
군뢰청[軍牢廳]
군보포[軍保布]
군사청[郡司廳]
군자감[軍資監]
군전[軍田]
궁방전[宮房田]
궁사[宮司]
궁장토[宮庄土]
궁전[宮田]

권매[權賣]
귀후서[歸厚署]
규장각[奎章閣]
규전[圭田]
균역청[均役廳]
균역청둔[均役廳屯]
균전[均田]
금기[衿記]
금둔[禁屯]
금란계[金蘭契]
급수선[汲水船]
급주전[急走田]
급창청[及唱廳]
기경[起耕]
기고청[旗鼓廳]
기로소둔[耆老所屯]
깃기[衿記]

(ㄴ)

난호둔[欄護屯]
납가도장[納價導掌]
납도장[納導掌]
내섬둔[內贍屯]
내수사[內需司]
내시부[內侍府]
내아[內衙]

내어물전[內魚物塵]
내자둔[內資屯]
노선[櫓船]
노인[路引]
노전[蘆田]
뇌신단[雷神壇]
늪전[廩田]
능원묘[陵園墓]
능원묘위토[陵園墓位土]

(ㄷ)

단[壇]
단갑읍[單甲邑]
답[畓]
당도리선[唐道里船]
대동미[大同米]
대동청[大同廳]
대청직청[大廳直廳]
도급[都給]
도문기[都文記]
도서[圖署]
도서문적[圖署文蹟]
도서원[都書員]
도세[賭稅]
도자청[都子廳]
도장[導掌]
도제주[都提調]

도지[賭地, 賭支]
도총소[都摠所]
도회장소[都會場所]
돈녕둔[敦寧屯]
동갑계[同甲契]
동래관시[東萊館市]
동사[同事]
동산[洞山]
동산전답[洞山田畓]
동신묘[東神廟]
동포[洞布]
동헌[東軒]
두락[斗落]
둔토[屯土]

(ㄹ)

리[里]
리답[里畓]
리산[里山]
리임[里任]
리전[里田]

(ㄴ)

마름[舍音]
마보단[馬步壇]
마상초[馬上草]
마위전[馬位田]
마제단[禡祭壇]

마조단[馬祖壇]
마호주[馬戶主]
망문상전[望門床塵]
면서원[面書員]
면세절수[免稅折受]
면임[面任]
면주인[面主人]
명자책[名子冊]
모[牟]
목[木]
목위전[牧位田]
목장[牧場]
묘[廟]
묘위전[墓位田]
묘지[墓地]
묘직전[墓直田]
무세[巫稅]
무열사[武烈祠]
무예둔[武藝屯]
무예청[武藝廳]
무위둔[武衛屯]
무주공산[無主空山]
무토결[無土結]
문권[文券]
문기[文記]
민충단[愍忠壇]
민호수[民戶數]

(ㅅ)
반작[半作]
발소둔[撥所屯]
발장청[撥將廳]
발졸청[撥卒廳]
방납[防納]
방렴[防簾]
방영둔[防營屯]
방자청[房子廳]
방전[方田]
방직청[房直廳]
배미[夜味; 排味]
백정[白丁]
범 [犯]
별감청[別監廳]
별장청[別將廳]
병방청[兵房廳]
병영둔[兵營屯]
병작[併作]
병조[兵曹]
병조둔[兵曹屯]
보[洑]
보세[洑稅]
보포[保布]
복[卜]
복덕방[福德房]

복정[卜定]
복호[復戶]
봉대둔[烽臺屯]
봉산[封山]
봉상시둔[奉常寺屯]
부[賦]
부[負]
부석가[負石價]
부선[俘船]
부장전[副長田]
북묘[北廟]
분작[分作]
불역전[不易田]
불향전[佛享田]
비[碑]
비각[碑閣]
비변사[備邊司]
비장청[裨將廳]
빙고둔[氷庫屯]
빙부전[氷夫田]

(八)
사[祠]
사간원[司諫院]
사고[史庫]
사도시[司導寺]
사령청[使令廳]
사복둔[司僕屯]

사역원[司譯院]
사옹원둔[司甕院屯]
사위전[寺位田]
사위토[祠位土]
사음[舍音]
사장[沙場]
사전[梭田]
사정[射亭]
사직단[社稷壇]
사찰[寺刹]
사찰기지[寺刹基址]
사패전[賜牌田]
사포둔[司圃屯]
사표[四標]
사학[四學]
사헌부[司憲府]
사현사[四賢祠]
사환미[社還米]
삭세[朔貰]
산직전[山直田]
삼남[三南]
삼선[衫船]
삼성사[三聖祠]
삼수미[三手米]
삼충사[三忠祠]
상무계[商務契]
상민[常民]

상서원[尙瑞院]
상의원[尙衣院]
상정미[詳定米]
상포계[喪布契]
상하미전[上下米廩]
상환[相換]
색리[色吏]
생선전[生鮮廩]
서기청[書記廳]
서북양도[西北兩道]
서사청[書寫廳]
서영둔전[西營屯田]
서원[書員]
서원청[書員廳]
서원토[書院土]
선가[船價]
선공둔[繕工屯]
선무사[宣武祠]
선위사둔[善衛士屯]
선혜청[宣惠廳]
선혜청둔[宣惠廳屯]
선화당[宣化堂]
섬학고둔[瞻學庫屯]
성균관[成均館]
성균관둔[成均館屯]
성첩[城堞]
성황단[城隍壇]

세가[賈家]
세자시강원춘방[世子侍講院春坊]
세자익위[世子翊衛]
세주[賈主]
소임[所任]
소정방사[蘇定方祠]
속[束]
속전[續田]
송도[松都]
송영[松營]
수로전[酬勞田]
수릉군전[守陵軍田]
수문장청[守門將廳]
수어둔[守禦屯]
수영둔[水營屯]
순교청[巡校廳]
순뢰청[巡牢廳]
숭덕전[崇德殿]
숭렬전[崇烈殿]
숭령전[崇靈殿]
숭선전[崇善殿]
숭의묘[崇義廟]
숭의전[崇義殿]
숭인전[崇仁殿]
숭혜전[崇惠殿]
승[升]¹

승[升]²
승정원[承政院]
승총결책[陞總結冊]
시기수[時起數]
시산[柴山]
시선[柴船]
시장[柴場]
식산계[殖産契]
신가경전[新加耕田]
심영[沁營]

(○)
아록전[衙祿田]
아사[衙舍]
악공청[樂工廳]
야미[夜味]
양사고[養士庫]
양사당[養士堂]
양서[兩西]
양안[量案]
양전청[量田廳]
양지아문[量地衙門]
양포[良布]
양향둔[糧餉屯]
양현고둔[養賢庫屯]
어기[漁磯]
어기[漁基]

어둔[御屯]
어전[漁箭]
어조[漁條]
여각[旅閣]
여단[厲壇]
역가[役價]
역가도장[役價導掌]
역관둔[驛官屯]
역도장[役導掌]
역둔토[驛屯土]
역민[驛民]
역분전[役分田]
역전[易田]
역전[驛田]
연구진[年久陳]
연대둔[烟臺屯]
연무정[鍊武亭]
연분성책[年分成冊]
열전[列田]
염전[鹽田]
영고[營庫]
영노청[營奴廳]
예빈사[禮賓寺]
오부[五部]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와서[瓦署]
완문[完文]

완전[莞田]
외어물전[外魚物塵]
요고전[腰鼓田]
요역[徭役]
용[庸]
용호둔[龍虎屯]
용호영[龍虎營]
우사단[雨師壇]
우사단[雩祀壇]
운주헌[運籌軒]
운향고[運餉庫]
원[員]
원장부전[元帳付田]
원전[院田]
원전[元田]
유림계[儒林契]
육대강[六大江]
육상궁전[毓祥宮田]
육의전[六矣塵]
육조[六曹]
은결[隱結]
은토[隱土]
음공전[陰功田]
의금부둔[義禁府屯]
의승둔[義僧屯]
의영고[義盈庫]
의정부[議政府]

의정부둔[議政府屯]
이갑읍[二甲邑]
이답[里畓]
이산[里山]
이아[貳衙]
이은[吏隱]
이전[里田]
이조[吏曹]
이청[吏廳]
인병미경전진전[因病未耕全陳
田]
인석전[茵席塵]
인신직청[印信直廳]
일경[日耕]
일리[一里]
일사칠궁[一司七宮]
일역전[一易田]
일토양세[一土兩稅]
입안[立案]
입전[立塵]
입지[立旨]
(ㄷ)
자호[字號]
작도장[作導掌]
작부[作伏]
작지[作紙]
작청[作廳]

장교청[將校廳]
장목전[長木廩]
장색[匠色]
장악둔[掌樂屯]
장용둔[壯勇屯]
장원서둔[掌苑署屯]
장전[長田]
장충단[獎忠壇]
장표[掌標]
장흥고[長興庫]
재상전[災傷田]
재역전[再易田]
재인[才人]
재인청[才人廳]
저전[楮田]
저치미[儲置米]
적전[籍田]
전[田]
전[殿]
전권[田券]
전당[典當]
전당포[典當舖]
전묘위토[殿廟位土]
전미[田米]
전생서둔[典牲署屯]
전설사[典設司]
전세[田稅]

전세[傳貰]
전옥서[典獄署]
전의감[典醫監]
전적[田籍]
전조[田租]
전종[田種]
정무사[靖武祠]
정문[旌門]
정전[井田]
정전[正田]
제언[堤堰]
제언답[堤堰畓]
제언사[堤堰司]
제전[祭田]
제전[梯田]
조[租]
조[調]
조경묘[肇慶廟]
조지서[造紙署]
종계답[宗契畓]
종계산[宗契山]
종계전[宗契田]
종묘[宗廟]
종묘서[宗廟署]
종친부둔[宗親府屯]
좌고[坐賈]

주창[州倉]
죽전[竹田]
중도지[中賭地]
증필[證筆]
지계[地契]
지계아문[地契衙門]
지권[地券]
지목[地目]
지빙[持憑]
지상선[地上船]
지인청[知印廳]
지자청[持者廳]
지주[持主]
직로[直路]
직전[直田]
직전[職田]
진두[津頭]
진둔[鎭屯]
진무영둔[鎭撫營屯]
진부둔[津夫屯]
진어영둔[鎭禦營屯]
진연단위전[津淵壇位田]
진영둔[鎭營屯]
진전[陳田]
진휼청둔[賑恤廳屯]
집도[執賭]

집사청[執事廳]
집필[執筆]
(ㄷ)
차사원[差使員]
참봉청[參奉廳]
채전[菜田]
책방[冊房]
천반포락[川反浦落]
첩문[帖文]
청둔[廳屯]
청성묘[淸聖廟]
청죽전[靑竹田]
청직[廳直]
채문[帖文]
초장[草場]
초평[草坪]
총리영둔[摠理營屯]
총융둔[摠戎屯]
충훈둔[忠勳屯]
취고수청[吹鼓手廳]
칠전[漆田]
(ㄹ)
칸[間]
(ㅍ)
타작[打作]

탈고신[奪告身]
태[太]
태국신당[太國神堂]
토공[土貢]
통례원[通禮院]
통선[桶船]
통영둔[統營屯]
통인[通引]
통인청[通引廳]
투탁도장[投託導掌]

(ㄴ)

과[把]
과발소[擺撥所]
패전[牌田]
패지[牌紙]
패지[牌旨]
패칙[牌飭]
평시서[平市署]
폐사전답[廢寺田畓]
포단[醕壇]
포둔[砲屯]
포락지[浦落地]
포량미[砲糧米]
포청[捕廳]
풍사단[風師壇]
피한[皮漢]
필가[筆價]

(ㅎ)

학계[學契]
학전[學田]
한림원[翰林院]
한전[旱田]
합문[閤門]
해서[海西]
해포[海埔]
행심[行審]
향교[鄉校]
향교전[鄉校田]
향사당[鄉射堂]
향청[鄉廳]
향탄둔[香炭屯]
향탄산[香炭山]
허결[虛結]
혈소청[歇所廳]
협선[挾船]
형방청[刑房廳]
혜둔[惠屯]
혜민서둔[惠民署屯]
호고둔[戶庫屯]
호마고둔전[戶馬庫屯田]
호마청[戶馬廳]
호방청[戶房廳]
호수[戶首]

호조둔[戶曹屯]
호패[號牌]
호포[戶布]
호포전[戶布錢]
혼인계[婚姻契]
화성둔[華城屯]
화전[火田]
화피전[樺皮塵]
환구단[圜丘壇]
환모[還耗]
환퇴[還退]
활인서둔[活人署屯]
황첩[黃帖]
획급[劃給]
훈둔[訓屯]
훈련둔[訓練屯]
훈련원[訓練院]
훈련청[訓練廳]
흡창청[吸唱廳]

朝鮮 不動産用語 略解

凡 例

1. 본집에는 《朝鮮總督府月報》 소재 <不動産ニ關スル用語略解>를 수록하였다. 明治 44年(1911) 9月 第1卷 第4號에 ア~エ, 同 10月 第5號에 カ~ケ, 明治 45年(1912) 1月 第2卷 第1號에 コ~シ, 同 第2號에 シ~ハ, 同 第7號에 ハ~ホ, 大正 2年(1913) 3月 第3卷 第3號에 マ~ロ로 續載된 것이다.

2. 그 序文에 “본편은 官有財産班에서 집무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고, 참조한 주된 자료는 高麗史, 增補文獻備考, 大典會通, 萬機要覽, 韓國稅制考, 屯田ニ關スル調査報告書(둔전에 관한 조사보고서), 舊各宮司等 所屬土地及賭稅調査, 前 宮內府所管 國有各地種考, 隆熙2年[1908] 財務一班(大邱財務監督局), 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スル權利一班(한국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일반), 土地調査參考書 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謄寫 進行 중에 朝鮮總督官房土木局에서 大正 2年(1913) 3월에 간행한 <朝鮮不動産用語略解>(袖珍本 214면, 부록 조선연표)를 얻었다. 그 序文에는 大正 元年(1912) 12月 날짜로 “조선의 부동산에 관한 관습은 본토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에 관한 용어 역시 같지 아니하다. 지금 관유재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本書를 편찬하였다. 遺漏가 적지 아니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 각 용어의 배열은 同字·近似字를 따르되 편의상 변경한 부분이 있다.

4. 색인은 본 연구소에서 작성하였다. 諺文은 袖珍本에만 있는데, 없는 부분은 본 연구소에서 보충하였다.

5. ‘距今(지금부터)’에서 쓰는 年數는 모두 明治 44年(1911)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6. 再出語는 본문 중에 참조 면을 표시하고, 또 색인에서 檢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고유명칭은 가급적 ‘...’를 붙이고 明瞭하게 하였다.

以上

(ㄱ)

가권[家券] 가옥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매매증서를 말하고, 京城에서는 1893년(고종 30) 이후 漢城府에서 家契를 발급하였고, 기타 開城, 仁川, 水原, 平壤, 大邱, 全州 등에서도 점차 발급하게 되었다.

가대[家垈] ‘基地’ 또는 ‘家基’라고도 하고 택지를 뜻한다.

가괘[家儻] 가옥을 매매·대차하는데 당사자 쌍방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약 중개를 하는 자이며 1893년(고종 30) 이후 漢城府에서 인허를 받은 자에 한하였다.

【補】 한성부는 신청을 받으면 본인의 신원을 조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허를 준다. 인허증은 속칭 ‘帖狀’이라고도 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漢城府爲成帖	中署 寬仁坊 家儻兼洞住 姓名
年 月 日 漢城府判尹 ㉞	
한성부에서 발급한 첩장	중서 관인방 가괘검동주성명
년 월 일 한성부 관윤 ㉞	

간[間] ‘칸’ 참조.

간년경[間年耕] ‘재역전’ 참조.

간수선[看水船] 물고기가 漁箭 안에 들어가 잡혔는지를 감시하는 배를 말한다.

간전[墾田] 고려시대의 田制의 하나. 고려 光宗(949~975) 때 비로소 墾田制를 시행하였다. 陳田을 경작하는 자에게 私田의 경우 첫해의 수확은 모두 본인에게 주고 다음해부터 田主와 절반으로 나누며, 公田의 경우 3년까지의 수확을 급여하고 4년부터는 법에 의하여 租를 징수하였다. 소위 ‘公田’은 그 토지 소유가 취득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제한되어 사망한 후에는 官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私田’은 조세를 관으로 납부하지 않고 백성이 私有하는 토지를 말한다.

감영둔[監營屯] 각 道의 觀察使를 監司라고 하고 관찰사의 행정관청을 監營이라고 하는데, 감영 各廳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감영에 부속시킨 일정한 토지를 말하며, 그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관유재산으로 매수한 토지, ②公錢 負債者로부터 몰수한 토지, ③관찰사가 민폐를 막기 위하여 돈을 내어 매수한 토지, ④백성이 賦役을 영구히 피하기 위하여 공공재산으로서 매수·납부한 토지, ⑤소유주가 없는 田畝으로서 나라에 귀속된 토지 및 백성이 기부한 토지.

그리고 각 감영에 부속된 각 庫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營庫: 감사의 需用什物 및 供饋 등의 마련을 관장한다. ②補膳庫: 감사의 膳品 마련을 관장한다. ③賑恤庫: 恤典 및 荒政을 관장한다. ④補軍庫: 軍餉을 관장한다. ⑤軍需庫: 보군고와 같다. ⑥軍器庫: 軍物을 관장한다. ⑦養士庫: 유생 교육을 관장한다. ⑧贍學庫: 양사고와 같다. ⑨營膳庫: 公廨 및 城堞 수선을 관장한다. ⑩兼濟庫: 使客 수용품의 마련을 관장한다. ⑪紙所庫: 공용종이의 마련을 관장한다. ⑫雇馬庫: 公用馬匹의 마련을 관장한다. ⑬戶庫: 租稅를 관장한다. ⑭工庫: 돛자리 및 木物의 마련을 관장한다. ⑮勅需庫: 勅使의 수용을 관장한다. ⑯泉流庫: 칙사의 수용 및 使行 여비 지출을 관장한다. ⑰管餉庫: 천류고와 같다.

1895년(개국 504) 지방제도 개정에 즈음하여 각 道의 감영을 폐지하고 관찰부를 설치하게 되면서 종래 所管한 屯土는 모두 度支部에

移屬되었다.

강등전[降等田] 量田 때 등급이 높아 地稅 부담이 무거워지어 그 토지가 陳廢되었을 경우 그것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등급을 내려 減稅하여 준 토지를 말한다. 《文獻備考》에 “묵은 땅 및 10년 이상 묵혀둔 땅은 그 고을에서 실제로 조사하되, 만약 경작하려는 자가 있으면 적당하게 헤아려 등급을 낮춘다. 조정에서 논의하여 임금의 허가를 받아서 결세를 감경한 후, 첫해의 결세는 속대전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한다.”¹⁾라고 되어 있다.

강속전[降續田] 降等·減稅하여도 아직 경작을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더욱 등급을 내려 續田으로 한 토지를 말한다.

【補】 舊記에 “강속이란 그 땅의 등급을 내려 그 결세를 감경하는 것이다. 가령 그 땅의 등급이 4등전·5등전일 경우, 등급을 내려 6등전으로 수세하는 것을 말한다.”²⁾라고 되어 있다.

강전[薑田] 생강밭. 전 宮內府에서 賭稅를 징수한 토지이다.

객사[客舍] 객사는 ‘館于’라고도 하고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지방 각 부군에 설치되었다. 그 구조는 正殿과 동서 양 大廳으로 구성되고 있고 정전의 아랫목 자리에 闕牌(목찰에 ‘闕’자를 쓴 것)를 봉안한다. 부윤·군수가 매월 초하루와 보름 양일에 禮裝하여 국왕에 대해 인사를 하는 곳이고, 또 勅使가 내왕할 때 숙소로써 사용하는 곳이다. 그 건물과 부지는 지방마다 면적이 같지 않으나 모두 국유이다.

객주[客主] ‘여각’ 참조.

거간[居間] 거간은 널리 상거래를 仲介하거나 또는 토지, 가옥의 매

1) 《增補文獻備考》 권149 <田賦考 9> “陳田及十年以上懸陳之處, 自該邑逐庫踏驗, 如有可耕者, 量宜降等續田. 則依筵稟減負後, 初年稅則依續典減半”; 古典刊行會 編, □□增補文獻備考(中)□□(동국문화사, 1957), 732면(앞으로 中-732면의 형태로 인용함).

2) “降續者, 降其等而減其稅. 假令等數之爲四五等者, 降等而以六等收稅”; 전거를 찾을 수 없지만, 《萬機要覽》 <財用編 2> [田結] 『量田法』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매·대차의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補】 시장에서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와 객주의 점포에서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있다. 어느 쪽도 口錢, 즉 수수료를 받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비율은 일정하지 않다. 서울에서는 대강 거래 가격의 100분의 1 내지 2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르고, 혹은 파는 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혹은 사는 자에게 받으며 때로는 양쪽에서 받는 경우도 있으나 파는 자에게 받는 것을 통례로 하고, 많은 경우는 상거래가 끝나고 나서 받는데,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³⁾

결[結] ‘결’은 지세를 부과하는 단위로서 마치 일본에서의 地租 賦課의 표준인 地價와 동일한 지위와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이 명칭의 기원은 명백하지 않으나, 옛 곡식 1把[줌]를 수확할 수 있는 땅에 1把의 세를 부과하고, 곡식 1束[묶음]을 수확할 수 있는 땅에 1束의 세를 부과하는 소위 年分制時代에 과세의 단위 표준으로서 생긴 것은 분명하다. 참고로 토지의 等級 結價와 地積의 관계를 대략 설명하면 고려 말, 즉 약 520년 전 이래 1等地 1만 平方尺(度支部에 현존하는 토지측량의 자, 1척은 曲尺⁴⁾ 3尺 3寸)에 1결의 세금(이것을 ‘結價’라고 칭한다. 1908년(융희 2) 법률 제10호 『地稅에 관한 件』⁵⁾ 참조. 1결당 8圓이고 이하 10여 等級이 있다)을 부과하고 점차 6등까지 등급이 내려갈수록 반대로 1결당 세금에 대한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데 그것은 다음 표와 같다(결가는 잠정적으로 1결을 8원으로 한다).

- 3) 【補】의 설명은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같다. 정공식 역, □□國譯 慣習調査報告書□□(개역판: 한국법제연구원, 2000), 375면.
- 4) 목장 등이 쓰는 ‘ㄱ’자형으로 굽은 자. 尺[자]는 일반적으로 10.3cm에 해당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척은 周尺, 營造尺, 布帛尺 등이 있는데, 주척이 가장 짧고, 포백척이 가장 길다.
- 5) 1908. 6. 25. 법률 제10호, 원문에는 제20호이나 제10호임; 宋炳基 外 編, □□韓末近代法令資料集(VI)□□(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2), 489면(이하 □□近代法(VI)□□의 형태로 줄임).

(제1표) 결세 8원에 대한 토지 면적

등급	測地 平方尺	日本 段別
1 등	10,000.0尺	1町 25步
2 등	11,764.7尺	1町 1反 8畝 9步
3 등	14,285.7尺	1町 4反 4畝 1步
4 등	18,118.8尺	1町 8反 3畝 10步
5 등	25,000.0尺	2町 5反 2畝 3步
6 등	40,000.0尺	4町 4畝

(제2표) 토지에 대한 결가

등급	結價 基本率	結 價
1 등	1 結	8圓
2 등	85 負	6圓 80錢
3 등	70 負	5圓 60錢
4 등	55 負	4圓 40錢
5 등	40 負	3圓 20錢
6 등	25 負	2圓

앞의 두 표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제3표)

등급	結稅 8圓에 대한 地積	1만 平方尺에 대한 結價
1 등	10,000.0尺	8圓
2 등	11,764.7尺	6圓 80錢
3 등	14,285.7尺	5圓 60錢
4 등	18,118.8尺	4圓 40錢
5 등	25,000.0尺	3圓 20錢
6 등	40,000.0尺	2圓

(비고) 각각 10把를 1束, 10속을 1負, 100부를 1結로 한다.

결가[結價] ‘결세’ 참조.

결민[結民] 지세 납부자이다.

결세[結稅] 결세는 地稅를 뜻한다. 토지에 과세하는 법은 584년(신라 진평왕 6)에 만들어졌고, 그 후 1437년(세종 19)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경상·전라·충청 3도를 上等道, 경기·황해·강원 3도를 中等道, 함경·평안 2도를 下等道로 정하고 結價를 정하였다. 1444년(세종 26)에 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전국의 토지를 6등으로 나누고 농사를 대대적으로 장려하였다. 그 후 몇 번 제도의 개편이 있었으나 現物稅를 원칙으로 하였다. 1894년 甲午改革 때 쌀을 표준으로 하여 結價를 24등으로 나누고 現物稅를 폐지하고 金納稅로 바꾸었다. 그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는데 世宗 때 제정된 6등제는 지금까지 여전히 습용된다.

※ 관련용어: 결가[結價]

결수신고서[結數申告書] 종래 사용되어 왔던 깃기[衿記]의 형식이 매우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財務署에서 만든 장부이다.

과거의 깃기는 보통 地番, 結數 및 納稅者 등을 기재한 것뿐이었으나, 본 신고서에는 앞의 사항 이외에 四標, 面積, 等級, 前地主, 現地主 및 小作人 등을 기입하고 해마다 각 面長으로 하여금 자기 면내의 토지에 대해 실지조사를 한 후 보고하게 하였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結數申告書

隆熙2年 9月 日
東萊財務署 前

東萊府 首面 福祥洞 三統五戶
耕作人 金 萬 石

土地所在	員名字號	番號	地目	斗落數 (마지기)	結數	自誰某移來 (전소유자)
首 面	城內員	49加	밭		3부 7속	
會實洞	宇 字					
同	같은	24	같은	10마지기	12속 7속	
同	같은	37	같은	8마지기	9부	

合計 25負 4束

결작[結作] 1751년(영조 27)에 良布(官吏·軍屬·奴婢 등을 제외한 백성을 ‘良人’이라 하고, 이들에게 부과하는 삼베를 ‘良布’라고 한다)를 반감하였는데, 그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종래의 田稅·三手米·大同米 이외에 부과한 지세이다. 西北 兩道(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6도에 대하여 1결 당 沿郡은 쌀 2두, 山郡은 돈 5전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모두 돈으로 납부하였다. 1844년(헌종 10)에 다시 쌀 또는 돈으로 수납하기로 변경하였는데,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結作錢이라 하고 쌀로 납부하는 것을 結作米라고 하였다. 그 징수 방법과 납기는 대동의 경우와 같다.

결총[結總] 결수의 총계를 말한다.

경리둔[經理屯] ‘총용둔’ 참조.

경만[京灣] ‘경’은 서울, ‘만’은 義州를 의미한다.

경선궁[慶善宮] 서울 西部 餘慶坊에 있고 원래 황귀비에게 소속된 재산이었으나 1908년(융희 2) 6월 칙령 제39호 『宮內府所管 및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 및 帝室債務의 整理에 關한 件』⁶⁾에 의하여 국유재산

6) 1908. 6. 25. 칙령 제39호; □□近代法(VI)□□, 491면.

으로 이속되었다.

경연청[經筵廳]【補】 국왕에게 경서 등을 講讀하는 일과 이 때에 時事에 대해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는 곳이다. 《文獻備考》에서는 “1420년(세종 2)에 경연청을 설치하여 왕에게 경서를 강독하고 논평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다.”⁷⁾며, 또 “회강 때에는 현임·원임 의정 1명, 규장각 학사·홍문관 대학사·중추원 직임의관 2명, 춘방(세자시강원)·계방(세자익위사) 전원으로 조강과 석강을 한다.”⁸⁾라고 되어 있다.

계[契]【補】 계의 종류는 아주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를 크게 구분하면 첫째,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 둘째, 마을 내의 규약에 불과한 것, 셋째, 단순한 공유관계에 속하는 것, 이 세 가지 밖에 없는 듯하다.

1.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계: 이 종류에 속하는 계는 그 수가 극히 허다한데 그 중에서 중대한 것을 들면, 혼인 또는 장례의 비용을 공조하기 위한 ‘혼계’·‘장계’,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계’ 혹은 ‘문계’, 또 종교·학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계’·‘학계’·‘사계’가 있다. 기타 영리 목적의 ‘식리계’, 植林을 목적으로 하는 ‘송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몽리계’가 있다. 그리고 계원은 균일하게 출자하는 것을 통례로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의 경우에는 지분의 구수를 나눌 때 한 사람이 2구 이상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출자액에는 차등이 있다. 또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계에서도 자산을 표준으로 하여 출자에 차등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식림과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의 경우는 토지의 면적을 표준으로 삼아 출자액에 차등을 만드는 것을 통례로 한다. 계원의 지분에 있어서도 평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 영리 목적의 계는 그 구수에 차이가

7) 《增補文獻備考》 권220 <職官考 7> “世宗二年設經筵廳，掌講讀論思之任”；下-555면.

8) 《增補文獻備考》 권220 <職官考 7> “會講時原任議政一員，章閣學士·弘文館大學士·中樞院勅任議官二員，春坊·桂坊全數，朝講·夕講”；下-561면.

있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계의 재산은 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처분은 계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하다. 또 계에는 계장, 유사 등 역원이 있어 재산 관리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은 재산 처분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계원은 다른 계원의 승낙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지 못함을 본칙으로 하나 식림 또는 수리 목적의 계의 경우는 灌漑地의 소유권에 따라 지분이 이전될 수 있다. 또 계원은 영리 목적의 계 이외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탈퇴하지 못한다. 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계승하고, 또 계원이 부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과반수의 결의로 그를 제명할 수 있다.

계의 해산 원인에 대해서는 관습상 판연히 정해진 바가 없으나 만약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는 그 기간의 경과에 의거하고, 또 일정한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성함에 의거하며, 만약 계원 중에서 해산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수 의견으로 인하여 해산될 수 있는데, 해산할 경우는 그 재산의 분배는 출자액에 따르고 이익분배와 손실부담에 대해서도 출자액을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계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출자분을 환불함을 통례로 한다.

2. 마을 내의 규약에 불과한 것: ‘洞契’ 또는 ‘里中契’라고 한다. 동·리 내의 각 호에서 평등하게 아니면 등급을 정하여 돈과 곡식을 추렴해서 그 이자 또는 원본을 가지고 호포 상납에 충당하거나 교량·도로 등을 수축하거나 주민의 구조에 충당한다. 이 종류의 계에서는 동·리에 호가 있는 자는 그 부담을 면하지 못하고 또 당연히 그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에 한번 동·리를 떠난 자는 그 부담을 면하는 것과 동시에 수익 자격도 잃는다. 이들은 마을의 규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단순한 공유관계에 속하는 것: 몇 명이 공동으로 혼구 또는 장구를 구입하여 계원 중에서 혼례 또는 장례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는 혼구와 장구의 계, 몇 명으로 농구 또는 우마를 구입하여 각자 필요할 때 서로 이를 사용하는 농구 또는 우마의 계와 같은 것은 단순한 공유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⁹⁾

계서청[啓書廳] 【補】 임금께 올리는 문서[奏御文牒]의 수정 등을 관장하는 곳이다.

계중전[契中田] 지방 사람들이 규약을 만들어 각자 돈을 추렴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그 수확을 가지고 冠婚喪祭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불시의 재해에 대비하는 땅이다.

※ 관련용어: 계중답[契中畓], 계중산[契中山]

고복채[考卜債] 書員이 인부를 사역할 때에 隱結을 사사로이 착복한 것은 비밀로 하고, 나라의 업무에 진력하여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을 구실로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1결 마다 1兩 내지 7, 8량의 범위로 고복채를 징수하였다. ‘고복채’는 또한 ‘筆價’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代筆料’라는 뜻이다.

※ 관련용어: 필가[筆價]

고복채책[考卜債冊] 고복채책은 書員이 백성으로부터 고복채를 징수하여 작성한 모든 과세토지의 기록이다. 이것은 正田과 隱結의 구별 없이 모든 과세가 가능한 토지를 망라하여 작성하였다.

공고[工庫] 【補】 돛자리[鋪陳]·초[炬燭]·그릇·꿀·兵符·갓[纓品]을 진상하는 일을 관장하는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공랑[公廊] 서울 종로에 있는 ‘육주비전[六矣塵]’을 뜻한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상인이 관부의 특허를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9) 이 항목은 위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앞의 역서, 281-3면 참조).

말한다. ‘육주비전’ 참조.

공방청[工房廳]【補】 國恤時에는 조정의 명령, 평상시에는 감사의 명령에 의하여 각 읍의 進上物의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공부[貢賦] 田租 이외의 왕실에 대한 진상과 중앙 및 지방 관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옛 稅制이다.

舊記에 “상고시대는 지세가 貢納制로서 명목상 田租밖에 없었으나, 고려 景宗 초에 이르러 租·調를 감하고 貢賦라는 명목을 세웠다. 이것은 즉 州郡 鄉吏의 자손 중에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을 골라 왕실에서 쓰는 柴炭을 공납하게 하였는데 그 후各司에 分屬된 후에는 이들을 노예처럼 사역하였다.”¹⁰⁾며, 또 “그 후 1410년(태종 10)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공부제를 정하여 모든 土貢(삼베, 모시, 목화, 꿀, 기름 기타 여러 산물)을 생산한 고을의 백성들이 수도까지 직납하였다.”¹¹⁾라고 되어 있다.

공수인청[公須人廳]【補】 驛土公須의 일을 관장하는 역토에 부속된 관아이다.

공수전[公須田] 고대에 관아에 부속된 일정한 땅인데 관아에서 자유롭게 세를 받아 관청의 일반경비에 충당하였다.

공신전[功臣田] 고려시대부터 왕실에서 공신에게 사급한 일정한 전토이다. 그 자손이 이것을 계승하였는데, 자손이 없는 경우 혹은 사패에 ‘영세에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一代에 한하여 인정되었고 공신 사후에는 관에 몰수되었다.

《經國大典》에 “공신전은 자손에게 전수하는데 승중한 자에게는 3분의 1을 더해준다. 공신전은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죽은 후에는 繼姓子孫에게 옮겨 준다. 적실에게 자손이 없는 경우는 양첩자손에게

10) 度支部司稅局 편, 《韓國稅制考》, 1909, 13면.

11) 《萬機要覽》 <財用篇 3> [大同作貢] “國初, 凡百土貢略倣麗朝之制, 太宗朝始定貢賦, 世宗朝又定貢案, 隨其邑產使土民直納京司矣.”

전수하고, 양첩자손이 없으면 천첩자손의 承重한 자에게 단지 제전 30결을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환속시킨다. (중략) 賜田도 같다. 대가 다하면 국가에 환속시킨다. 賜牌에 영구히 전수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죽은 후에 역시 국가에 환속시킨다.”¹²⁾ 라고 되어 있다.

공원[公園] 사람들에게 유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설치한 일정한 장소이며, 현재 각지에 있는 공원은 대개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다. 원래 조선에는 별도로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없고 관찰사 또는 군수의 관사 안에 ‘園’이라고 일컬어지는 國有不課稅地가 있을 뿐이다.

공인[貢人] 일본에서의 이른바 어용상인이다.

공해기지[公廩基地] 널리 官有建物の敷地를 가리켜 ‘공해기지’라고 한다. 물론 국유불과세지이다. ‘基地’는 ‘基址’라고도 하며 道廳, 郡衙, 兵營 등 모든 공용 건물의 부지에 쓰이는 칭호인 듯하다.

공해기지전[公廩基址田] 공해기지전은 고래로 정부가 건설한 ‘廩’, ‘舍’ 및 ‘倉庫’ 등의 터를 경작한 전답이다. 1894년(개국 503) 국정개혁 때에 폐지된 각 도, 군의 공해가 많았으므로 그 이후는 특히 기지전의 수가 증가하였다. 참고로 폐지된 公廩의 종류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각 兵營, 水營, 鎭營, 鎭堡, 山城, 驛郵, 渡津 등의 관사 및 소속된 각 창고 또는 각 청은 1895년(개국 504)에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2. 각 漕倉: 稅穀을 봉치한 곳으로 1894년(개국 503)에 세곡이 金納으로 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2) 《經國大典》 <戶典> [田宅] “功臣田傳子孫<割註: 承重者加三分之一 ○女子身死後, 移給繼姓子孫, ○嫡室無子孫者, 傳良妾子孫, 無良妾子孫, 則賤妾子孫承重者, 只給祭田三十結, 其餘屬公 … ○賜田同, 代盡則屬公, 賜牌不言可傳永世者, 身歿後亦屬公, 奴婢同>”

3. 각 備荒倉: 還穀(備荒貯蓄米)을 저장한 곳인데 1894년(개국 503)에 社還으로 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각 청사와 창고 등이 폐지된 후, 그 건물과 기지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각 도·군에서 공용으로 빌리거나 부수거나 철폐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지는 각지에서 많이 경작되었다.

과목전[果木田] 과수를 재배한 땅을 말한다. 조선 초기에 왕실용으로 정부가 재배를 장려·감독하면서 과일을 거두었었는데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과일 채취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과목전에는 고래로 면세하였다. 과목전은 원래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및 강원도의 5도에 있었으나 그 군명과 장소의 수는 소상하지 않다.

곽전[藿田] 미역을 채취하는 해안의 땅을 말한다.

관노방[官奴房] 【補】 관아에서 사역한 使喚의 대기소로 지금의 小使室이다.

관동[關東] 강원도의 별칭.

관리영둔[管理營屯] 관리영둔은 전 留守官屯이다. 1711년(숙종 37)에 개성부에 유수를 두었는데 이를 ‘관리사’라고 하고 軍餉과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일정한 땅을 말한다. 관리영둔은 당초 설치한 곳이 적었고 그 설치방법도 소상하지 않다. 관리영은 1895년(개국 504)에 폐지되었는데 소속된 둔토는 이어 탁지부가 관리하였다.

관북[關北] 함경남북도의 별칭이다.

관서[關西] 평안남북도의 별칭이다.

관은[官隱] ‘은결’ 참조.

관제묘[關帝廟] 漢壽亭侯 關羽를 享祀하는 곳으로 하나는 승례문 밖에, 하나는 흥인문 밖에 있다. 《文獻備考》에 “관제묘는 하나는 승

례문 밖에 있고, 또 하나는 흥인문 밖에 있으며, 한수정후인 무안왕으로 추증된 관우를 향사한다.”와 또 “1602년(선조 35)에 흥인문 밖에 관왕묘를 창건하였다.”¹³⁾라는 기사가 있다. “1883년(고종 20)에 관왕묘를 송동에 세우도록 명하였는데, 그 제반 절차는 동남묘의 예에 따랐다<할주: 이것이 북묘가 되었다>.”¹⁴⁾라고 되어 있다.

관죽전[官竹田] ‘죽전’과 같다. ‘죽전’ 참조.

관호수[官戶數] 관청의 장부에 등록된 호의 수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실제의 호수를 ‘民戶數’라고 한다.

※ 관련용어: 민호수[民戶數]

광둔[廣屯] ‘수어둔’ 참조.

광선[廣船] ‘柴船’과 같은 것이다. 1750년(영조 26)에 종래의 船稅를 개정할 때 신설한 과세물건이다.

광흥창[廣興倉] 【補】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는 곳이다. 《文獻備考》에 “1392년(조선 태조 1)에 광흥창을 두었고<할주: 서강에 있다>,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였다.”¹⁵⁾라고 되어 있다.

괴원[槐院] ‘승문원’ 참조.

교방[教坊] 【補】 기생의 연습장을 말한다.

교서관[校書館] 【補】 印類[도장], 經籍, 香祝, 印篆[도장을 篆字體로 새기는 일] 등을 관장하는 곳이다.

구고전[勾股田] ‘구전’ 참조.

13) 《增補文獻備考》 권64 <禮考 11> “關帝廟，一在崇禮門外，一在興仁門外，享漢壽亭侯贈武安王關羽”，“宣祖三十五年，勅建關王廟于興仁門外”；上-83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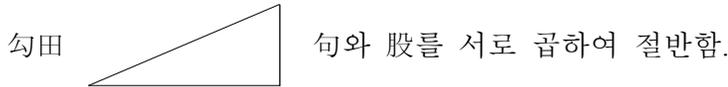
14) 《增補文獻備考》 권64 <禮考 11> “今上二十年，命建關王廟于宋洞，諸般節次，依東南廟例<割註: 是爲北廟>”；上-834면.

15) 《增補文獻備考》 권223 <職官考 10> “本朝太祖元年，置廣興倉<割註: 在西江> 掌百官祿俸”；下-605면.

구문기[舊文記] 新文記와 대비하여 구문기라고 한다. ‘문기’ 참조.

구분전[口分田] 구분전은 文武官職을 가지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떤 조건하에서 일정한 땅을 그 遺族에게 사급하는 것을 말한다. 舊記를 보면 “1047년(고려 문종 1)에 구분전의 제도를 정하였는데, 즉 判하기를, 6품 이하 7품 이상의 관직을 가지는 자로서 連立할 자손이 없는 사람의 처에게는 구분전 8결을 지급한다. 8품 이하와 戰死한 군인의 처에게는 모두 구분전 5결을 지급한다. 5품 이상의 호로서 남편과 처가 모두 죽었는데 아들이 없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전 8결을 사급하되, 그 딸이 출가하면 그 토지는 관에 돌려준다.”¹⁶⁾라고 되어 있다.

구전[勾田] 전답의 모습에서 유래한 명칭인데, 결국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즉 구전 면적은 勾와 股를 서로 곱하여 절반함으로써 산출된다.



※ 관련용어: 구고전[勾股田]

군관둔[郡官屯] 군관둔은 각 道, 각 牧, 府, 郡, 縣屯으로 각 목, 부, 군, 현의 군향과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國有地와 閑曠地를 개간한 것이다. 國典에서 정해진 각 관둔의 결수는 ①대도호부와 목: 각 30결, ②부, 군: 각 16결, ③현: 각 12결이다.

각 관둔전은 국전에 ‘自耕無稅’라고 하므로 아마도 각 군관둔은 각 鎭管屯과 같이 군졸이 경작하는 제도인데 근래에는 각 지방관의 廩

16) 《高麗史》 권78 <食貨 1> [口分田] “文宗元年二月判, 六品以下七品以上無連立子孫者之妻, 給口分田八結, 八品以下戰亡軍人, 通給妻口分田五結, 五品以上戶夫妻皆死, 無男而有未嫁女子者, 給口分田八結, 女子嫁後還官”

田이 된 것도 있다. 또 수백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公廨建築의 용지로 삼고 成川, 浦落 등의 재해로 인하여 결손을 내면서 그 定式의 수를 크게 줄이게 되었다. 1895년(개국 504)에 각 목, 부, 군, 현의 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이를 ‘군’이라 하게 되므로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 소관에 옮겼다. 1899년(광무 3) 이후의 연혁은 다른 각 둔토와 같다.

군기둔[軍器屯] 군기둔은 전 軍器寺가 관장하는 屯土로, 군기시[軍器廠]는 무기 제조를 관장한 관청이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설치된 것으로 工役과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토지이다. 군기둔의 설치방법은 지금 소상하지 않다. 군기시는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어 그 소관 둔토는 ‘器機局’으로 이속되었다. 그 후 기기국이 軍部와 합병됨으로서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에 이속되었으나 1899년(광무 3)에 內藏院이 이를 사정하였다. 1899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군기청[軍器廳] 【補】 군사상의 기밀무기를 취급하는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군뢰청[軍牢廳] 【補】 형구를 취급하는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군보포[軍保布] 군에 베를 거두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를 ‘軍布’라고 하였고, 군포를 거두는 것과 동시에 軍의 ‘保’(‘보’는 양민의 뜻)로서 역시 베를 거두었는데, 이것을 ‘보포’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軍保布라고 칭하고 賦稅의 한 종목으로 하였다.

애당초 군포는, 조선 초기에 양민에게 병역의무를 부담시켰는데,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자, 다수의 장정을 병역에 나가게 하기보다 현역병은 소수로 하고, 다수자는 농업에 종사하게 하여 다른 세 대신 포를 납부시킴으로써 軍需에 제공한 것을 말한다. 약간의 현역병을 남겨두고, 나머지에게는 병역을 풀고 군포를 납부시킨 것에서 시작하였다. 당시는 1명마다 포 2필씩을 납부하였다.

※ 관련용어: 보포[保布]

군사청[郡司廳] 【補】 군의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군자감[軍資監] 【補】 군수 물자를 관장하는 곳이다.

군전[軍田] 군전은 각 도·군의 군량전으로, 지금부터 수백 년 전부터 각 도·군의 富民이 군역을 면하기 위하여 전답을 해당 관청에 납부하여 그 수입으로 신역을 대신하였다. 군전은 처음에는 민유이 있어도 관유에 속한 지가 오래 되어서 백성의 소유권이 자연히 소멸되어 1895년(개국 504) 民軍制가 폐지되자 각군의 군전의 수입을 각군에서 소비하였다. 1897년(광무 1)에는 군부에서 이를 조사하여 拂下한 것이 많다. 1899년(광무 3)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궁방전[宮房田] 【補】 後宮, 大君, 公主, 王子, 翁主를 존칭하여 ‘궁방’이라 하고 이들에게 부속시킨 전토를 궁방전이라 한다. ‘궁장토’ 참조.

궁사[宮司] ‘1사 7궁’의 뜻이다. ‘일사칠궁’ 참조.

궁장토[宮庄土] 一司七宮에 부속된 토지로, 황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황실의 소유지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궁장토를 설치한 목적은 ①內需司: 大殿(황제)의 소용품, ②壽進, 明禮, 於義, 龍洞 4궁: 내전(황후)의 소용품, ③毓祥, 宣禧, 景祐 3궁: 각 궁에 봉안된 妃嬪 제사 봉행의 소용품 등이다. 그리고 이들 토지의 설정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각 궁에서 매수, ②황후 본궁에 附屬, ③국유지에서 이속, ④閑曠地의 折受, ⑤國事犯 재산의 몰수 및 기타 所願에 의한 移付, ⑥각 궁방의 폐지에 의한 이부, ⑦민유지의 投託.

이상 각 토지는 각 궁사의 導掌이 관리하였는데, 각 궁사가 도장에게 교부한 증서에는 자손 대대로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고 써 있으므로 각 도장 개인이 해당 토지를 자기 소유지로 동일시하고 매매·전당하게 되면서 오늘날 그 성질이 매우 불명확해졌다.

내수사와 7궁은 1907년(광무 11) 2월에 폐지되고 소속된 궁장토는 한때 各宮事務整理所에서 관리하였다가 1907년(융희 1) 12월에 각 궁사무정리소가 폐지됨으로써 소관 사무는 帝室財産整理局으로 옮

겨졌다. 1908년(융희 2) 6월에 궁내부 소관과 慶善宮 소속의 부동산이 국유화됨에 따라 각 궁장토는 탁지부에 인계되었다.

궁전[宮田] 궁전은 각 궁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궁장토’ 참조.

권매[權賣] ‘권매’는 임시로 판다는 뜻으로 일정기간 내에 원래의 가격으로 되살 수 있다는 약관을 붙이고 토지 또는 가옥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본의 이른바 ‘買戻約款付 매매’와 같다. 그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의하는데 보통 대략 3년부터 10년이다. 또 ‘還退’라고도 한다.

참고로 해당 문기의 형식을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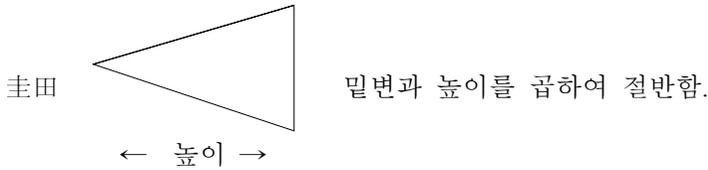
權賣文券			
年號幾年<丁未>某月日 某姓名前明文			
右文記事段 無他以要用所致 某邑某面某里伏在 畝結幾負幾斗落 幾夜味果 某字田幾負幾日耕 限三年<或五年/或十年> 權賣爲去乎 若過此限 以此田畝 永々次知之意 成文記事			
田畝主	姓	名	
證 筆	姓	名	
權매문권			
연호 ○년<간지> ○월일 ○성명 앞 명문			
이 문기의 일은 다름 아니라 쓸 데가 있어서 ○읍 ○면 ○리에 있는 논 ○결 ○부 ○마지기 ○배미와 ○자 번지의 밭 ○부 며칠 갈이를 3년<또는 5년, 또는 10년>에 한하여 권매하거니와 만약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전답을 가지고 영구히 차지할 뜻으로 문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전답주	성	명	
증 필	성	명	

※ 관련용어: 환퇴[還退]

귀후서[歸厚署] 【補】 棺槨의 제조 기타 장례에 관한 일을 관장한 관청으로, 1406년(조선 태종 6)에 설치되었는데 후에 정조 때에 폐지되었다.

규장각[奎章閣]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궁중에 설치된 것으로 당시는 提學, 直提學, 直閣, 待教 등의 관직을 두고 주로 여러 임금의 御製, 御筆, 御章 및 世譜를 보관하는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서나 기록 등의 사무를 겸하여 관장하였다. 최근 궁내부 관제로서 궁내부의 한 부국으로 인정되었다(1908년[융희 2] 9월 『奎章閣分課規程』¹⁷⁾ 참조).

규전[圭田] 밭의 모습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밀변과 높이를 곱하여 절반함으로써 그 면적을 구한다.



균역청[均役廳] 【補】 1751년(영조 27)에 軍民으로부터 베를 징수하는 것을 절반으로 하고 魚鹽船과 隱結田을 가지고 이를 보충하였는데, 이들 사무를 관장시키기 위하여 균역청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1753년(영조 29)에 이를 宣惠廳과 합하고 그 사무는 선혜청 提調로 하여금 겸장하게 하였다.

균역청둔[均役廳屯] 균역청둔은 균역청에 소속된 둔토로 1750년(영조 26)에 軍布를 1명마다 2필씩 반감하는 대신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 후 1802년(순조 2)에 壯勇營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장용영에 소속된 둔토를 균역청에 이속시켰는데 그것이 균역청둔의 기원이다. 균역청둔은 당초 ‘糧餉廳屯’이라 하였는데 장용영에 이속되었다가 장용영이 폐지된 이후 균역청에 이속된 것으로서 그 설치방법은 양향둔과 같다.

균역청은 선혜청에 부속된 관청이므로 그 소관 둔토 역시 ‘선혜청 둔토’라고도 한다. 1894년(개국 503)에 균역청이 폐지됨에 따라 그 소

17) 1908. 9. 25; □□近代法(VII)□□, 351면.

관 둔토는 탁지부의 관리로 옮겨졌고, 1899년(광무 3)에 內藏院 소관으로 옮겨다가 1908년(융희 2) 6월 칙령 제39호 「宮內府所管 및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 및 帝室債務의 整理에 關한 件」¹⁸⁾으로써 각 역둔토와 함께 다시 탁지부의 관리가 되었다.

※ 관련용어: 선혜청둔[宣惠廳屯]

균전[均田] 부호세력이 토지를 겸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고려시대 토지제도이다. 종래 토지를 公田과 私田으로 나누었는데 토지를 겸병하는 폐해가 심하였으므로 사전 제도를 개정하여 모두 평등하게 보호함을 최선책으로 하였고, 그 실행의 한 수단으로써 겸병의 길을 닫아 권세를 억압하기 위하여 균전제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금기[衿記] ‘깃기’ 참조.

금둔[禁屯] 금둔은 전 禁衛營屯으로 1682년(숙종 8)에 訓練軍摠을 줄여 中部別隊와 精抄軍을 합하고 禁衛營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군향과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설치방법은 매수와 籍沒[몰수] 등이다. 1881년(고종 18) 壯禦營을 신설하여 금위영과 합병하였다가 이듬해 장어영을 폐지하여 금위영을 복설하였다. 1884년(고종 21)에 이르러 금위영을 개정하여 別營이라 하고 1888년(고종 25)에 다시 개정하여 摠禦營이라 칭하였다. 금위영을 총어영으로 개칭하였을 때 금위영둔을 摠禦屯이라 개칭하였다가 1894년(고종 31)에 총어영이 폐지됨에 따라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의 관리로 옮겨졌다.

금란계[金蘭契] 동네에서 유지들이 서로 돈을 추렴하여 전답을 구입하여 그 수확으로 동네에서 빈민으로서 자손이 없는 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그 장례식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된 조합의 일종이다.

18) 1908. 6. 25. 칙령 제39호; □□近代法(VI)□□, 491면.

급수선[汲水船] 給水船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중엽에 일종의 船稅를 신설하고 배를 점점 낙인하여 선적을 작성하여 세를 징수한 것에서 유래한 선명이다.

급주전[急走田] 급주(과발꾼)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역토로서 역참에서 자유롭게 징세하였다.

급창청[及唱廳] ‘흡창청’ 참조.

기경[起耕] 개간과 같은 말인데 기경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閑曠地’라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누구나 이를 개간한 자가 그 소유자가 된다. 다만, 기경에 관하여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는 ‘陳田’이라 하여 일단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그 땅이 황폐되고 있는 경우 밭이라면 3년, 강변이나 못인 경우에는 10년간 그 본주가 그 땅을 돌보지 않을 경우 기경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개간에서도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함은 앞의 경우와 같다.

기고청[旗鼓廳] 【補】 깃발 및 북과 관계된 사무를 관장한 지방관청의 일부이다.

기로소둔[耆老所屯] 기로소 소관의 둔토이다. 기로소는 圖像을 두며 또한 입소된 임금들의 御帖을 봉안한 곳이다. 기로소는 국초부터 文臣 정2품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의 양로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그 설치재산과 방법은 왕실에서 하사되었다. 기로소가 1894년(개국 503)에 폐지됨에 따라 그 소속 둔토는 탁지부 관리로 옮겨졌고, 1899년(광무 3) 각 둔토와 같이 내장원에 이속되었다가 1902년(광무 6)에 이르러 다시 기로소가 설치됨에 따라 종래 소속된 둔토는 기로소에 환부되었다.

깃기[衿記] 조선의 量案은 작성된 지 오래되더라도 토지 이동에 관하여 아무 訂正도 하지 않았으므로 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전혀 실

용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각지에서도 반드시 地稅調定簿로서 양안 외로 별도로 納稅者를 기본으로 하여 본인이 소유하거나 소작하는 모든 토지를 一筆마다 명기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깃기[衿記]라고 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衿記

朴太西

官	二卜八束	┌	
同	一卜八束		
同	一卜		
師	一卜二束	┌	田五斗落已
同	一卜五束		
同	一卜五束		
同	二卜		
鳥	十四卜四束	┌	
推	二卜三束	┌	
同	十一卜八束	┌	畓四斗落 主金乃辰 住所西四契
同	八卜三束	┌	
虞	一卜七束	┌	
同	十五卜八束	┌	畓四斗落 雲峴宮所有 舍音下里 李光表
師	一卜	┌	
同	七卜	┌	畓三斗落 主李允明 住本面陳已
同	三卜五束	┌	
始	十卜七束	┌	
同	一卜二束	┌	畓四斗落 主林永三 住所陽面新交里
帝	三卜八束		垓月平安來

姜乃成

帝	四負二束		垓月平李春丹來
---	------	--	---------

※ 관련용어: 금기[衿記]

(ㄴ)

난호둔[欄護屯] 난호둔은 전 각군 난호군둔으로서 ‘난호군’은 砲軍과 같이 각 군에 설치된 것인데, 난호군의 급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둔을 설치하였다. 그 설치방법은 소상하지 않으나 대략 砲軍屯과 같다. 삼남 각 군에서는 난호군이라 칭하였는데 평안도에서는 이를 ‘선위사’라 하였다. 포군 폐지와 함께 난호군, 선위사 등의 제도도 폐지되고 그 소속 둔토는 각 해당 군에서 관리하고 1897년(광무 1)에 이르러 비로소 군부가 이를 조사하였다. 그 해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 관련용어: 선위사둔[善衛士屯]

납도장[納導掌] 창설된 시기는 미상이나 대개 수백 년 전부터 각 궁, 시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 소유 토지를 백성에게 저가(짓가의 5, 6分 혹은 3, 4分)로 權賣하여 경비에 충당하였다. 또한 상응한 세액을 정하여 매득자로 하여금 해당 궁, 사에 매년 납세케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백성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토지 소유권은 해당 궁사가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관련용어: 납가도장[納價導掌]

내섬둔[內贍屯] 내섬둔은 전의 內贍寺屯이다. ‘내섬시’는 임금에게 바치는 기름, 초 및 반찬 등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국초부터 설치되었고 이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둔토를 설치하였다. 그 설치방법은 오늘날 소상치 않다. 1882년(고종 19)에 내섬시가 폐지된 후 司饗院에 속하고 1895년(고종 32)에 사옹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 소속 둔토는 궁내부의 관리에 속하게 되었다.

내수사[內需司] ‘일사칠궁’ 참조.

내시부[內侍府] 궁중의 음식 감독, 傳令, 守文 및 청소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내아[內衙] 군수에게 딸린 사람들의 거처로서 군아에 부속된 건물이다.

내어물전[內魚物廩] 서울에 있는 생선 판매점이다. ‘육주비전’ 참조.

내자둔[內資屯] 내자둔은 전 內資寺屯이다. 내자시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쌀, 국수, 술, 간장, 꿀, 채소, 과일 등의 업무를 관장한 곳으로서 국초부터 설치되었고 이들 물건을 받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 설치방법은 供上各司田과 같다. 1882년(고종 19)에 내자시가 폐지된 후 司饗院에 속하였고 1895년에 사옹원이 폐지된 이후 司菜田과 같이 宮內府 種牧課에 이속되었다. 그 후 종목과가 폐지됨에 따라 내장원에 이속되었다. 1907년(융희 1)에 각 둔의 징수사무를 탁지부에 위탁하였을 때 각 사채전은 위탁되지 않아 帝室財産整理局에서 정리되었다.

노선[櫓船] 돛대를 사용하지 않고 노를 사용하는 배를 말한다. 1750년(영조 26)에 각 도의 선박의 대소에 따라 선세를 정하였는데 당시 그 세액은 노선 1척마다 2냥씩 부과하였다.

노인[路引] 여권과 같은 것으로 일종의 免狀이다. 조선 초기부터 行商船에 노인을 발급하여 세를 징수하였다.

노전[蘆田] 노전은 갈대 소생지로 모두 강변처럼 땅이 물에 채워져 있어 곡식을 播種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땅이다. 그러나 갈대의 수요가 많아 그 수익이 높았으므로 고래로부터 戶曹에서 그 땅에 과세하였다. 후대에 海西(황해도), 경남과 같이 비옥한 곳에 있는 노전의 대부분이 각 宮房으로 이속됨에 따라 기타 각 도에 있는 노전은 각 관아의 경비에 충당시키기 위하여 屯土와 같이 각 관아에 부속시키

고 그 수입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894년(개국 503)에 이르러 노전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뒤에 내장원의 관리로 옮겨졌다. 1899년(광무 3)에 내장원에서 각 둔토를 조사함에 즈음하여 노전도 조사되었으나 당시 民有 노전도 섞여 있어 조사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내장원에서 징수한 賭稅는 각 노전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수확량의 4분의 1을 징수하였다. 1908년(융희 2) 칙령 제39호 『宮內府所管 및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 및 帝室債務의 整理에 關한 件』¹⁹⁾으로 국유부동산으로서 탁지부 소관에 옮겨졌음은 각 둔토와 같다.

뇌신단[雷神壇] 고려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비를 빌기 위하여 제사를 지낸 곳이다. 《고려사》에 “뇌신단은 높이가 3척이고, 사방으로 섬돌을 냈다. (중략) 나라 성내 서남쪽 월산에 있다”²⁰⁾라고 되어 있다.

늪전[廩田] 늪전은 고려 성종이 州, 府, 郡, 縣, 館驛의 ‘公須柴地田’을 정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조선 세종 때 ‘늪전법’을 정하여 부·군·현 각 관사에게 食祿으로서 일정한 전결을 지급하던 것이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府·大都護府·牧 각 관아의 녹은 50결 <할주: 判官이 있으면 40결을 가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반으로 감한다>이고 공수전은 15결<할주: 大路는 10결, 中路는 5결>이다. 도호부 관아의 녹은 50결이다. 군·현 각 관아의 녹은 40결이다. 역의 공수전은 대로는 20결<할주: 황해도는 25결을 가하고 兩界는 10결을 가한다>, 중로는 15결<할주: 양계는 7결을 가한다>, 소로는 5결<할주: 양계는 3결을 가한다>이고 長은 2결, 副長은 1결 50부, 急走는 50부, 대마는 7결, 중마는 5결 50부, 소마는 4결”²¹⁾이라

19) 1908. 6. 25. 칙령 제39호; □□近代法(VI)□□, 491면.

20) 《高麗史》 권63 <禮 5> [吉禮小祀] “雷神壇, 高三尺四出陞. … 在國城內西南月山”

21) 《經國大典》 <戶典> [諸田] 『廩田』[府] [大都護府] [牧] 各衙祿五十結<割註: 有判官則加四十結, 都護府同, 未挈家處則減半, 都護府·郡·縣 同> 公須十五結<割註: 都護府·郡·縣同, 沿路則各加大路十結, 中路五結> ○[都護府] 衙祿五十結 ○[郡]

고 되어 있다.

능원묘[陵園墓] ‘陵’은 조선 황제와 황후의 분묘를 말하고, ‘園’은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및 황제의 생모인 빈궁의 분묘를 말하며, ‘墓’는 여러 嬪과 왕자들의 분묘를 말한다. 능과 원, 묘의 관곽을 안치하는 봉분의 뒤에 있는 산을 ‘主山’이라고 하며, 그 좌우를 포함하는 산맥 가운데 왼쪽을 ‘靑龍’, 오른쪽을 ‘白虎’라고 부르며, 주산과 마주보는 산을 ‘案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주산과 청룡, 백호와 안산의 분수선으로 포위하는 장소를 ‘內垓字’라고 부르고, 그 외곽을 이루는 토지를 ‘外垓字’라고 부르지만, 실제에서는 그 구별이 명료하지 않는 것이 많다.

능원묘위토[陵園墓位土] ‘전묘위토’ 참조.

(ㄷ)

단[壇] 단은 보통 天神地祇를 받들어 모시는 장소(제왕을 받들어 모시는 장소도 壇이라고 함)로서 각 지방의 도읍에는 모두 厲壇, 城隍壇, 社稷壇 및 祈雨壇이 설치되어 있다. 그 땅은 보통 국유 불과세지이다.

단갑읍[單甲邑] 평안남북도에만 있는 명칭으로 그 기원이 소상하지 않다. 단갑읍은 平壤, 義州, 朔州, 昌城, 碧潼, 楚山, 渭原, 江界 등이다. ‘이갑읍’ 참조.

답[畓] 소위 水田으로 일본의 논에 상당한다. 고대 한국에서는 旱田, 水田을 막론하고 똑같이 ‘전’이라 칭하였으나 근래 이 구별이 생겼다.

[縣] 各衙祿四十結 ○[驛] 公須, 大路二十結<割註: 黃海道加二十五結, 兩界加十結> 中路十五結<割註: 兩界加七結> 小路五結<割註: 兩界加三結> 長二結, 副長一結五十負, 急走五十負, 大馬七結, 中馬五結五十負, 小馬四結<割註: 緊路則急走加五十負, 大馬加一結, 中·小馬各加五十負>”

당도리선[唐道里船] 일종의 帆前船이다. ‘당도리’는 먼 곳에서 온다는 뜻이다. 1750년(영조 26)에 각 도의 船隻 규모의 대소에 따라 과세하는데 정한 선명의 하나이다.

대동미[大同米] 상고시대에 소위 地稅는 貢納制로서 수납절차가 극히 번잡하고 많은 폐해가 발생하여서 백성이 곤란과 고통을 겪었다. 마침내 1608년(선조 41)에 비로소 大同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大同’이란 내외의 수요를 통용함을 뜻하는데, 종래의 土貢과 賦役을 혁파하고 田結에 대하여 田稅, 三手米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쌀을 거두어 토공 대신에 京貢을 정하여 각 도군의 수요를 적당하게 배급하고, 그 잔여분은 각 군에 저장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시켰다. 山陵과 巨役 이외에는 백성에게 일체 徭役을 시키지 않도록 정한 일종의 세제로서 먼저 京畿에서 시행된 후 70년을 거쳐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었다. 水田과 畠田을 모두 1결마다 쌀 12두씩 거두는 규정이었는데 지방 상황에 따라 정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동청[大同廳] 【補】 대동미, 즉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관아이다.

대청직청[大廳直廳] 【補】 ‘대청직’을 두고 宣堂을 청소하는 일을 관장하는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도급[都給] 지금의 도급계약과 유사하다. 청부인은 자기가 소유한 재료나 주문자가 공급한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가옥을 건축할 경우처럼 주문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보수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지불하고 또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이 완성됨과 동시에 지불하는 것을 통례로 하나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선불로 할 수도 있다.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나 완성되기 전에 天災 기타 不可抗力 때문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주문자는 그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이미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문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의 瑕疵 補修責任에 대하여는 확고한 관습이 없는 것 같다. 주문자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을 때 충분히 검사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하자가 있을 경우는 즉시 보수를 요구해야 하며 일단 인도 받거나 일이 완성됨을 승인한 이상 후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도 청구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을 통례로 하는 것 같다.²²⁾

도문기[都文記] 문기를 다수 소유하는 대지주가 화재, 수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문기를 망실하거나 그 자손이 문기를 가지고 도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은 해당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한 장은 앞으로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몇 장 또는 몇 십장의 문기를 종합해서 한 개의 문기를 만들어 많은 전답을 併記 또는 열기하였는데 이것을 ‘도문기’라고 한다.

도서[圖署] 宮의 도장을 ‘도서’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널리 印章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도서문적[圖署文蹟] 궁방에서 발급하는 문서로서 궁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말한다.

도서원[都書員] ‘서원’ 참조.

도세[賭稅] 차지료이다. 고래로 부터 한국에서는 소작료는 원칙적으로 농산물로써 납부하였다. 金納의 경우는 정해진 소작료를 납부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납부하였다.

22) 이 내용은 앞의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였다(앞의 역서, 277면).

도자청[都子廳] 지방관 陪從人의 대기소로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도장[導掌] 궁방에 일정한 稅米를 납부하고 宮庄土를 관리하여 그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다. 매년 일정한 세미를 납부하는 이외에 궁방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궁장토에서 추수하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손에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매매·양도할 수도 있다.

도장이 창설된 연대는 史籍에 나타나지 않지만, 대개 선조 때 임진왜란 후 각 궁방이 궁장토를 확장하였을 때에 시작된 것 같다. 원래 선조 이전에는 소위 궁장토라고 일컬어진 것이 없고 職田制에 따라 추수는 戶曹에서 주관하였으므로 사실상 도장을 둘 필요는 없었는데, 후에 각 궁방에서 장토를 가지게 됨에 따라 경작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감독과 收租하기 위한 관리자를 둘 필요가 생겨 이에 도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도제주[都提調] 한국 고대의 관명으로 그 청의 장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도지[賭地, 賭支] 도지는 매년의 수확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小作料를 지불하여 토지를 소작하는 것을 말한다. 소작료는 원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나 대략 보통 수확량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소작 기간은 보통 1년을 기한으로 한다. 地稅, 種子, 肥料 등은 모두 소작인이 부담한다.

도총소[都摠所] 관찰도에서 각 군의 田稅 수납소를 말한다.

도회장소[都會場所] 조세를 金納하기 이전 즉 米穀으로써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 도의 海邊에다가 漕倉과 漕船을 설치해서 각 군수로 하여금 해당 군이 납부한 것을 소속 조창에 領置하게 하고, 각 창은 다시 都差員·差使員 등 관리를 두어 京倉에 수납시켰다. 이들 조창과 조선의 설비가 있는 각 도의 해변에 있는 船舶 집합지를 특히

도회장소라고 한다.

돈녕둔[敦寧屯] 돈녕둔은 전 敦寧府가 관리한 둔토로 ‘돈녕부’는 황실 외척과 관련된 관부로서 領事, 判事, 知事, 同知事, 都正, 判官, 主簿 등 여러 직원을 두었다. 이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둔토를 국초부터 설치하였는데 그 설정방법은 宗親府屯과 같다. 1894년(개국 503)에 돈녕부가 폐지됨에 따라 그 소속 둔토는 탁지부가 관리하게 되었다.

동갑계[同甲契] 소위 계의 일종으로 지방의 유지가 규약을 만들어 서로 돈을 추렴해서 일정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동갑 또는 同學年 아동의 입학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래관시[東萊館市] 조선이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對馬島에 대하여 동래의 일부를 개방하여 通常互市를 허락하였는데, 관리주재소를 ‘館’이라 하고 호시를 허가한 장소를 ‘市’라고 하였다.

동사[同事] 동사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장사나 상거래를 할 경우에 쓰는 호칭으로서 대략 2명 또는 3명인 것이 많고 가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出資는 각 동사원이 평등한 비율로 금전이나 물건을 가지고 出捐함을 통례로 하는데, 일부의 사람이 금전이나 물건을 출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勞務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출자자를 ‘物主’ 또는 ‘錢主’라고 부르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差人’이라고 한다.

동사의 자본은 원래 동사원이 共有하고 손익 분배는 출자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출자액이 균일하면 인원수에 따라 평등하게 그 비율을 정한다. 동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持分은 환불되지만, 사업 상황 때문에 계산하지 못할 경우는 일시 그 지분의 환불이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지분의 讓渡는 동사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동사의 해산 원인은 관습상 명백하지 않지만, 통례상 사업이 완성되거나 동사원이 1인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산되며, 다른 경우에는 협의상 해산이 된다. 해산 후 재산 처분은 먼저 금전 또는 물건을 출자한 자에게 그 액수에 따라 분배하고 그 잔여분을 인원수에 따라 분배하며 손실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균등히 부담하고 제삼자에 대해서는 각자 전부 이행할 책임을 진다.²³⁾

동산[洞山] 소위 마을이 소유한 토지이다. 동민들은 이들 토지를 공금지로 삼고 그 수확은 동민 전체가 자유롭게 처분하였다.

※ 관련용어: 동산전답[洞山田畓]

동신묘[東神廟] 《고려도경》²⁴⁾에 “동신사는 선인문 안에 있다. 정전은 집이 낮고 누추하며 행랑과 월랑 30칸은 황량하여 수리하지 않은 채로 되어 있다. 정전에는 ‘동신성모당’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에게 신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개 그 신상은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혹은 그것이 부여의 처인 하신의 딸이라고 하기도 한다.”²⁵⁾라고 되어 있다.

동포[洞布] 1864년(고종 1)에 흥선대원군이 집정하였을 때 ‘軍布’를 개정하여 ‘동포’라고 하였다. 원래 조선에서는 병역의무는 良民 남자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양반에는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軍保布 역시 양민 남자만 부담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양반에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의 부담액은 증가되지 않고 오직 양민 남자가 부담하는 일부분을 양반으로 하여금 납부시키려고 하였으니 종래 양민과 관헌에 대해 세력을 가졌던 양반이 납부하는 것을 수긍하지 않았으며

23) 이 부분은 앞의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였다(앞의 역서, 280-1면).

24) 원문에는 《고려사》로 되어 있으나 《고려도경》의 오류이다.

25) 《高麗圖經》 권17 <祠宇> [東神祠] “東神祠，在宣仁門內。殿宇卑陋，廊廡三十間，荒涼不葺，正殿榜曰東神聖母堂，以縵幕蔽之，不令人見神像，蓋刻木作女人狀，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로 여전히 양민 남자만이 부담하게 되었다.

동헌[東軒] 군수의 사무실로 군아의 하나이다.

두락[斗落] 두락은 밭 면적의 호칭으로서 일본에서의 몇斗蒔와 같이 종자 몇 말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전답을 계량하는데 통례적으로 1두락을 단위로 한다. 면적의 넓고 좁음은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150평 정도이다.

둔토[屯土] ‘역둔토’ 참조.

(ㄱ)

리[里] ‘洞’과 동일한 단계의 토지구획의 명칭이다. 지방에 따라 ‘村’이라 하기도 한다.

리임[里任] ‘소임’ 참조.

리전[里田] 이른바 마을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수확은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한다. ‘동산’ 참조.

※ 관련용어: 리산[里山], 리답[里畓]

(ㄴ)

마름[畝音] 소작인의 감독 및 소작료의 징수에 종사한 자를 보통 ‘마름’이라고 하였다. 또는 ‘監官’이라고도 하였다. 일본의 ‘差配人’과 같다.

마보단[馬步壇] ‘마조단’ 참조.

마상초[馬上草] 간단한 양안처럼 보이는 것으로 즉 한국 북부의 일부 지방에는 각 면에 ‘田監’이라 일컫는 것이 있다. 3년마다 한 번 토

지의 상황을 답사하고 번호 순서에 따라 이것을 열기하여 징세하는데 사용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戊申 6月 日 溫面2里 2所元田 馬上草			
廉 자 지번			
第2	9負 3束	┌	
第3	64負 4束	┌	李己永
次1	2負 3束	┌	
內	2負	┌	집터
	3負	┌	尹中賢
	在 1負		
第4	次2 1負	┌	
第5	2負 3束	┌	
		┌	李丙烈
第6	7負 2束	┌	

‘마상초’는 지방에 따라서는 깃기[衿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또 각지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마위전[馬位田] 본전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역마의 사육료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마제단[禱祭壇] 蚩尤神(치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북부 순화방에 있다. 《文獻備考》에 “조선왕조의 마제단은 동교와 북교에 있어 치우신에 제사지낸다.”라고 하고, “1689년(숙종 15)에 봉상시에서 ‘치우신의 위관이 오래되어 손상되었으니 청컨대 위관을 고쳐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뢰니, 왕은 이에 따랐다.”²⁶⁾라고 되어 있다.

마조단[馬祖壇] 馬祖(《周禮》의 주에 “천사란 房宿이 용마가 된 것이다.”²⁷⁾라고 되어 있다)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고려 의종 때에 설치

26)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本朝禱祭壇在東·北郊, 享蚩尤神”, “肅宗十五年, 奉常寺啓, 蚩尤之神位版, 年久破傷, 請改造位, 從之”; 上-828면.

27) 《周禮注疏》 권33 “天駟也, 房爲龍馬”

되었다. 《文獻備考》에 “조선왕조의 마조단은 서울 동대문 밖에 있고 제도는 영성단(농업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조를 제사지낸다.”²⁸⁾라고 되어 있고, 또한 “1669년(현종 10)에 사복사에서 아뢰기를 ‘마조 등의 제사는 언제부터 폐지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살곶이 목장의 세 곳에 단을 쌓은 것이 있고 속명으로 馬步壇이라 하는데 그 터가 깨끗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월인데다가 또한 말의 전염병의 시절을 마주하였으니 청컨대 마조제를 베풀어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 왕은 이에 따랐다.”²⁹⁾라고 되어 있다.

※ 관련용어: 마보단[馬步壇]

마호주[馬戶主] 마호주는 역에 부속하여 역마를 사육하는 의무만 있고 별도로 賭稅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호주는 ‘마위전’을 경작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망문상전[望門床塵] 잡화상을 말하는데, ‘망문’은 남문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면[面] ‘면’은 조선의 하급 행정구획으로 종래 지방마다 황해도와 같이 ‘坊’ 또는 함경도처럼 ‘社’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1894년(개국 503)의 개혁 이후 일반적으로 ‘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면’의 넓이는 각 지방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나 대략 일본의 ‘町’, ‘촌’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면’에는 ‘면장’을 두고 종래 군수가 이를 임명하고 면내의 행정사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1910년(明治 43) 이후 道長官이 이를 임명하게 되었다.

면서원[面書員] ‘서원’ 참조.

28)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本朝馬祖壇, 在東郊, 制同靈星亭馬祖”; 上-829면.

29)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顯宗十年, 司僕寺啓, 馬祖等祭, 未知廢自何時, 而箭串牧場有三處築壇, 俗名之曰馬步壇, 基址宛然. 今因仲春之月, 且值馬疫之日, 請設行馬祖祭, 從之”; 上-828면.

면세절수[免稅折受] 황무지를 하사받고 이것을 개간하여 궁장토를 만드는 것을 ‘면세절수’라고 한다. 면세절수는 《萬機要覽》에 의하면 “선조 때에 일어난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이 줄어들고 황무지가 늘어나서 각 궁방에 주어야 할 전답이 부족하였으므로 ‘예빈시’(賓客, 燕享, 宗宰, 供饋 등의 일을 관장하는 관아)에 소속된 땅을 나누어 준 것에 기원이 있다.”³⁰⁾라고 되어 있다. 예빈시에 소속된 땅을 나누었다는 것은 예빈시가 소관한 민유지의 收稅權을 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유지의 수세권을 궁방에 부여하였다는 것은 국고의 입장에서는 국세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궁방의 입장에서는 즉 ‘면세절수’를 의미한다.

면임[面任] ‘소임’의 일종이다. ‘소임’ 참조.

면주인[面主人] 면에 소속된 小使를 일컫는 것으로, 주로 군아에서 각 면에 내리는 명령을 전달하고 공문서 등을 송달하는 일을 맡았다.

명자책[名子冊] 명자책은 衿記를 손으로 베껴서 납세자별로 각기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의 면적 및 결수의 총계를 일괄적으로 열기한 것으로 징세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명자책은 깃기와 같이 지방에 따라 명칭이 달랐으나 그 형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白 浦	
朴 太 臣	91 卜 8 束	
姜 乃 成	4 卜 2 束	
合	96 卜	

모[牟] ‘모’는 보리를 뜻한다.

목[木] ‘목’은 木綿을 뜻한다.

30) 《萬機要覽》 <財用編 2> [免稅] “宣祖壬辰亂後，人民稀少 極目陳荒，而王子翁主相繼，出閭無可賜與之田，戶曹判書韓應寅，以禮賓寺，所屬百官宣飯，及倭野人接待，魚鹽柴炭，所出之地，割而與之，其時以爲善於變通而遂成，後來折水之法，此乃免稅之所由始也”

목위전[牧位田] 목장의 용지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고 그 일부는 ‘牧子’에게 耕食·服役시켰다. 목자가 경식하는 토지 이외는 監牧官吏가 둔토와 같이 관리하고 그 수익으로써 경비와 기타 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목위전’이라고 하였다.

목장[牧場] 목장은 고려의 제도에 따라 조선 초에 설치된 것이다. 우마를 방목하기 위하여 각 도마다 적당한 곳을 선택하여 일정한 구역을 나누고 감목관리와 목자를 두어서 방목시켰다. 설치 당시는 목장의 면적이 매우 광대하였으나 그 후 목장의 제도가 느슨해짐에 따라 부근의 주민이 금령을 어기고 목장을 개간하게 되어, 오늘날 순연한 민유지 상태인 토지에도 이전에 정부의 목장이었던 곳이 적지 않다. 1894년(개국 503)에 목장이 폐지됨에 따라 당해 토지의 관리는 궁내부에 이속됨과 동시에 궁내부는 관리를 각 도에 보내어 그 전답을 조사하여 賭稅額을 정하였다. 그 후 1899년(광무 3)에 궁내부는 다시 각 도에 관리를 보내어 목장과 부속된 전답을 조사하며 전답 1負당 賭錢 1兩(20錢) 내지 8錢을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단, 結稅는 소작인이 직접 국고에 납부하였다. 그리고 목장과 그 부속전답이 국유지로 이속됨과 함께 탁지부가 관리하게 된 것은 역둔토와 동일하다.

묘[廟] ‘묘’는 帝王이나 偉人의 신위를 봉안하는 곳으로 조선에서는 太廟 이외에도 지방 도읍에는 반드시 ‘文廟’나 ‘武廟’가 있다. 문묘에서는 공자를 제사지내고 무묘에서는 관우를 제사지낸다. 그 부지는 모두 국유지로 간주되며 不課稅地임은 당연하다.

묘위전[墓位田] 분묘를 간수하고 또 청소시키기 위하여 ‘墓直’이라는 사람을 두고 그 보수로서 耕食하게 하는 분묘부속의 전답이다. 소작료를 받지 않지만,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그 수확 중에서 비용을 지출시켰다.

※ 관련용어: 묘직전[墓直田]

묘지[墓地] ‘묘지’는 개인이 소유한 것이 많으나 도읍 부근의 마을에서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묘지와 같은 것도 있다(‘北邙山’ 또는 ‘無主空山’이라고 함은 이것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산지에 있고 보통 不課稅地이다.

본래 조선인은 일반적으로 분묘를 매우 존중하고 분묘의 위치의 좋고 나쁨은 죽은 사람의 冥福과 큰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가의 용성과 쇠락 역시 이에 따라 지배된다고 생각하므로 묘지를 선정하는데 크나큰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묘지에 관한 관습은 종종 복잡하고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 역시 아주 충분하다. 즉 《刑法大全》에서는 ‘墳墓界限’, ‘喪葬違禮’, ‘葬埋違犯’, ‘墳墓侵害’³¹⁾ 등에 대한 형벌에 관하여 수 절 수십 조에 걸쳐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재판사무의 대부분이 항상 분묘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을 볼 때 한국인의 분묘를 존중한 마음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원래 관습상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자유로이 묘지를 선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반드시 먼저 地官(‘風師’라고도 한다)에 부탁하여 소위 風水說에 따라 묘지를 결정하여야 하였다. 지관이 지정한 장소에 자기 소유지가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그 땅이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묘지를 선정하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위 ‘山訟’이 끊이지 않았다. 高位顯官에 있는 사람 또는 부자들은 그 힘 또는 돈을 이용하면서 적당한 묘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빈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도저히 정당한 수단으로 적당한 땅을 선정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國有 森林山野에 暗葬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옛날부터 분묘 주위에 수목을 禁養한 관계로 오늘날 묘지의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땅이 적지 않다고 한다.

31) 각각 형법대전 제32조, 제443조~447조, 제448조~457조, 제458조~제465조.

분묘를 설치하는 장소는 대부분 남향인 산지로 전후에 산이 배치된 形勝地를 선택하였다. 왼쪽을 ‘靑龍’, 오른쪽을 ‘白虎’하고 하며, 뒤쪽은 ‘主龍’, 앞쪽을 ‘案山’이라고 한다. 부호들은 묘지에 石碑와 墓守閣을 세운다. 또 ‘山直’이라는 과수꾼을 위하여 ‘山直田’을 두었다. 이렇게 분묘를 존중한 결과, 묘지에 관하여 후일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항상 목숨을 걸고 싸운다.

묘직전[墓直田] ‘묘위전’ 참조.

무세[巫稅] 원래는 무녀로 하여금 왕궁에서 기도하게 하였다가 그 뒤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세를 징수하였는데, 《續大典》에 의하면 무녀 1명당 목면 1필을 징수하였다.³²⁾

무열사[武烈祠] 평안남도 평양 서문 안에 있다. 명나라 兵部尙書 石星, 提督 李如松, 左協將 楊元, 中協將 李如栢, 太協將 張世爵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文獻備考》에 “1593년(선조 26)에 창건하였다. 사당 안에 원래 四公의 그림을 걸었는데, 정묘병란(1627년)으로 여러 그림들이 모두 없어져 석성과 이여백의 그림만 남았고, 결국 위판으로 대신하였다.”³³⁾라고 되어 있다.

무예둔[武藝屯] ‘무위소’처럼 皇宮警視廳에 비유할 수 있는 관아이다.

※ 관련용어: 무예청[武藝廳]

무위둔[武衛屯] 무위둔은 전 武營屯土이다. 1878년(고종 15)에 훈련군졸 1司를 옮겨 ‘武衛所’를 설치하고 군향과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둔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移屬과 매수 및 屬公 등이 있

32) 《大典會通》 <戶典> [雜稅] “[續] ○外方巫女錄案收稅<割註: 每名稅木一匹, 依大同木例, 五升三十五尺爲準, 作役價亦同 ○咸鏡道明川以南則收正布, 亦五升, 以錢錢捧則一匹代二兩五錢 ○兩西巫女稅全數, 管餉會錄 ○京巫女屬活人署 [增] 京城巫女逐出江外, 收布今廢>”; 속대전을 편찬할 때 수록된 조문으로 대전통편을 편찬할 때에는 폐지되었다.

33) 《增補文獻備考》 권64 <禮考 11> “宣祖二十六年册建. 祠中舊揭四公畫像, 丁卯兵亂, 諸像皆見失, 只餘石星·李如栢像, 遂代以位版”; 上-835면.

다. 1881년(고종 18)에 무위소를 ‘무위영’이라 개칭하였다가 이듬해에 그 영을 폐지하여 그 소관 둔토를 親軍營에 이속시켰는데 이속된 후 ‘親屯’으로 개칭한 것이 많다. 1894년(개국 503)에 친군영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에 이속되었다. 이후 연혁은 다른 각 둔과 동일하다.

무주공산[無主空山] 종래 조선에는 ‘무주공산’이라고 부근 마을 주민이 자유로이 연료 등을 채취하는 산야가 있었다. 이 땅은 일견 無主地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관리가 미치지 않는 國有地이다.

무토결[無土結] 무토결은 ‘虛結’이라고도 하고, 結이 있는데도 실제로 토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원래 무토결이 생긴 이유는 일찍이 군수가 地稅를 징수하던 시대에는 減結·免稅만을 度支部에 신청하고 還起結의 陞總에 주의하지 않았으므로, 탁지부에서는 해당 군의 免稅結數의 다과와 그 해의 수해 유무 등만을 조사하고 군수에게 그 해의 승총해야 할 결수를 訓令하였다. 그러나 군수는 환기지에 그 결을 배부하지 않고, 오히려 각 면·동에 원래 있던 결 이외로 새로 승총할 결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면·동의 結民은 다년에 걸친 압제에 익숙해지고 있어서 별로 異議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동민에게 할당하여 징수할 때 실제로 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結稅를 부담하는 사태가 생겼다.

※ 관련용어: 허결[虛結]

문기[文記] 문기는 권리에 관한 私書證書의 하나로서 契約書의 일종이다. 원래 조선에서는 토지에 관한 公證制度가 없어 권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매우 미진하였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문기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내 이것으로써 토지에 관한 권리 得喪의 요건으로 하는 관습이 생겼다.

문기는 그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토지에 관한 權利取得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法律行爲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고, 또 하나는 권리의 由來가 정확하고 그 권리를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를 증명하는 문기를 ‘新文記’라고 하고 후자를 증명하는 문기를 ‘舊文記’라고 한다. 최초의 권리 취득에서는 신문기만 필요하나 이후 취득·이전할 경우는 필히 구문기를 첨부하여야 하며 권리 이전이 거듭될수록 구문기의 수가 증가된다. 참고로 토지매매에 관한 문기 형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年 月 日	前 明 文
右明文事段 宅以移買次 何郡何面何洞 所在田 何字結卜何負何束 四標分明是遣 幾日耕果 畝何字結卜何負何束 四標分明是遣 價折錢文幾許 依數捧上是遣 舊文券(文記)幾張(幾度)果 新文記壹張 永々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 雜談是非之端則 持此告官卞正事	
賣	主 姓名 右 寸
買	主 同 手 決
筆	執 同 同
證	人 同 同
年 月 日	앞 명 문
이 明文을 작성하는 일은 옮겨 사려고 어느 군 어느 면 어느 동에 있는 밭 ○자 결복 ○부 ○속 四標는 分明하고, 며칠 같이 논 ○자 번지의 결복 ○부 ○속 四標가 分明하고, 값으로 錢文 ○○를 수대로 받고 구문권(문기) ○장과 신문기 1장을 받고 영영히 파니 훗날에 만약 자손 중에서 잡담과 시비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관 주인	성 명 우 촌
산 주인	같음 수 결
필 집	같음 같음
증 인	같음 같음

※ 관련용어: 문권[文券]

민충단[愍忠壇] 명나라 ‘征東官軍’을 제사지내는 곳으로, 1593년(선조 26)에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서쪽 교외 弘濟院 부근에 있다. <<文獻

備考》에 “1760년(영조 36)에 관군의 위판을 봉상시의 신실에서 선 무사의 동무로 옮겨 받들었다.”³⁴⁾라고 되어 있고, 또 “민충단이 또 평안도 평양부 을밀대 북쪽에 있고, 명나라의 전사한 장수와 군사를 제사지낸다. 1593년(선조 26)에 창건하였다.”³⁵⁾라고 되어 있다.

민호수[民戶數] ‘관호수’ 참조.

(ㄷ)

반작[半作] ‘병작’ 참조.

발소둔[撥所屯] 발소둔은 전 擺撥所屯이다. 파발소는 변경의 소식을 차례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1597년(선조 30)에 西北兩道에 ‘騎撥’·‘步撥’ 2개의 撥站을 설치하였다. 기발은 25리마다 1참을 두고 보발은 30리마다 1참을 두며, 발참마다 ‘撥長’ 1명과 ‘撥軍’ 2丁을 두었다. 발소둔은 발소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나 그 설정방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1894년(개국 503)에 발참이 폐지되었을 때 발소둔은 귀속하는 데가 없었다가, 1899년(광무 3)에 내장원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년 이후의 연혁은 다른 둔토와 동일하다.

※ 관련용어: 파발소[擺撥所]

발장청[撥將廳] ‘발장’을 두고 文牒·勅卒을 발송하는 일을 관장한 각 역로에 부속된 관아를 말한다.

발졸청[撥卒廳] 각 역로에 부속하여 ‘발졸’을 두고 문첩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일을 관장한 곳이다.

34)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英祖三十六年, 官軍位版, 自奉寺神室移奉於宣武祠東廡”; 上-832면.

35)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愍忠壇, 又在平安道平壤府乙密臺北, 祭明朝戰亡將士. 宣祖二十六年册築”; 上-83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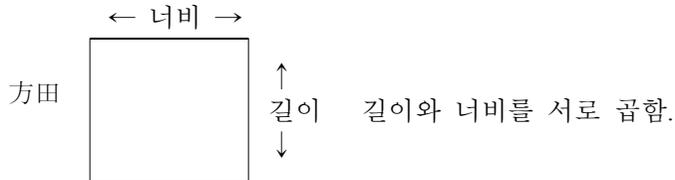
방납[防納] 조선에서는 고래로부터 토호들이 지세를 代納하였는데 그것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청구를 하였으므로 폐해가 생겼다. 이를 ‘방납’이라고 하였다.

방렴[防簾] 어살[漁箭]의 한 종류이다. ‘어전’ 참조.

방영둔[防禦屯] 방영둔은 전 防禦使營屯이다. 인조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 4도에 ‘방어사’를 두어 해당 지방관에게 겸임하게 하였다. 이어서 삼남지방에도 방어사가 설치되었는데, 방어둔은 이들에게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그 설정방법은 각 兵營屯과 동일하다. 처음에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방어사를 겸하게 하였으므로 그 소관 둔토는 郡官屯이었고 그 이외에 방어영둔이 설치된 것은 없었다. 1895년(개국 504)에 각 防禦營이 폐지됨에 따라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 관리에 속하게 되었는데, 당시 탁지부에서는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고 1897년(광무 1)에 군부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년 이후의 연혁은 다른 둔토와 동일하다.

방자청[房子廳] ‘방자’를 두고 使喚과 아침·저녁의 식사 등의 일을 관장한 감영 소속의 관아이다.

방전[方田] 토지의 모습에 따라 이름 지은 것으로 길이와 너비를 곱하여 그 면적을 구한 것이다.



방직청[房直廳] ‘방직’을 두고 사환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감영 소속의 관아이다.

배미[夜味; 排味] 배미는 ‘야미’ 또는 ‘列田’이라고도 하고, 밭두둑으로 구획된 한 지역 내의 농지를 말한다. 일본의 ‘一筆’에 상당한 것이다.

※ 관련용어: 야미[夜味], 열전[列田]

백정[白丁] ‘피한’ 참조.

범[犯]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온 방향을 지칭한 것으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면 ‘東犯’,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南犯’, 남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면 ‘西犯’,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北犯’이라고 한다.

별감청[別監廳] 원래 鄉廳에 ‘座首’ 또는 ‘別監’이라는 직원을 두었는데 별감청은 별감의 사무소를 말한다.

별장청[別將廳] ‘별장’을 두어 각 나루터에서 배의 운행을 관장한 곳이다.

병방청[兵房廳] ‘병방’을 두고, 상사의 명을 받아 軍務·郵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지방관아이다.

병영둔[兵營屯] 병영둔은 전 각 도의 兵使屯을 말한다. 조선왕조 초기부터 각 도의 요충지에 ‘兵馬節度使營’을 두어 도내의 兵馬(육군)를 통솔케 하였는데 이들의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 설정방법은 國典에 의하면 主鎭(節度使)은 밭 20결을 정식으로 하였으나, 그 후에 정식 없이 설치한 것은 대개 ①한광지의 개간, ②관유 재산으로 매수, ③무주지의 국가에의 귀속 또는 백성으로부터의 기부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1895년(개국 504)에 각도의 병영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그 소관 토지는 탁지부에서 관리하게 되었지만, 당시에 탁지부에서는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고 1897년(광무 1)에 군부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년 이후의 연혁은 다른 둔토와 동일하다.

병작[併作] 병작은 ‘打作’, ‘半作’ 또는 ‘分作’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토지 이용방법이다. 토지 소유자가 結稅 및 種子를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경작에 필요한 땅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작물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비료·기구 및 일체의 노동력을 부담하며, 이에 의하여 공동으로 토지의 경작에 종사하여 그 수확은 양자 간에서 平分하였다. 이 방법은 종래 賭地와 함께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 관련용어: 반작[半作], 분작[分作], 타작[打作]

병조[兵曹] 육조의 하나이다. ‘육조’ 참조.

병조둔[兵曹屯] ‘용호둔’ 참조.

보[洑] ‘보’는 논외 관개를 목적으로 계곡이나 하류에서 논으로 물을 끌어들이도록 통하게 하는 도랑을 말한다. 방죽[堰]과 도랑[溝渠] 전체를 ‘洑泊’이라고 한다. 조선처럼 수리가 불편한 땅에서는 원래부터 보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지방 백성의 공동작업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그 이외에 宮房이나 양반들이 독자적으로 이를 운영한 것도 있었다. 洑主와 지주가 다른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백미 혹은 벼를 ‘水稅’로서 지주 혹은 소작인에게서 징수하였다.

보세[洑稅] 보세는 堤堰을 축조하는 비용을 帝室에서 지출하고 이에 대하여 관개용수 공급을 원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것인데, 그 성질은 오히려 給水料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포[保布] ‘군보포’ 참조.

복[卜] 복은 ‘負’의 약자이다. 1부는 즉 10속에 해당된다. ‘부’ 참조.

복덕방[福德房] 복덕방은 가옥의 매매·임차에 관한 중개자의 조합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각 坊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가옥의 매매 등은 아예 이들 조합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 복덕방은 漢城府의

감독을 받았다. 실제로 매개를 담당한 자를 ‘家儉’라고 하는데 계약 당사자 쌍방에서 일정한 口錢을 수수하였다. ‘가쾌’ 참조.

복정[卜定] 일본어로 ‘配賦’(할당)와 같음.

복호[復戶] 忠臣·義士 또는 孝子를 배출한 동네의 戶役徵收權의 일부를 이들 자손에게 하사한다는 뜻이다. 복호는 호역을 면제함을 말하고, 復戶結은 곁에 대한 賦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봉대둔[烽臺屯] 봉대둔은 전 烽燧基址에 기경한 밭이다. 봉수제도는 변방의 경계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1炬, 적이 출현하면 2거, 국경 가까이에 접근하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接戰하면 5거를 올렸다. 밤에는 불을 올리고 낮에는 연기를 올렸으므로 봉대를 ‘연대’라고 하기도 하였다. 당초에는 ‘直烽’·‘間烽’을 통하여 643개의 봉수가 있어 변방의 경비에 사용하였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제도가 점차 해이해져서 烽燧軍이 함부로 봉수界限 안을 기경함에 이르자, 1895년(개국 504)에 봉수제를 폐지하고 봉수기지에서 개간할 만한 땅에서는 모두 기경하게 하였다. 봉대의 배치는 상술할 수 없으나 각 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었고, 봉대·연대기지에 있는 기경전에 관해서는 1899년(광무 3)에 내장원에서 조사하였다. 지금 참고로 이 조사에서 밝혀진 烽臺·烟臺 基址田은 ①경기 南陽 烽臺柴場, ②충북 文義 烽臺田, ③황해 豊川 烽屯, ④평남 평양 烽燧屯, 順安 봉둔, 咸從·甌山 烟臺土, 三和 봉수둔, 安州 봉대시장, ⑤평북 鐵山 연대토, 泰川 봉수대, ⑥ 함남 利原·北靑·洪原 봉둔, 咸興·甲山 봉대둔 등이다.

※ 관련용어: 연대둔[烟臺屯]

봉산[封山] 봉산은 소나무의 육성을 장려하여 벌채를 금지한 국유림이다. 원래 궁실의 건축용 자재·전함·조선 및 황족의 棺槨用으로 소나무의 수요가 매우 많았으므로, 정부가 養松하는데 적당한 땅을

골라 이를 ‘봉산’으로 정하여 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함경 6도에 설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당시는 봉산을 犯境·盜伐·放火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그 법이 널리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범한 자가 아주 많았고, 지금은 나무가 있는 곳이 적다. 봉산은 설정 당시는 각 도에 있어 그 수는 매우 막대하였으나 1899년(광무 3)에 내장원에서 각 둔토를 조사하였을 때 파악된 것은 ①충청남도 鰲川 安眠島 봉산, ②전라북도 扶安 邊山 봉산, ③함경남도 咸興 松田, ④함경남도 永興 송전, ⑤함경남도 德源 송전 등 네 곳에 지나지 않았다.

봉상시둔[奉常寺屯] 봉상시둔은 전 봉상시가 관리한 토지이다. 봉상시는 제사를 관장한 관사로 제사용 채소를 바치고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이며 그 설정방법은 供上各司田과 동일하다. 1894년(개국 503)에 봉상시가 宮內府 관할로 속하게 된 후에도 그 소관의 토지는 여전히 봉상시가 관리하였으나 1899년(광무 3)에 內藏院으로 이속되었다. 그러나 이속 후에도 내장원에서 제사용 棗盛·채소 등을 여전히 봉상시로 수송하였다. 1907년(융희 1)에 봉상시가 폐지됨에 따라 그 사무는 궁내부 掌禮院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각 둔의 징수사무가 궁내부에서 탁지부로 위탁되었을 때도 이 둔토는 위탁되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부[賦] 三手米 등 貢賦 대신으로 징수한 공과를 말한다.

부[負] 10속을 ‘1부’라고 한다. 10속은 한 사람이 부하하는 수량이므로 ‘부’라고 이름을 지었다.

부석가[負石價] 일본의 ‘仲仕賃’과 같은 것이고 船價 이외의 잡비를 말한다. ‘선가’ 참조.

부선[俘船] ‘傳馬船’을 말한다. 1750년(영조 26)에 선세를 개정하였을 때 부선 1척당 선세 4량을 징수하였다.

부장전[副長田] 驛에는 驛長과 副長이 있어 역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역장에게는 ‘長田’, 부장에게는 ‘副長田’을 부속시키고 그 수입으로 역장과 부장의 봉급과 수당을 충당하였으며, 관계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수세하였다.

북묘[北廟] 동부 松洞에 있다. 關帝를 제사지내는 곳이다. ‘관제묘’ 참조.

분작[分作] ‘병작’ 참조.

불역전[不易田] ‘正田’과 같음. ‘정전’ 참조.

불향전[佛享田] ‘사찰기지’ 참조.

비[碑] 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가를 위하여 殉國한 사람 혹은 위대한 훈공이 있었던 사람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관에서 건설하고 봄·가을로 두 번 관이나 그 자손이 제사를 지낸 것이 있다. 또 孝子·烈婦를 표창하기 위하여 관에서 이를 旌表하거나 혹은 지방 관리의 공적을 頌表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민이 건설한 것이 있다. 비를 세우는 재료는 銅鐵·돌·나무 등이 있었는데, 동철비는 지방관의 뛰어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고, 石碑는 뛰어난 공로는 없으나 清廉·有德한 자를 표창하기 위한 것이며, 木碑는 일시 혹은 지방에 주재한 관리의 頌德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碑面에는 관명·성명·경칭 등 아래에 ‘善政碑’, ‘憂民善政碑’ 혹은 ‘永世不忘碑’ 등의 글을 새긴다. 그리고 이들 건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비각’이라는 건물을 설치한 것도 있다.

※ 관련용어: 비각[碑閣]

비변사[備邊司] ‘籌司’이다. 원래 중외 군국의 직무를 총괄하는 중앙 관아로서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都提調’, ‘提調’(이상 정원 없음), ‘副提調’ 1인, ‘郎廳’ 12인을 두었다.

비장청[裨將廳] 관찰사 또는 節度使·防禦使의 아래에서 각 幕僚의 사무를 관장한 곳으로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빙고둔[氷庫屯] 빙고둔은 氷庫署屯이다. 氷庫署는 얼음을 보관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관아로, 조선 초기에 동서 두 곳이 있었다. ‘東庫’에서는 제사용 얼음을 공급하였고, ‘西庫’에서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얼음과 백관들에게 하사하는 얼음을 공급하였다. 창고의 지붕과 기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둔토를 설치하였는데, 그 설정방법은 折受이다. 1894년(개국 503)에 빙고서가 폐지되면서 그 후에 소관 둔토 가운데 ‘高陽草坪’은 ‘선공감초평’과 같이 궁내부 내장사에 귀속되었고, 그 나머지는 궁내부 種牧課에 귀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목과에 귀속된 빙고둔은 1907년(융희 1)에 왕실에 공급된 각사의 여러 토지와 함께 각둔 사무를 탁지부로 위탁하였을 때도 위탁되지 않은 채 의연히 궁내부에서 관리하였다.

빙부전[氷夫田] 조선 초기 빙고에 부속된 빙부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1명당 전토 1결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빙부전’이라고 한다.

(八)

사[祠] ‘사’는 忠臣·義士 또는 국가에 위대한 공훈이 있는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으로 매년 봄, 가을에 관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이 건설된 토지는 보통 국유·무세지이다.

사간원[司諫院] 【補】 1392년(조선 태조 1)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설치된 관청 중에서 諫爭·논박을 관장한 것으로서, 大司諫(정3품), 司諫(중3품), 獻納(정5품), 正言(정6품) 등 직원을 두었다.

사고[史庫] 역대 왕조의 國史와 고문서를 비치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설치된 書庫이다. 특별히 후미지고 굵이진 곳에 설치한 이유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고문서가 망실됨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관은 지방관이 책임을 맡았고 각 사고에 부속된 ‘寺僧’으로 하여금 직접 감수케 하였다. 이들의 경비는 사고에 부속된 재산과 국고에서 지출하였다. 사고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①傳燈寺(경기도 江華郡), ②奉先寺(동 楊州郡), ③月精寺(강원도 江陵郡), ④覺華寺(경상북도 奉化郡; 이상 국유), ⑤赤裳山(전라북도 茂朱郡; 宮內府에 인도).

사도시[司導寺] 【補】 궁중에서 사용하는 米穀 및 간장과 양념 등의 일을 관장한 기관이다.

사령청[使令廳] 【補】 각 지방관아에 부속된 심부름꾼(사환, 小使)의 대기소이다.

사복둔[司僕屯] 사복둔은 전 司僕寺 소관 둔토이다. 사복시는 황실용 가마와 수레, 말과 마구간을 관장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목장을 관할하는 관청이다. 본시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관유재산을 가지고 매수한 것이다. 사복시는 1894년(개국 503)에 ‘太僕寺’로 개칭되고, 궁내부에 속하여 그 소관 둔토는 각 목장과 동일하게 궁내부 관할이 되었다. 다만, 한성부 내에 있는 것은 어느 관청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았다. 1907년(융희 1)에 이르러 징수사무를 탁지부에 위탁한 것은 각 둔과 동일하다.

사역원[司譯院] 【補】 주위 여러 나라의 언어의 번역을 관장한 기관이다.

사용원둔[司饗院屯] 사용원둔은 전 司饗院 소관 둔토이고 사용원은 왕과 왕비의 음식을 관장한 곳이다. 본원 및 분원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折受하였다(분원은 경기도 楊平郡에 있고 사기를 제조하였다). 본원은 1894년(개국 503)에 궁내부 관할이 되고 1895년(개국 504)에 ‘典膳司’로 개칭하였다. 이와 동시에 분원을 폐지하였다. 분원 폐지와 함께 그 소관 둔토도 폐지되

었으나 약간 수는 1899년(광무 3)에 내장원에서 查執하였다.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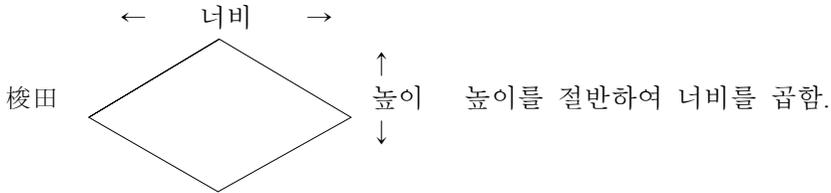
사위전[寺位田] ‘사찰기지’ 참조.

사위토[祠位土] ‘서원토’ 참조.

사음[舍音] ‘마름’ 참조.

사장[沙場] 사장은 강변 또는 냇가의 모래와 자갈의 땅을 말하고 보통 국유불과세지이다.

사전[稜田] 논이 형태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높이를 반으로 나누고 그것과 너비를 곱하여 면적을 구한다.



사정[射亭] 사정은 양반의 자제들이 모여 弓術을 연습하는 곳으로 정부에서 그 건물·부지를 같이 공급한 것이 있고(경기지방에 그 예가 보인다), 또 지방의 유지가 돈을 추렴하여 내면서 건설한 것이 있으며, 그 성립은 여러 가지가 있다.

【補】 사정은 무반의 연무장이고, 주로 활쏘기를 배웠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사정에는 대개 따로 부속 전토가 있다. 무과에 등제한 자가 기부한 것이 많고 그 중에서는 사림이 비용을 추렴하여 구입한 것도 있다. 그 수익을 가지고 비용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有司에게 맡기며, 처분이 필요할 경우는 射員이 협의한 후에 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다. 또, 특히 ‘射契’를 맺고 계장을 둔 것도 있다.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부지·건물은 그 성립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로 묶어 논할 수 없으나, 부지는 보통 국유

이고, 건물은 대부분 그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³⁶⁾

사직단[社稷壇] 사직의 신, 즉 국가의 수호신을 봉사하는 장소이다. 각 도읍에는 반드시 이것이 존재한다. 그 창설은 783년(신라 선덕왕 4)부터 시작되었다. 《文獻備考》에 “조선왕조의 사직은 도성 안의 서부 인달방에 있다. ‘사’는 동쪽에 있고, ‘직’은 서쪽에 있다. 양단은 각각 길이가 2장 5척, 높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각각 3단의 섬돌을 내고, 단의 장식은 方色에 따라 황토를 덮었다. ‘사’에는 석주가 있는데 길이가 2척 5촌이고 크기는 1척의 정 4각이며, 그 위는 뽕죽하고 아래의 반은 배식하였는데, 단의 남쪽 섬돌 위에 당하였고, 네 개 문은 한 담을 동일하게 하며, 사방 25보에 둘레 담으로 둘러졌다. 국사는 후토씨로 配祭하고, 국직은 후직씨로 배제한다.”³⁷⁾며, 또한 “1897년(광무 1) 太社·太稷으로 승격하여 위패를 고쳐 만들었다.”³⁸⁾라고 되어 있다.

사찰[寺刹] 그 건물과 부지는 대부분이 寺有이다. 조선에서 사원은 人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나 寺僧의 재산과 寺院의 재산을 분명히 구별하는 점을 생각하면 寺有를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지는 보통 면세지이다.

【補】 사찰의 재산에는 국가에서 賜給한 ‘寺位田’ 이외에 신도 또는 승려가 공양을 위하여 기부한 ‘佛糧田畝’이 있다. 기타 불상·기구 등의 동산도 적지 않다. 이들 재산은 보통 住持가 이를 관리하여 그 수익을 가지고 사원의 비용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처

36) 보의 내용은 앞의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였다(앞의 역서, 119면).

37) 《增補文獻備考》 권54 <禮考 1> “本朝社稷，在都城內西部仁達坊。社在東，稷在西。兩壇各方二丈五尺，高三尺，四出陛各三級，壇飾隨方色燾以黃土。社有石主，長兩尺五寸，方一尺，剡其上，培其下半，當壇南陛之上，四門同一墻，方二十五步，繚以周垣。國社以后土氏配，國稷以后稷氏配”；上-724면.

38) 《增補文獻備考》 권54 <禮考 1> “今上光武元年，陞爲太社太稷，改造位牌”；上-728면.

분하는 데 있어서는 주지의 專斷에 위임되어 있으나, 요즘 귀중한 재물의 산일이 많아 그 폐해가 심하므로 최근 『寺刹令』³⁹⁾으로써 처분을 제한하게 되었다. 사찰이 法律行爲를 하고 혹은 訴訟을 할 경우는 주지가 대표자가 됨이 관례로서, 『寺刹令』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선왕조 이후 사찰에 신도집단[檀徒]이 없으므로 신도집단이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여하는 것은 없다.⁴⁰⁾

사찰기지[寺刹基址] 조선 초기 정부는 國事祈願을 위하여 각지에 ‘國寺’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답을 절에 부속시켰다가 국사가 폐지된 후 각 국사의 기지 및 국사의 부속된 밭을 다시 국유화하였다. 이들 부속된 토지를 ‘사위전’ 또는 ‘佛享田’이라고 한다.

※ 관련용어: 불향전[佛享田], 사위전[寺位田]

사패전[賜牌田] ‘패전’ 참조.

사포둔[司圃屯] 사포둔은 전 司圃署 소관의 둔토이다. 사포서는 園圃의 채소를 관장한 관청이다. 국초부터 설치되고 채소 등을 진상하였는데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일정한 토지를 부속시킨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供上 각 司菜田과 동일하게 절수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고 그 둔토는 司饗院에 부속되었다가 후에 이 사용원도 폐지되었으므로 서울에 있는 것은 궁내부 소관으로 옮기고 각 도에 있는 것은 탁지부 관리로 옮겼다. 사포서둔은 종래 본서에서 경작하거나 수세함을 통례로 하였고, 1907년(융희 1)까지 진공한 채소를 이 토지에서 징수하였다.

사표[四標] 한국에서 예부터 토지의 경계를 표지하는데 東西南北의 사표로써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 이

39) 明治 44. 6. 3 制令 제7호

40) ‘보’의 내용은 앞의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였다(앞의 역서, 116-8면).

경식의 논, ‘서’ 유광렬의 밭, ‘남’ 작은 내, ‘북’ 김상오의 밭.

사학[四學] 1411년(조선 태종 11)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중부학당’ · ‘동부학당’ · ‘서부학당’ · ‘남부학당’의 사학을 두고 유생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하였다.

사헌부[司憲府] 【補】 1392년(조선 태조 1)에 고려 제도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시정의 論究 · 백관의 규찰 · 기강의 진작 및 정풍 · 신원 등의 일을 관장한 관사이다. 大司憲(중2품), 執義(중3품), 掌令(정4품), 持平(정5품), 監察(정6품) 등의 직원을 두었다.

사현사[四賢祠] 사현사는晋나라 太學生 董養, 唐나라 태학생 何蕃, 宋나라 태학생 陳東 · 歐陽澈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동부 崇信坊에 있다. 《文獻備考》에 “1683년(숙종 9)에 성균관 곁에 별사를 건립하도록 명하고 진나라 태학생 동양, 당나라 태학생 하번, 송나라 태학생 진동 · 구양철을 제사지내게 하였다.”⁴¹⁾라고 되어 있다.

사환미[社還米] 각 도에서 실시한 還穀(봄에 정부에서 일정한 種穀을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 때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을 1895년(개국 504)에 개칭한 것이다.

삭세[朔貰] 삭세는 매월 일정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옥의 임대차를 말한다. ‘세가’ 참조.

산직전[山直田] 부자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묘지에는 보통 ‘山直’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두고 묘지의 청소 기타 모든 관리를 시켰다. 이 때문에 묘지 부근에 해당 묘지에 부속한 다소의 논 · 밭을 구하여 파수꾼에게 무료로 소작시켜 준 관례가 있었는데 이들 토지를 ‘산직전’이라고 한다.

삼남[三南] 지금의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말한다.

41) 《增補文獻備考》 권203 <學校考 1> “肅宗九年, 命建別祠于成均館之傍, 以祀晋太學生董養, 唐太學生何蕃, 宋太學生陳東 · 歐陽澈”; 下-366면.

삼선[衫船] ‘범전선’을 말한다. 그 기원은 ‘柴船’과 같다.

삼성사[三聖祠] 황해도 文化郡 九月山에 있다. 桓因(단군의 조부)과 桓雄(단군의 아버지) 및 檀君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文獻備考》에 “1472년(조선 성종 3)에 황해도 관찰사 이예의 건의로 인하여 구월산에 삼성묘를 세우고, 평양 단군묘의 예에 따라 매년 향축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⁴²⁾라고 되어 있다.

삼수미[三手米] 1593년(선조 26)에 訓練都監을 신설하고 射手·砲手·殺手의 양식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래의 논과 밭에 대해서 1결당 2斗2升을 징수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징수의 절차는 전세와 동일하였다.

【補】 舊記에 “무릇 1결에서 삼수미 2두 2승을 결수한다(경기와 서북도는 결수하지 않는다. 삼남지방은 1두를 감하며, 전답을 불문하고 모두 쌀을 보낸다. 관동·해서지방의 한전에서는 소미를 보낸다). 임진왜란 후에 처음으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는데, 군병을 위하여 결마다 삼수미를 납부하여 구제하였다. 삼수미는 사수·포수·살수이다.”⁴³⁾라고 되어 있다.

삼충사[三忠祠] 평안남도 永柔郡에 있다. 諸葛武侯를 제사지내는 곳인데 이는 군에 臥龍山이 있기 때문이다. 1603년(선조 36)에 창건된 것으로 1695년(숙종 21)에 岳武穆王을 합사하였고, 1750년(영조 26)에는 文信國公을 합사하였다.

상무계[商務契] 소위 계의 일종으로 상인 사이에서 규약을 만들어 서로 돈을 추렴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계 내부의 상

42) 《增補文獻備考》 권64 <禮考 11> “本朝成宗三年, 因黃海道觀察使李芮之言, 立三聖廟于九月山, 依平壤檀君廟例, 每歲送香祝以祭之”; 上-836면.

43) “凡一結收稅三手米二斗二升<京畿西北道無. 三南減一斗, 無論田畝, 並捧米. 關東海西早田則捧小米>. 壬辰倭亂後, 勅設訓練都監, 爲軍兵接濟每結收三手米. 三手米, 射手·砲手·殺手也” 정확한 전거는 찾을 수 없으나, 《萬機要覽》 <財用篇 2> [三手米]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의 자손이 단절된 경우 그 비용을 충당한 것이다. 매년 음력 9월 3일에 계 내의 상인이 서로 모여 자손이 없는 자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상민[常民]【補】 보통 상업과 공업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평민 계급에 속한다.

상서원[尙瑞院]【補】 1392년(조선 태조 1)에 고려 제도에 따라 설치된 관아로, 璽寶·符牌·節鉞을 관장한 곳이다.

상의원[尙衣院]【補】 1392년(조선 태조 1)에 고려 제도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임금의 의복 및 왕실의 재화·金寶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상정미[詳定米]【補】 ‘상정미’, ‘저치미’는 大同米의 남은 것을 분할하여 비축한 것으로, 상정미는 監營의 비용 부족에 충당한 것이고, 저치미는 각 군의 불의의 비용에 보충할 목적으로 각 읍에 비축한 것이다. 그 저축하는 방법은 米穀으로써 하는 것이 있고, 錢布로써 하는 것이 있으며, 토지의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 관련용어: 저치미[儲置米]

상포계[喪布契]【補】 소위 계의 하나로서, 동네의 유지가 규약을 만들어 서로 돈을 추렴하여 이를 이식하거나 농지를 구입하고, 그 수확을 가지고 계원(가족을 포함) 중에서 凶事가 있을 때 베나 제사비용을 증정하는데 충당한 것을 말한다.

상하미전[上下米塵] 鐘路에 있는 것을 ‘상’으로 하고 梨峴에 있는 것을 ‘하’로 하며 구별하였다.

상환[相換]【補】 물건의 교환을 ‘상환’이라고 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정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와 다르나 기타 점에서는 양자 사이의 차이 없다.

색리[色吏] ‘색’은 담당의 의미로서 색리는 담당관리를 뜻한다.

생선전[生鮮廛] 생선을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서기청[書記廳] 【補】 전령·下率 등의 일을 관장한 지방관아의 하나로서, 갑오개혁 전의 ‘作廳’이다.

서북양도[西北兩道]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말한다.

서사청[書寫廳] 【補】 각종 文牒을 베끼거나 수정하는 일을 관장한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서영둔전[西營屯田] 둔토의 일종으로서, 원래 옛날에 평안도에서 의병의 비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서원[書員] 과거의 郡衙의 서기로서 토지의 등급, 면적 및 결수 등을 査定하여 해마다의 作佚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사업은 예로부터 吏族의 전유사업이었고 많아도 1면에 3명을 넘지 않았다. 면에 있는 서원을 ‘面書員’이라고 하고, 면서원을 감독하는 자를 ‘都書員’이라고 한다. 1군에 1명부터 5명의 도서원을 두었다.

※ 관련용어: 도서원[都書員], 면서원[面書員]

서원청[書員廳] 【補】 結負·作佚의 일을 관장한 서원의 대기소로서,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서원토[書院土] 서원토는 전 書院位土이다. 書院은 각 도·군에서 유림이 선현의 공덕을 앙모하고 그 유적을 표창함으로써 후진을 인도하기 위하여 堂宇를 건축하여 遺像을 봉정하고 제사지내는 곳인데 이들의 享祀費 및 修繕費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원토를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선현의 자손 또는 유림 등의 기부에 유래된 것이 많다. 선현의 공덕이 위대한 경우에는 서원 건설 당시 국가가 서원 명칭을 하사하였고 이를 ‘賜額書院’이라고 하는데 사액이 없는 것은 ‘鄉賢祠’라고 한다. 國典에는 서원토는 사액서원에서는 3결에 한하여 면세하고, 원토는 각 원이 마련하여 民結을 가지고 보급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1864년(고종 1)에 각 도의 서원이 철폐된 후부터 서원위토는 각도의 監營·留營에 속하게 되었으나 어떤 경우에는 선현의 자손 혹은 유림의 사유에 속한 것도 있었다. 그 2년 후에 각 도와 군에 ‘別砲軍’을 두고 서원토를 이에 부속시킨 바 있었으나 뒤에 각 도의 별포군이 폐지됨에 이르러 그것이 소속한 각 서원토는 각 도·군에 속하게 되고, 1895년(개국 504)에 결국 탁지부의 관리로 옮기게 되었다. 그 때 일부분은 洪陵에 이속되고, 또 일부분은 學部가 소재 지방학교에 부속하였다. 1899년(광무 3)에 內藏院에서 각 둔토를 조사·점검하였을 때 각 서원토도 조사하였고 각 학교에 부속한 것도 모두 조사하였는데, 학교 중에서는 오늘날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동일하다.

※ 관련용어: 사위토[祠位土]

선가[船價] 원래 각 도의 田稅를 수납할 때 선가를 각 군에서 結에 대하여 세 이외로 課徵한 것으로서, 거리의 원근에 따른 附加額은 각 군이 같지 않더라도 돈으로써 대납하는 군도 모두 이를 수납하였다. 즉, 이것은 지세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삼남(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漕船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는 징수하지 않았다.

선공둔[繕工屯] 선공둔은 전 繕工監草坪으로서, 선공감은 토목의 영건을 관장한 관아이다. 선공둔은 궁궐과 전각,各司의 소용의 밭과 사릿대[簾簾] 등을 진공하기 위하여 국초부터 설치한 것으로서, 그 설정방법은 갈대 산출지를 골라 절수하였다. 선공감초평은 氷庫署草坪과 접속하므로 근년 이를 조사할 때 혼동하여 ‘繕工氷庫草坪’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그 면적은 당초 130결이었으나 부근 백성이 이를 기경하면서 점차 밭의 수가 증가함에 이르렀다. 1894년(개국 503)에

선공감과 빙고서가 같이 폐지되며, 그 소관 초평은 궁내부 內藏司로 이속되었다. 繕工草坪稅는 당초 물납이었으나 궁내부에 이속된 후 금전으로써 납부하게 되었다. 지금 참고로 이 賭稅의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선공감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계절에 관리를 파견하여 刈草를 감독한다. ②내장사에서는 ‘監官’이라는 자가 賭錢을 선납하고 감관은 초평에서 생산된 갈대·짚 등을 作人과 절반으로 나누고, 옛 밭에 대해서는 4분의 1, 새 밭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징수하며 국고에 납부하는 지세는 감관이 이를 부담한다.

1907년(융희 1)에 經理院이 소관한 잡세 처리에 관한 칙령 안건에서 초평세를 雜稅 중에 혼입하였으나 초평은 그 성질상 둔토로서 여기서 생긴 도세는 잡세가 아니었다.

※ 관련용어: 빙고둔[氷庫屯]

선무사[宣武祠] 《文獻備考》에 “조선왕조의 선무사는 도성 남문 안의 대평관 서쪽에 있고 명나라 병부상서 형개, 경리 양호를 제사지낸다.”와 “1598년(선조 31)에 창건하였는데, 어필로 ‘재조변방’ 4자를 써서 걸었다.”⁴⁴⁾라고 되어 있다.

선위사둔[善衛士屯] ‘난호둔’ 참조.

선혜청[宣惠廳] 남부 會賢坊에 있다. 옛 戶曹의 소관으로서, 미곡·포목의 출납을 관장한 관아였다. 都提調·提調·郎廳 여러 직원을 두었다.

선혜청둔[宣惠廳屯] ‘균역청둔’ 참조.

선화당[宣化堂] 【補】 관찰사의 관방이 소재한 지방관아의 일부를 말한다.

44) 《增補文獻備考》 권64 <禮考 11> “本朝宣武祠，在都城南門內大平館西，享明朝兵部尙書邢玠·經理楊鏞”，“宣祖三十一年册建，御筆書‘再造藩邦’四字，揭之”；上-835면.

섬학교둔[贍學庫屯] 둔토의 일종으로서, 유생을 교육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성균관[成均館] 성균관은 동부 崇信坊에 있다. 1392년(태조 1)에 고려 제도에 준거하여 ‘國學’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주로 유생을 교육하는 일을 관장시켰는데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직원들을 두었다: 大同成 1員, 祭酒 1원, 樂正 2원, 直講 1원, 典簿 1원, 博士 2원, 諄諭博士 2원, 進德博士 2원, 學正 2원, 學錄 2원, 直學 2원, 學諭 4원. 원래 국학을 설치한 것은 멀리 신라왕조에서 시작하였고, 뒤에 ‘太學’이라 개칭하면서 고려왕조에 이르렀다.

성균관둔[成均館屯] 성균관둔은 성균관에서 소관한 둔토로서, 성균관에 ‘양현고’를 두고 유생의 供饋 등을 관장시키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초부터 설치한 것이다. 성균관둔의 설정방법은 명백하지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①국유지 하사, ②민유지로서 결세만을 절수. 1894년(개국 503)에 성균관이 학부의 관할로 속하게 되었으므로 양현고는 폐지되었고, 그 소관 둔토는 민유지로서 결세만을 折受·作屯한 것이었으므로 免稅結을 조사할 때 저절로 폐지되어 갔다. 그 후 1900년(광무 4)에 내장원에서 다시 查執하기도 하였다.

※ 관련용어: 양현고둔[養賢庫屯]

성첩[城堞] 도읍 주위에 설치된 城郭으로서, 대부분의 도읍에는 이것이 있다. 지방에 따라 ‘邑城’ 또는 ‘山城’ 등의 명칭이 있다. 그 축조물은 물론 국유이고 토지는 國有不課稅地이다.

성황단[城隍壇] 성황의 신(토지의 신)을 제사지내는 곳으로, 각 읍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厲壇에서 厲祭를 행함에 앞서 성황단에 고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文獻備考》에 “조선왕조의 성황단은 풍운뢰우와 단을 같이하고, 성황의 신을 제사지낸다.”며, 또 “여제 때는 먼저 성황단에서 고제를 하고, 또 여제 날에 성황의 위판을

받들어 여단에서 제사지냈다.”45)라고 되어 있다.

세가[貫家] ‘세집’ 참조.

세자시강원춘방[世子侍講院春坊]【補】 동궁의 侍講·經史·規風 및 道義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세자익위[世子翊衛]【補】 동궁을 陪營하는 일을 관장한 곳이다.

세주[貫主] ‘세집’ 참조.

세집[貫家] 대차에 제공되는 가옥을 ‘세가’라고 하고 차주를 ‘세주’라고 한다. 그리고 가옥을 대차할 때 차주가 일정한 금액(가격의 3분의 2 이상이 보통이다)을 貸主에게 교부하고 해약할 때는 그것을 반환받아 별도로 차임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傳貫’라고 한다. ‘전세’의 문기로서 보통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光武十一年 六月 日 明文			
右明文事段 某署某坊某契某洞伏在 草家幾間 幾許兩 右人前 某某處傳			
貫是遺 限一百日後 無雜談之意備報相約事			
	家 主	某	印
	貫 主	某	印
	家 僮	某	印
	證 筆	某	印
광무 11년(1907) 6월 일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署 ○坊 ○契 ○洞에 있는 초가 몇 칸을 ○○랑에 아무에게서 전세를 주고 100일을 기한으로 하며 잡담이 없을 뜻으로 갖추어 보고하고 서로 약속하는 일.			
	집 주 인	아무개	도장
	세 입 자	아무개	도장
	중 개 업 자	아무개	도장
	증인 겸 필집	아무개	도장

※ 관련용어: 전세[傳貫]

45) 《增補文獻備考》 권61 <禮考 8> “本朝城隍壇，與風雲雷雨同壇，享城隍之神”，“厲祭時，先行發告祭于城隍壇，又於厲祭日，奉城隍位版，行祀于厲壇”；上-812면.

소임[所任] 소임은 처음에는 각 面·坊·社의 풍기를 유지하고 鄉約을 준수하며 기타 면의 一般行政을 취급하기 위하여 면내에서 유식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골라 관에서 임명한 것이었는데, 뒤에 중등 이상의 사회에서는 이를 苦役으로 여겨 서로 기피하게 되었고 저절로 그 임무는 하등사회로 옮겨졌다. 마지막에는 官에서 백성에게 주지시키는 제반 사항을 알리고 다니거나 납세를 고지 또는 독촉하는 등 완전히 한 사환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면에서는 이를 ‘面任’이라고 하고 리에서는 ‘里任’이라고 하였다.

※ 관련용어: 리임[里任], 면임[面任]

소정방사[蘇定方祠] 충남 大興郡 大岑島에 있다. 이 군에 蘇定方이 백제를 공격할 때의 유적이 남았으므로 후세에서 祠를 설치하여 그 영혼을 제사지냈다.

속[束] 10把를 1속으로 하고, 토지의 수확량을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간접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표준이 되었다.

속전[續田] 正田과는 다르게 항상 경작하지는 않는 토지로서, 혹은 경작하거나 혹은 경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토지를 말한다.

송도[松都] 開城 즉 고려왕조의 도성이다.

송영[松營] ‘開城留守營’을 말한다. 유수영에는 ‘유수’를 두고 兵馬의 지휘를 관장하게 하였다.

수로전[酬勞田] 【補】 종래 忠僕 기타 공로가 있는 雇人에 대하여 주인이 영구히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을 허락하고, 그것을 대여받은 자는 아무 보수도 지불할 필요는 없었으며, 또한 이를 임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토지를 ‘수로전’이라고 한다.

수릉군전[守陵軍田] 능군이라 함은 陵·園·墓를 지키는 파수꾼의 급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능·원·묘에 부속시킨 일정한 토지를 말한다.

수문장청[守門將廳]【補】 ‘수문장’을 두어 각 성문의 개폐를 관장한 곳이다.

수어둔[守禦屯] 전 廣州留守營屯이다. 1626년(인조 4)에 광주 ‘남한산성’을 개축하여 ‘守禦廳’(京宮)을 두었으므로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절수, ②매수. ‘수어영’이 광주에 있으므로 수어둔을 ‘廣屯’이라고도 한다. 1895년(개국 504)에 수어영이 폐지되고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 관할에 속하였으나 궁내부 내장사에서 이를 관리하였다. 그 후 1898년(광무 2)에 각 둔토를 탁지부에 환속시켰을 때 본 둔토도 탁지부에 이속되었다가 다음해에 내장원에 옮겨졌다. 수어둔의 賭稅는 서울의 각 營屯과 동일하나, 단지 절수둔은 양향둔과 같이 민유지에서 결세만을 한하여 둔전으로 한 것이 많았으므로 이들은 1904년(광무 8)에 경리원에서 民願에 의하여 백성에게 불하처분이 되었다.

※ 관련용어: 광둔[廣屯]

수영둔[水營屯] 수영둔은 각 도의 水使營屯이다. 국초 당시부터 각도 연안에 ‘水軍節度使’를 두고 도내 舟師를 통솔시키며,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한광지의 기경, ②관유재산으로 매수, ③무주지의 편입 및 민유지의 기부. 1894년(개국 503)에 각 수영이 폐지되자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 관리로 이속되었다가 당시 탁지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아 일부는 궁내부에서 査執하고, 나머지는 1897년(광무 1)에 군부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1909년(융희 3)에 군부가 폐지되자 그 소관 부동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탁지부 소관으로 옮겨지기에 이르렀다.

순교청[巡校廳]【補】 ‘순교’를 두고 주로 警務·巡邏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순뢰청[巡牢廳] 【補】 監司의 陪行, 罪囚의 治懲·笞杖 등의 일을 관장한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숭덕전[崇德殿] 경북 경주군 南月南里에 있다. 신라 시조를 제사지낸다. 1429년(세종 11)에 처음으로 건립되었다.

숭선전[崇善殿] 경남 金海郡에 있다. 가야의 시조 首露王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숭렬전[崇烈殿] 경기도 廣州郡에 있다. 백제 시조 溫祚王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숭령전[崇靈殿] 평남 평양부 성외에 있다. 단군 및 고구려 東明王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숭의전[崇義廟] 서울(경성부) 敦義門 밖에 있다. 1902년(광무 6)에 건립한 것으로 漢나라 昭烈皇帝 및 關張將軍 등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숭의묘[崇義殿] 경기도 麻田郡 西五里에 있다. 고려 太祖·顯宗·文宗·元宗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舊記에 “고려 태조의 영정은 마전 양암사에 있으므로 그 땅에 묘를 세웠다.”⁴⁶⁾라고 되어 있다.

숭인전[崇仁殿] 평남 평양부 성외(칠성문)에 있다. 箕子를 제사지내는 곳이다.

숭혜전[崇惠殿] 경북 경주군에 있다. 신라 敬順王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승[升]¹ 삼베나 무명의 품질에 따른 등급의 칭호이다. 3승이 가장 거친 것이고 15승까지 등급이 있다.

승[升]² 【補】 되와 말에는 ‘官斗’와 ‘私斗’(商人 되)의 두 가지가 있다. 관두는 관에 바칠 米穀을 되는 데 사용하고 사두는 私穀을 되는

46) 《燕藜室記述》 별집 권4 <祀典典故> [諸祠] “高麗太祖影幀, 在麻田仰巖寺, 故卽其地立廟”

데 사용한다. 官斗 15두(1두는 일본의 약 5升到 해당)를 1石으로 함을 통례로 하고 있으나, 혹은 12두를 1석으로 하고 혹은 10두 5승을 1석으로 하는 특례도 없지 않다. 私斗는 18두를 1석으로 하는 것이 있고, 혹은 10두 5승을 1석으로, 혹은 16두를 1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일정하지 않으나, 벼의 경우는 20두를 1석으로 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다.

승문원[承文院] 【補】 ‘槐院’이라고도 하고, 중대한 交隣文書를 관장한 곳이다.

※ 관련용어: 괴원[槐院]

승정원[承政院] 【補】 ‘翰林院’이라고도 하고, 지금의 侍從職이다.

※ 관련용어: 한림원[翰林院]

승총결책[陞總結冊] 토지에 관한 장부책이다. 주로 경기도 개성지방에서 보이는데, 각 리·동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결수와 현재 소유자의 성명을 併記하여 권리의 이전·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정정한 것이다.

【補】 ‘승총’은 免稅結, 隱結, 혹은 新起耕田을 結縛으로 올리는 것을 말하고, 승총결책은 각 군에 있다.

시기수[時起數] 실제로 경작한 결수를 말한다.

시산[柴山] ‘시장’ 참조.

시선[柴船] 뿔감과 풀을 운반하는 배이다. 1750년(영조 26)에 종래의 선세를 개정하여 선척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도록 정하였다.

시장[柴場] 시장은 쉼나무 총생지로서 燃料 採取地를 말한다. 시장은 옛 고려시대에 文武百官들에게 각각 재직 중의 祿田과 함께 준 것으로 나중에 백관이 退官한 후에 이를 반납하거나 혹은 자손이 이를 계승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山澤·河海는 모두 호권·

간활한 사람들에게 탈점당하여 그 폐해가 심하였으므로 조선시대에는 시장은 薪炭을 소용하는 관청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즉 정부는 각지에 연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시장을 두고 이를 여러 관청에 부속시킴으로써 그 관청의 경비에 충당하였다. 《大典會通》에 의하면 경기도내의 시장은 성내에 있는 각 관청에 부속시키고, 경기도외의 시장은 성외에 있는 각 관청에 지급하였다.⁴⁷⁾ 1894년(개국 503)의 국정개혁에서 폐지된 각 관청 부속의 시장은 궁내부에 이속되었다. 1899년(광무 3)에 각 둔토를 조사할 때 각 시장(능, 원, 묘와 각궁의 소관 분을 제외)도 조사하였고, 그 성질이 둔토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둔토 안에 혼입한 것이 많았다.

※ 관련용어: 시산[柴山], 초장[草場], 초평[草坪]

식산계[殖産契] 이 계는 그 성질이 여러 계 중에서 예외가 되는 것으로, 계원의 사업을 확장하고 그 이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계원이 서로 돈을 내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다른 계와 다를 바 없으나, 그 수익을 가지고 각자 사업의 資本으로 삼고 融通하는 점은 단순히 祭祀·共濟를 목적으로 쓰이는 것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구입한 농지는 절대 分割 또는 讓渡를 허락하지 않고, 그 수익으로써 계원 각자의 사업을 개량·발달시키는 비용에만 제공하였다.

신가경전[新加耕田] 陳田을 다시 경작한 것을 말한다.

심영[沁營] 강화도의 별칭이다.

(○)

아록전[衙祿田] 옛날에 지방관리의 봉급에 충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전토를 말한다. 《經國大典》에 “부·대도호부·목은 각각

47) 《大典會通》 <工典> [雜令] “[增] 燔官之別燔巧制者 勸處 ○燔院柴場·山田之在廣州者, 令地方官踏驗收納以除勒徵民弊”

아록 50결이고(관관이 있으면 40결을 더하고, 도호부도 같다. 가족을 거느리지 않으면 절반으로 감하고, 도호부와 군현도 같다), 도호부는 50결, 군현이 40결이다.”⁴⁸⁾라고 되어 있다.

아사[衙舍] 군아를 말하고, 지금의 군청이다.

악공청[樂工廳] 【補】 ‘악공’을 두어 禮樂의 일을 관장시킨 곳으로,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야미[夜味] ‘배미’ 참조.

양사고[養士庫]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서울 성균관 안에 있다. 유생들의 供饋 등을 관장한 곳이다.

양사당[養士堂] 향교에 부속된 건물로 유생들이 강학을 하고 숙식을 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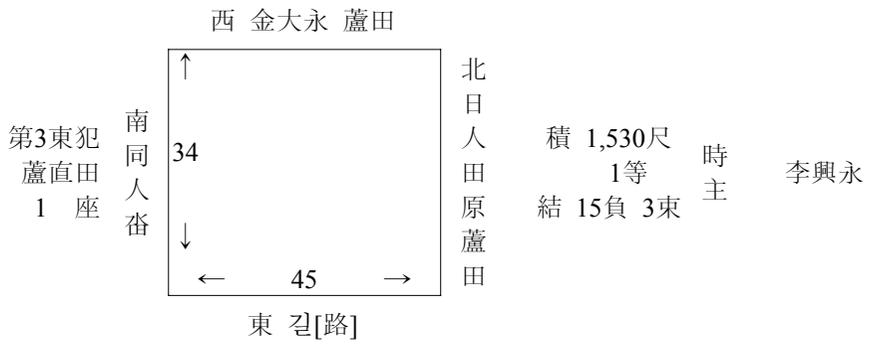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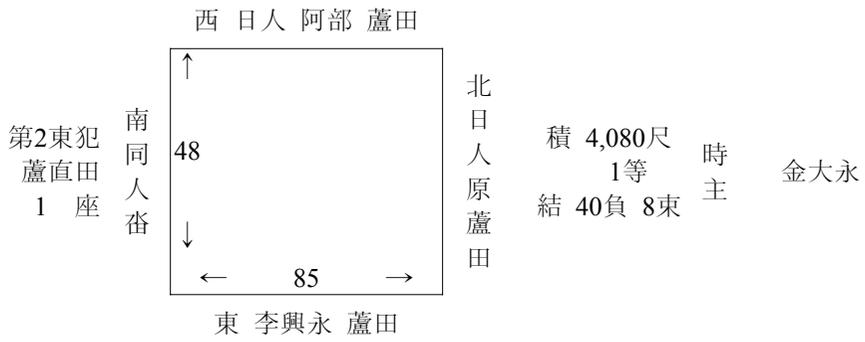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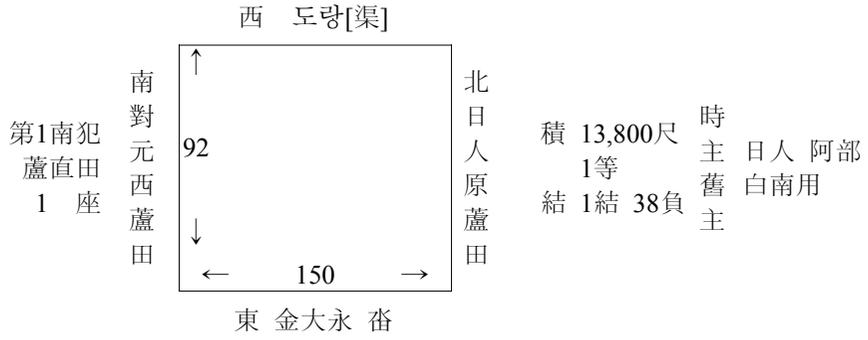
양서[兩西]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의 병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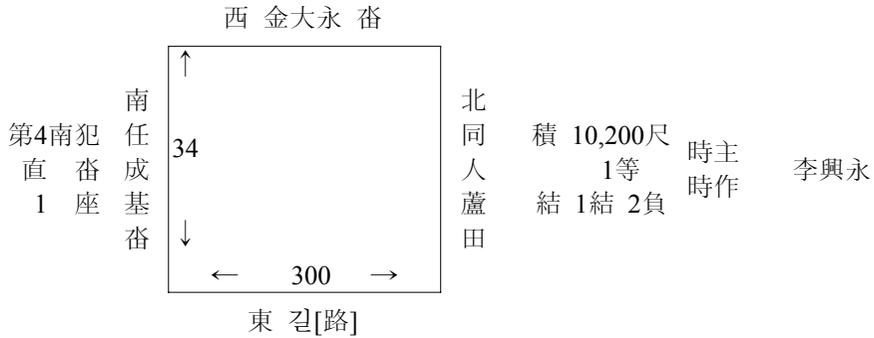
양안[量案] ‘行審’이라고도 한다. 토지대장이고 有租地를 등록하여 조세의 주체와 객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양안에는 ‘신양안’과 ‘구양안’, 두 가지가 있다.

1. 新量案 : 신양안은 1898년(광무 2)에 ‘量地衙門’을 설치하여 측량에 착수한 후,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대부분의 도에 존재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48) 《經國大典》戶典, 諸田, 廩田. 전주 20 참조.

碑자 지번





본 양안은 작성 후 한 번도 토지대장으로서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고, 또한 측량방법도 아주 부실하였으므로 그 실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거의 모든 도에서 존재하여 장부의 책수도 완비한 것이 많으므로 토지조사에서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신양안에 기재된 地畓은 현재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과 전혀 다른 것으로 현재 민간에서 사용되는 지번은 모두 舊量案의 번호에 의한다. 그러므로 조사에서 이것에만 전적으로 의뢰할 수 없다.

2. 舊量案 : 구양안은, 즉 신양안에 대비되는 것으로 오래된 것은 약 200년 전에 작성되었고, 새로운 것도 약 30~40년 전에 작성되었다. 작성 연월일은 각 지방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따라서 그 형식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일치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帝자 지번 凡魚員					
4	北犯 川道越 3等直畓 1夜	東西 길이 93尺 南北 너비 41尺	26負 7束	東 길, 西 民浩 畓 南 斗萬 畓, 北 山屯	主 白周奉		
5	東犯 4等直畓 1夜	南北 길이 64尺 東西 너비 49尺	17負 2束	東 길, 西 同人 畓 南 成局 집터, 北 周奉 畓	主 河斗萬		
6	南犯 3等直田	東西 길이 17尺 南北 너비 7尺	7束	東 길, 北 斗萬 畓 二方 내	主 朱成局		

7	西犯 4等梯畚 1夜	南北 길이 60尺 大 頭 33尺 小 頭 23尺	9負 二方 同人 畚 3束 南 豆乙, 北 主奉 畚	主 河斗萬
8	西犯 4等直畚 1夜	南北 길이 39尺 東西 너비 37尺	7負 東 同人 畚, 西 民浩 畚 9束 南 豆乙, 北 主奉 畚	主 同人
9	西犯 3等直畚 1夜	南北 길이 34尺 東西 너비 23尺	5負 東 周奉 畚, 西 同人 畚 5束 南 斗萬 畚, 北 山屯	主 朴民浩
10	北犯 3等直畚 1夜	東西 길이 48尺 南北 너비 41尺	13負 東 同人 畚, 西 律伊 畚 8束 南 豆乙, 北 山屯	主 同人

구양안은 신양안과 달리 어느 각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작성된 후 오래 세월이 지나 훼손되거나 산일하여 모두 완비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본 양안은 작성된 후 토지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개정된 것이 매우 적으므로 토지조사에서 일반적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양안은 종래 오랫동안 토지대장으로 조선에서 시행되었고, 현재 민간에서 사용되는 지번은 모두 구양안의 지번에 의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하는 데 역시 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 관련용어: 행심[行審]

양전청[量田廳] 1717년(숙종 43)에 당시 국정이 문란하여 賦役이 균등하지 않았으므로 옛날의 均田廳의 예에 따라 양전 사무를 전담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관아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 1898년(광무 2)에 각 도의 토지측량 사무를 관장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관아이고,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었다.

總 裁	3명	勅 任
副總裁	3명	척 입
記事員	3명	奏任(內部, 度支部, 農商工部の 주임관 중에서 겸함)

書 記 6명 判任(同斷)

양포[良布] 관리·군속·노예를 제외한 백성을 ‘양민’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부과하는 베를 ‘양포’라고 한다. 소위 ‘調’의 일종이다.

양향둔[糧餉屯] 양향둔은 전 糧餉廳 屯土로서 1593년(선조 26)에 훈련도감을 두고 군병의 피복·기계 및 요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절수: 한광지를 절수·작둔한 것, ②적몰: 국사범인으로부터 몰수한 것, ③이속: 관유지로서 타관에서 이속된 것, ④매수: 본청의 소유재산으로써 매수한 것, ⑤築堰: 본청의 소유재산으로써 축언·작답한 것. 양향둔은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나 타관의 전답과 교환한 것도 있었다.

양향청은 훈련도감의 경비를 마련하는 관청이므로 그 소관둔토를 또한 ‘訓屯’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양향청둔은 당초 옛 총결로 7496 結 92負 8束이었으나 이후 황폐되면서 각 陵位土 및 각 營移屬田畓 36負 6束을 감하여 잔존 전답이 3480 結 36부 6속이었다.⁴⁹⁾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4625 結 11부 5속이 되었다.⁵⁰⁾ 그리고 이들 토지에는 종래의 예에 따라 결세를 면제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양향청을 ‘親軍營’으로 개칭하면서 그 소관둔토도 ‘親屯’이라고 개칭되기에 이르렀다. 1894년(개국 503)에 친군영이 폐지되자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 관리로 옮겨졌다. 동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같다.

※ 관련용어: 훈둔[訓屯]

양현고둔[養賢庫屯] ‘성군관둔’ 참조.

어기[漁磯] 어장인 해안 땅을 지칭한다.

어기[漁基] 어기는 어장을 말한다. 《文獻備考》에는 지세가 편리하

49) 《萬機要覽》 <財用編 4> [糧餉廳] “各道所在屯田畓, 舊摠 七千四百四十六結九十四負八束 … 中間減 摠爲三千九百六十六結五十七負二束”; 원문과 법전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원문대로 표기한다.

50) 《六典條例》 권4 <戶典> [糧餉廳] 『總例』 “各道屯土 四千九百二十五結十一負五束”

고 좋아서 물고기를 잡기에 좋은 것을 ‘基’라고 한다⁵¹⁾고 되어있다.

어둔[御屯] 어둔은 전 御營屯으로 1624년(인조 2)에 ‘御營廳’을 두고 군항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일정한 토지이다.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절수, ②매수. 1881년(고종 18)에 ‘壯禦營’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어영청을 장어영에 합병하였다가 다음 해에 장어영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어영청이 복설되었다. 1884년에 이르러 어영청을 ‘別營’으로 개칭하고 1888년에 다시 별영을 ‘摠禦營’으로 개칭하였다. 어영청을 총어영이라 칭하였을 때부터 어영청둔을 ‘총어둔’으로 개칭하였다가 1894년에 총어영이 폐지됨에 따라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 관리로 옮겨졌다.

어살[漁箭] 나무·대나무·갈대 또는 돌과 흙을 써서 장병을 설치하고 함정을 만드는 일종의 어구로서 고래로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어조[漁條] 배를 멈추어 그물을 걸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어조’라고 한다.

여각[旅閣] 일종의 도매영업자로서 미곡·어염 기타 해산물의 위탁매매를 한다. 또 여각에서는 반드시 ‘馬房’ 설비가 있어 荷主와 우마의 숙박에 이용하였다. 매매업주 중에는 ‘객주’라는 자도 있다. 여각과 달리 널리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자들로서 각 도의 교통요지에 있다.

※ 관련용어: 객주[客主]

여단[厲壇] 한국의 풍속에는 고래로부터 귀신을 두려워하는 일이 매우 많아 각 도읍의 北端에는 반드시 ‘여단’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厲疫을 피하기 위하여 ‘厲祭’를 거행하였다.

역가[役價] 일종의 수수료이다. 1721년(경종 1)에 각 창고의 공인의

51) 《增補文獻備考》 권158 <財用考 5> “地勢便好 而宜於捉魚者 謂之基”; 中-850면.

雇價를 지급하기 위하여 창설한 것이다. 道稅나 穀稅에 대하여 1석마다 쌀 6升을 거두었다.

역가도장[役價導掌] 역가도장은 각 공사에서 절수한 閑曠地 및 陳廢地를 백성이 해당 공사와 계약하고, 그 개간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마련하여 개간한 후 소액의 賭稅를 각 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사용수익권은 개간자에게 있으나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공사가 가졌다.

※ 관련용어: 역도장[役導掌]

역관둔[驛官屯] 역관둔은 察訪道의 소관 둔토이다. 찰방도는 각 역을 관할한 관아이다. 조선 초기부터 찰방의 봉급 또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역관둔을 설치하였고 각 찰방도에 대하여 12결을 지급하였다. 1895년(개국 504)에 각 도의 찰방을 폐지한 후 농상공부에서 官屯과 馬位土를 구별하지 않고 조사하였다가 그 후 탁지부 소관으로 옮겨져 오늘날에 이른다.

역도장[役導掌] ‘역가도장’ 참조.

역둔토[驛屯土] 역둔토란 ‘驛土’, ‘屯土’를 말하는 것으로, 국유지 가운데 가장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역토라고 함은 조선 초기에 국내 각 도에 驛站을 설치하고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논·밭을 부여한 것에 기원이 있고, 驛吏 등은 모두 그 수확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역참이라는 것은 공문서의 순차적인 전달과 官公吏가 공무를 위하여 여행할 때에 이들에게 馬匹을 제공하거나 짚신 등 여행의 소요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國道의 중요한 교통요지 및 道·郡의 도로에 해당하는 小道의 40리(대한제국의 단위)마다 1 역참을 설치하였다.

둔토라고 함은 경기 및 각 도·군에 둔 鎭營의 급여 등 일체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둔 토지로, 그 종류가 아주 많다. 기타 여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명목으로 설치한 것이다. 둔토는 이와 같이 그 종류가 아주 많아서 그 기원이나 연혁은 같지 않다. 지금 참고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1. 牧屯: 과거의 목장을 폐지한 곳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목장의 기원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에 종래 제도를 참작하여 제정한 것으로 군용 및 황실용 마필을 공급하기 위하여 말을 키우는데 적당한 장소(주로 남부 해안지방이었다고 한다)를 골라 설치한 것이다. 각 목장에 內牧과 外牧의 구분이 있다. 내목은 牛馬의 飼育地이고 외목은 사육지에 부속한 땅을 말한다.

2. 忠勳屯: 충신과 義士를 표창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 곳에 있는 논·밭을 매입하여 그 수입으로써 당해 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이전에 충훈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후에 궁내부에 이속되었다.

3. 砲屯: 각 군에 포병을 두고 그 보수 및 여러 잡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매수한 논·밭으로, 1897년(광무 1)에 궁내부로 이속되었다.

4. 訓屯: 訓練府에 소속한 논·밭으로, 그 수입으로써 병사의 보수에 충당하는 것이었다가 1897년(광무 1)에 궁내부로 이속되었다.

5. 官屯: 각 觀察府의 경비 및 여러 잡비에 충당한 논·밭이었는데 1897년(광무 1)에 궁내부로 이속되었다가 1908년(융희 2) 6월의 칙령 제39호 『宮內府所管 및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 및 帝室債務의 整理에 關한 件』⁵²⁾으로 국유로 이속됨과 동시에 탁지부 소관으로 옮겨졌다.

※ 관련용어: 둔토[屯土], 역전[驛田]

역민[驛民] 【補】 역토에 부속된 일종의 賤民으로, 다른 신분과 혼인할 수 없다. 반역을 꾀하였는데 死罪에 이르지 않은 자의 신분을 낮추어 장부에 등록하였다.

역분전[役分田] 옛날에 直田의 제도를 만들어 位階 官等에 따라 일정

52) 1908. 6. 25. 칙령 제39호; □□近代法(VI)□□, 491면.

한 땅을 신하에게 사급한 것이었다가 918년(고려 태조 1)에 조서를 내려 역분전을 정하여 관계의 差等を 묻지 않고 性行의 善惡 또는 功勞의 大小를 표준으로 삼아 사급하기로 한 것이다. 즉, 직전제에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文獻備考》에는 “918년(고려 태조 1)에 조서를 내려 역분전을 정하였는데 관계를 논하지 않고 사람의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살펴서 차등 있게 주었다.”⁵³⁾라고 되어 있다.

역전[易田] ‘일역전’ 참조.

역전[驛田] ‘역토’와 같다. ‘역둔토’ 참조.

연구진[年久陳] 옛날 조선에서는 재난에 각각의 이름을 짓고 그에 따라 地稅를 감면하였는데, 연구진도 역시 그 일종으로 황무지가 된 땅으로 수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연대둔[烟臺屯] ‘봉대둔’ 참조.

연무정[鍊武亭] 무술 연습소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연분성책[年分成冊] 地稅額 調定原簿를 말한다.

열전[列田] ‘배미’ 참조.

염전[鹽田] 제염을 위하여 해수를 모아두는 갯벌 및 제염장 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제염장 등을 명칭할 때는 ‘鹽幕’ 또는 ‘鹽倉’이라고 하는 지방도 있다.

【補】 제염을 위하여 해수를 모아 두는 갯벌의 명칭이다. 제염장 등을 명칭할 경우에는 ‘鹽幕’ 또는 ‘鹽倉’이라고 한다. 염전에 대해서는 고래로부터 염세를 징수하였는데, 그 盆數에 따라 부과하였으므로 ‘鹽盆稅’라는 명칭도 있다.

53) 《增補文獻備考》 권143 <田賦考 3> “高麗太祖元年詔, 定役分田, 勿論官階, 視人性行善惡功勞大小, 以差給之”; 中-648면.

영고[營庫] 【補】 監司의 需米, 朔錢의 收捧 및 排納을 관장하는 지방 관아의 일부로서, 장관 이하 여러 有司의 饋物의 공급을 관장한 ‘營庫直廳’, 營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營繕庫’ 등이 있다.

영노청[營奴廳] 【補】 지방관아에 부속된 小使室이다.

예빈시[禮賓寺]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궁중에 설치한 것으로, 賓客의 宴享 및 宗宰의 供饋 등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오부[五部] 【補】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서울에 오부(동·서·남·북·중부)를 두고 관내 방리의 주민들의 非訟事件 및 교량, 도로, 頒火, 里門의 경비, 집터의 측량, 檢屍 등의 일을 담당시켜 성내의 경비를 관장시켰다.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補】 오위의 군무를 통할한 관아이다.

와서[瓦署] 【補】 기와와 벽돌을 제조하는 일을 관장한 곳이다. 《文獻備考》에는 “1392년(태조 1)에 동·서 窯直 각각 1인을 두었는데, 뒤에 ‘와서’로 고쳤다. 기와와 벽돌의 제조를 관장하였다. <중략> 1882년(고종 19)에 혁파하였다.”⁵⁴⁾라고 되어 있다.

완문[完文] 널리 ‘완문’이라고 할 경우는 官衙公署에서 제작한 公證力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導掌을 差定할 때 교부하는 그 차정의 유래 및 공장토 경작인의 납세액 등을 명기한 문서도 완문이라고 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p>(완문)</p> <p>內需司所管 紅島坪</p> <p>同治十二年 癸酉七月 日</p> <p>虛結移徵於內需及亭洞宮之計 屢度呈訴 落訟而退 此漢 前後無嚴之狀 斷當懲勵之意 稟于</p>

54) 《增補文獻備考》 권223 <職官考 10> “本朝太祖元年, 置東西窯直各一人, 後改爲瓦署. 掌造瓦磚 … 今上十九年革罷”; 下-610면.

大院位教是 前則 分付內 鄭漢之白地徵稅條 時許分錄于內司及亭洞宮庄
使之挑納虛結是遣 所謂泮館舊量案 卽無土虛券也 一一推尋爰周 俾杜
後弊事教是置 奉承

(완문)

내수사 소관 흥도들

1873년(고종 10) 계유 7월 일

허결을 내수사와 저동궁에서 옮겨 징수할 뜻으로 여러 차례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여 물러났으나, 이 놈의 전후의 무엄한 짓은 단연코 마땅히 다스려 힘쓸 뜻으로 대원위께 아뢰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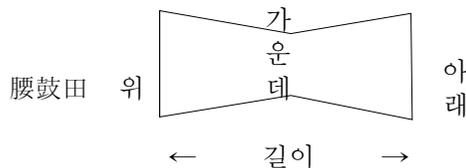
대원위께서 내리신 분부 내에 정가놈이 이유없이 지세를 징수하려는 것은 이때에 내수사와 저동궁의 장토에 나누어 수록하는 것을 허용하여 허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소위 성균관[泮館]의 구양안은 무토로 허결이니 일일이 추심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을 일이신 명을 받들

완전[莞田] 돛자리의 원료가 되는 골풀을 재배하는 습지를 말한다.

외어물전[外魚物塵] 성 밖에 있는 어류 판매점포를 말한다.

【補】 서대문 밖에 있었던 어류 판매전으로, 성내의 육주비전과 같이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1894년(개국 503) 갑오개혁 때 특권해지와 함께 점포도 폐멸되고 말았다.

요고전[腰鼓田] 양전 때에 땅의 형태에 따라 붙인 명칭으로, 면적의 산출은 가운데 너비를 2배하고 아래와 위의 너비를 더하여 4로 나누고 길이를 곱한 값을 구한다.



요역[徭役] 신역으로 오늘날의 夫役に 해당한다.

용[庸] 개인[몸]에게 부과한 것으로 과거 세제의 하나이다.

용호둔[龍虎屯] 용호둔은 전 龍虎營屯이다. 용호영은 1755년(영조 31)에 禁軍廳을 개칭한 것으로, 이의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둔토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786년(정조 10)에 籍沒田畝를 부속시키면서 설치되었다. 용호영은 병조의 부속관청이었던 관계상 그 소관둔토를 ‘兵曹屯’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다. 1881년(고종 18)에 용호영을 武衛營과 합병하였다가 다음해에 무위영을 폐지하여 용호영을 부흥하였고 1894년에 다시 이를 폐지하여 군부에 부속시켜 그 소관 둔토도 탁지부 관리로 옮겨졌다. 동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같다.

※ 관련용어: 병조둔[兵曹屯]

용호영[龍虎營] 宿營, 陪扈 등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군영아문의 하나이다.

우사단[雨師壇] 기우단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우사단[霽祀壇] 기우단과 같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文獻備考》에는 “984년(고려 성종 3)에 처음으로 우제를 행하였다.”며, 또 “조선왕조의 우사단은 동교에 있는데 제도는 풍운 퇴우단과 같으나 오직 사방의 길이가 4장이다. 구망씨·축융씨·후토씨·현명씨·후직씨를 제사 지낸다.”⁵⁵⁾라고 되어 있다.

운주헌[運籌軒] 【補】 광주, 강화, 개성, 춘천, 수원 등 각 중요지에 留守를 두고 방어의 임무를 관장하게 한 것으로, 그 사무소를 ‘운주헌’이라고 하였다.

운향고[運餉庫] 稅米를 저장하는 창고로서 의주에 설치한 것이다. 이

55)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高麗成宗三年, 始行霽祭 … 本朝霽祀壇, 在東郊, 制與風雲雷雨同, 惟方四丈. 享句芒氏·祝融氏·后土氏·玄冥氏·后稷氏”; 上-822면.

를 보관하는 관리를 두었다.

원[員] 일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토지의 한 집단을 말하는 것 같다. 즉 일본의 ‘모村 大字모…’라고 하는 중에 있는 小字에 상당한다. 예컨대 ‘모面 모洞 모員’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평안북도에서는 ‘員’이라는 명칭 그대로 토지의 소재를 나타내고 천자문을 쓰는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

원장부전[元帳付田] ‘원전[元田]’ 참조.

원전[院田] 역참제도를 채용한 후, 각 도의 대·중·소로에 驛·站·院을 두었는데 원에 부속시킨 전토를 원전이라 한다.

원전[元田] 원 양안에 기재된 토지를 말하고, ‘元帳付田’이라고도 한다.

※ 관련용어: 원장부전[元帳付田]

유림계[儒林契] ‘進士儒生團田畝’이라고도 한다. 과거에 진사 및 유생 등이 서로 출자하여 전답을 구입하거나 전답을 출자하여 그 수익으로 매년 賢哲의 선비를 제사지내는 비용에 제공한 것으로, 오늘날에 서도 이전에 진사였던 자들의 단체에서 이를 소유하고 이를 분할 및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도 적지 않다.

육대강[六大江] 조선에서 ‘육대강’이란 낙동강, 금강, 한강, 대동강, 압록강 및 두만강을 말한다.

육상궁전[毓祥宮田] 서울 육상궁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궁에 부속시킨 땅을 말한다.

육의전[六矣廬] ‘육의’라고 함은 ‘六注比’라고 혼독하고 六株[특별한 지위를 가진 여섯 집단]와 같은 뜻이다. 즉, 육의전이라고 함은 特權을 갖는 여섯 종류의 상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원은 명백하지 않으나 조선시대 초기에 大廣橋 거리 以北 鐘閣 앞에 이르는 땅 및 鐵物橋 以西, 義禁府 以東의 땅을 나누어 그 구역에 속하는 대로의

폭을 90尺(15칸[間])으로 정하고, 정부에서 宮中과 府中을 불문하고 여러 官衙用 물품의 공급을 위해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할 만한 건물을 건설하여 이를 여섯 종류의 상점, 즉 육의전에 한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다. 육의전은 ①立塵: 絹布類를 판매하는 곳, ②白木塵: 木棉類를 판매하는 곳, ③紬塵: 명주류를 판매하는 곳, ④紙塵: 종이류를 판매하는 곳, ⑤苧布塵: 모시류를 판매하는 곳, ⑥魚物塵: 乾魚·鹽魚類를 판매하는 곳 등이다. 각 塵에는 樓房 시설이 있어 상품의 보관을 적절하게 하였다. 塵主 및 塵員은 매일 아침 日出이 되면 모이고 日沒에 각자 자기 집에 가는 규칙이 있었고, 夜間은 파수꾼만을 머무르게 하였다. 그리고 각 전에서 영업하는 자가 다수였으므로 저절로 결사하여 ‘都中’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각 전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에 가입하는 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일정한 가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이들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都領位, 大行首, 公員, 所任 등의 임원을 두었다. 그 사무를 취급하는 장소를 특히 ‘都家’라고 하였다.

참고로 정부와 육의전과의 권리·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정부는 점포로 쓰는 건물을 건축하여 육의전에 공급한다. 소규모의 수리는 육의전이 부담하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신축이 필요할 경우 그 재건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②육의전의 판매품에 관해서는 각 전에 전매의 특권을 부여한다. 육의전의 판매품목은 한정되고 있고, 만약 다른 상점에서 이 특권을 침범하여 사사로이 육의전의 전매물품을 판매하였을 경우는 이를 亂塵이라고 하여 그 상품을 몰수하고 범인을 구속하여 市中에 조리돌려서 엄벌에 처하였다. ③육의전은 위와 같은 특권에 대하여 일정한 ‘國役’을 부담하는 외에 정부의 명령이 있을 경우는 매우 싼 값으로 각종 상품을 상납해야 하였다. 이를 ‘奉公役’이라고 하였다.

육의전은 원래 平市尹(오늘날 市長과 같은 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왕실에서 물품의 공급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평시윤의 명령으로 언제나 그 물품을 상납해야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市價에 비하여 매우 소액이었고, 특히 왕실의吉凶, 즉 冠婚喪祭에서는 그 사용물품을 육의전이 獻上해야 되었다. 이러한 특권 및 의무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모두 폐지되었다.

육조[六曹] 1895년(개국 504)의 갑오개혁 이전의 중앙관청으로서 의정부의 관할 밖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吏曹: 文選, 勳封, 考課의 여러 행정을 관장한 곳으로, 갑오개혁 후의 內部에 해당한다.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判書 1명, 參判 1명, 參議 1명, 正郎 2명, 佐郎 2명 등의 직원을 두고 文選司, 考勳司 및 考功司의 3司로 나누어진다.

② 戶曹: 戶口, 貢賦, 田糧, 食貨의 여러 행정을 관장한 곳으로, 갑오개혁 후의 度支部에 해당한다.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3명, 좌랑 3명 등의 직원을 두고 版籍司, 會計司 및 經費司의 3사로 나누어진다.

③ 禮曹: 禮樂, 祭祀, 朝聘, 學校, 科擧의 여러 행정을 관장한 곳으로, 갑오개혁 후의 學部에 해당한다.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3명, 좌랑 3명 등의 직원을 두고 稽制司, 典享司 및 典客司의 3사로 나누어진다.

④ 兵曹: 武選, 軍務, 儀衛, 郵驛, 兵甲, 器仗, 門戶, 管鑰의 여러 행정을 관장한 곳으로, 갑오개혁 후의 軍部에 해당한다.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參知 1명, 정랑 4명 등의 직원을 두고 武選司, 乘輿司 및 武備司의 3사로 나누어진다.

⑤ 刑曹: 法律, 議讞, 詞訟, 奴婢의 여러 행정을 관장한 곳으로, 갑오개혁 후의 法部에 해당한다.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참지 1명, 정랑 3명, 좌랑 3명 등의 직원을 두고

詳覆司, 考律司, 掌禁司 및 掌隸司의 4사로 나누어진다.

⑥ 工曹: 山澤, 工匠, 營繕, 陶冶의 여러 행정을 관장한 곳으로, 갑오개혁 후의 農商工部에 해당한다.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3명, 좌랑 3명 등의 직원을 두고 營造司, 攻治司, 山澤司의 3사로 나누어진다.

은결[隱結] 종래 군수 및 관찰사, 토호, 奸吏들이 사리를 탐하기 위하여 풍수 기타의 재난으로 인한 浦落, 覆砂, 붕괴 등을 구실로 실제의 피해 이상의 결수를 면제 받거나 새로 개간하여 경작한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이들의 결세를 착복하면서 생긴 것으로, 은결수가 고래로부터 막대하였다는 것은 다음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1592년(선조 25)의 145만 여의 결수는 1634년(인조 12)에는 153만 여 결로 증가하였다. 당국의 결수는 해마다 줄고 1907년(광무 11)에는 99만 여 결이 되었다. 이것은 즉 가장 많았던 때의 3할 5푼이 준 것이다.”라고 한다. 근년에 이르러 탁지부에서 신고 제도를 채용하여 은결의 발견에 노력한 결과 크게 그 결수가 줄어들었다.

은결은 ‘官隱’·‘吏隱’·‘民隱’ 3가지가 있다. 종래 군수들이 착복한 소위 은결은 관은 및 이은의 일부를 총칭한 것이다. 이은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은과 함께 군수 이하의 공동수입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는 面書員(매년 작부 때에 면에 파견되는 서기를 말한다)의 개인수입에 속하는 것이다. 민은은 새로 기간하거나 다시 개간한 토지로서 서기들의 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그 수는 적지 않다.

※ 관련용어: 관은[官隱], 이은[吏隱]

은토[隱土] 상당한 지세를 정부에 납부하여 백성이 사사로이 가지는 땅을 말한다. 외관상 민유지 같지만 그 실체는 국유지이다. 역둔토에 많다.

음공전[蔭功田] 【補】 官階 5품 이상으로서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賜給한 田柴를 말하고, 科田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공로에 대하여 전시를 사급한 것이다. 이 법은 고려왕조에서의 토지 사급제도로, 977년(고려 경종 2)에 開國 功臣 및 向義·歸順한 성주들에 대하여 50결부터 25결까지의 勳田을 사급하면서부터 시작하였고 1048년(문종 2)에 이르러 다시 양반의 功蔭田柴法을 정하였다. 1품 門下侍中 平章事에는 上田 50결 柴 15결을, 2품 參政은 상전 25결 시 12결, 3품은 전 20결 시 10결, 4품은 전 17결 시 8결, 5품은 전 5결을 사급하였다.

의금부둔[義禁府屯] 의금부둔은 전 의금부 소관 둔토로서 義禁府는 대한제국기의 平理院과 같이 高等司法官廳이다. 본 부는 조선 초부터 설치되었고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둔을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상세하지 않으나 籍沒에 의하여 설치한 것 같다. 의금부는 1894년에 폐지되고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의 관리로 옮겨졌다.

의승둔[義僧屯] 의승둔은 전 각 도의 의승둔이다. 1711년(숙종 37)에 북한산에 산성을 건축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각 도에서 승려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의승’이라고 칭하면서 북한산성에 上番케 하였다. 1754년(영조 30)에 徵番制度를 폐지하고 番錢을 대납시키면서, 북한산성에 근무하는 승려로 하여금 이를 대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성질은 대체로 ‘軍根田’과 같다. 의승을 설치한 당시의 총수는 372명이고,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 강원 6도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1894년에 폐지되었다.

의영고[義盈庫] 【補】 기름, 꿀, 황납, 소물, 후추 등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의정부[議政府] 【補】 都堂이다.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다스리며 음악을 다스리고 방국을 다스린다.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각 1명(정1품), 左右贊成 각 1명(중1품), 左右參贊 각 1명(정2품), 舍人 1명(정4

품), 檢詳 2명(정5품), 司錄 1명(정8품)의 직원을 두었다.

의정부둔[議政府屯] 의정부둔은 전 의정부 소관 둔토로서, 조선 초에 본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 설정방법은 국유지를 하사하는 것이다. 의정부둔은 1769년(영조 45)에 그 소관 둔세를 균역청에서 대신 거두게 하고 그 대금을 연례의 수입으로 하였다. 1894년에 의정부를 ‘內閣’으로 개칭하고 그 소관 둔토는 탁지부의 관리로 옮겨졌으나 실제로는 징수되지 않고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내장원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이갑읍[二甲邑] 평안남북도에서만 사용한 명칭으로 그 기원은 소상치 않다. 단갑 8군 이외의 각 군을 말한다. ‘단갑읍’ 참조.

이아[貳衙] 관찰도 소재지의 군아를 이아라고 한다.

이은[吏隱] 은결의 일종이다. ‘은결’ 참조.

이전[里田] 소위 마을 소유의 토지로서, 그 수확은 마을주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된다. ‘동산’ 참조.

※ 관련용어: 이산[里山], 이답[里畓]

이조[吏曹] 육조의 하나이다. ‘육조’ 참조.

이청[吏廳] 작청과 같다. ‘작청’ 참조.

인병미경전진전[因病未耕全陳田] 경작자가 병 때문에 경작 못하고 경지를 황폐시킨 경우를 말한다.

인석전[茵席塵] 깔개·돛자리 종류를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인신직청[印信直廳] 【補】 감사가 출입할 때에 印信을 담은 상자를 운반하는 일을 관장하는 곳으로, 1894년 전후에는 서울의 각 아문에 있었다. 지방에서는 흔히 ‘通引’이라고 하였다.

※ 관련용어: 통인[通引]

일경[日耕] 일경이란 農牛가 하루에 갈 수 있는 토지 면적을 말하고, 보통 밭에 대한 면적의 계산 단위이다. 지방에 따라 다소 그 면적이 다르나 대략 600평 내외이다.

일리[一里] 조선의 1리는 일본의 3町 51間(≒420m)에 해당한다.

일사칠궁[一司七宮] 일사칠궁의 명칭 및 소재지는 ①內需司: 서부 夜照峴, ②壽進宮: 중부 壽進洞, ③明禮宮: 서부 貞洞, ④於義宮: 북부 社稷洞, ⑤毓祥宮: 북부 壯洞, ⑥龍洞宮: 중부 수진동, ⑦宣禧宮: 북부 玉洞, ⑧景祐宮: 북부 玉洞이다. 일사칠궁에 부속한 전토를 ‘궁장토’라고 한다. ‘궁장토’ 참조.

【補】 일사칠궁이란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 어의궁, 육상궁, 용동궁, 선희궁, 경우궁의 통칭이다.

1. 내수사는 개국 초부터 설치되어 왕실에서 필요한 미포 및 잡물, 노비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서부 야조현에 있다.

2. 수진궁은 중부 수진동에 있다. 이 궁은 齊安大君(睿宗 元子)의 私邸로 대군이 돌아가신 후에 그 祠版을 여기에 봉안한 이래 봉작을 하지 못한 王子大君 또는 미혼의 公主, 翁主 및 嗣續이 없는 後宮 등의 제사를 모두 여기서 봉향하는 것이 항례가 되었다. 그 재산은 후년에 황후가 사용하는 內帑에 이속되었다.

3. 명례궁(전 慶運宮)은 서부 皇華坊에 있다. 원래 황후가 사용하는 내탕에 속하는 것으로 창설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선조 때 한번 回鑾한 흔적을 남기신 뒤에 다시 復御하셨다. 후년에 仁穆王后도 여기로 물러나셨다.

4. 어의궁은 처음에 중부 慶幸坊에 있었으나 후에 서부 仁達洞으로 옮겨졌다. 인조의 사저였으나 후에 황후가 사용하는 내탕에 이속되었다.

5. 육상궁은 북부 白岳山 밑에 있다. 淑嬪 崔氏(英祖의 私親)의 제

사를 봉향하는 곳으로 영조대에 창설되었다.

6. 용동궁은 당초 서부 황화방에 있었으나 지금은 중부 수진동에 있다. 明宗의 첫아들인 順懷世子の 舊宮이었으나 후에 황후가 사용하는 내탕에 이속되었다.

7. 선희궁은 북부 順化坊에 있다. 英嬪 李氏(莊祖[思悼世子]의 私親)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으로 1762년(영조 38)에 창설되고 ‘義烈廟’라는 명칭이 있다. 1788년(정조 12)에 선희묘로 개칭됨에 따라 여기를 선희궁이라 부르게 되었다. 1860년(철종 11)에 이것을 폐지하고 육상궁과 합병하였으나 1897년(광무 1)에 다시 건설하였다.

8. 경우궁은 당초 북부 桂洞에 있었으나 후에 북부 옥동에 옮겨졌다. 綏嬪 朴氏(순조의 사친)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으로 1823년(순조 23)에 창설되었다.

※ 관련용어: 궁사[宮司], 내수사[內需司]

일역전[一易田] 격년으로 경작하는 토지를 말하고 또는 ‘間年耕’이라고도 한다.

※ 관련용어: 역전[易田]

일토양세[一土兩稅] 동일한 토지에서 이중으로 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舊記를 보면 1710년(숙종 36)에 羅州郡 智島面 押海, 長山, 慈恩 세 섬에 목장을 설치하고 지도면민은 소유지의 결세를 종래처럼 호조에 납부하는 대신에 賭稅로서 司僕寺에 납부하도록 하여 목장 경비에 충당하였다. 그 후 1895년에 목장이 폐지됨에 따라 사복시가 관할하던 사무는 모두 궁내부에 인계되고 도세 역시 궁내부에서 징수하였다. 그런데, 이듬해인 1896년에 이르러 탁지부가 전해에 목장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그때까지의 결세를 납부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백성은 일토양세의 무거운 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입안[立案] 증명 이외에 인가, 허가 또는 기타의 指定을 입안이라고 한다.

입전[立塵] 옛날에 純絹物 따위를 판매한 점포를 가리키지만, 오늘날은 목면류도 판매하게 되었다. 육주비전의 일종이다.

입지[立旨] 입지란 관청이 내려준 증명서의 한 종류이다. 조선에서는 조상 전래의 토지와 건물에는 文券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에 신청하여 이에 대한 증명을 받아서 문권에 대응하였다.

(ㄱ)

자호[字號] 양안에 토지의 번호로서 사용된 천자문의 문자를 말하고, 1字 내에 5결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天자부터 시작하여 5결이 되면 다시 地자를 붙이는 것과 같다. 만약 1 郡의 총결수가 5,000결 이상이 되고 천자문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는 다시 天자 1호부터 시작한다. 이 때는 뒤의 天자 위에 2, 3 따위의 숫자를 붙이거나 前後 문자를 붙여서 구별한다.

작도장[作導掌] 작도장은 조선 세종 때에 창설되었다. 각 宮司의 소속 토지의 수입액에 대하여 10분의 3 내지 6을 定額으로 삼아 각 궁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액수를 아직 궁을 세우지 않은 王子, 大君의 私用に 충당한 것이었는데, 그 후 왕실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작도장으로 하급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이설도 있다. 즉 <臨時財產整理局의 調書>에서는 작도장을 “導掌으로 만들다”로 뜻을 풀이하여 ‘작도장’이라는 특수한 도장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작부[作伏] 작부는 과세의 객체를 査定하여 징세의 기초를 확정하는 수단이다. 지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 해의 作況 및 作付地籍을 조사하여 각 개인의 납세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만들고 각 洞마다 ‘井

記'(납세자 및 결수를 기재하여 官印을 찍은 것으로 납세통지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작성한다. 이것을 ‘出秧’이라고 하고 그 사무 전체를 ‘작부’라고 한다. 작부라는 말은 종래 8결마다 佃夫 중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자를 골라 이들에게 徵稅事務를 취급시키기 위하여 徵收夫에 임명한 것에 기인한다.

작지[作紙] 작지는 戶曹 및 서울의 各倉 관리(人夫를 말함)의 雇價(賃錢)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각 군에서 稅穀을 수납할 때 郡마다 쌀 60석, 콩 100석 이상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徵收하였는데 그 수납청 및 정가는 다음과 같다.

수입청명칭	정 가	비 고
호 조	5 석	단, 수납의 元穀米 60석, 콩 100석을 넘어도 정가 외로 加捧할 수 없다. 쌀 60석, 콩 100석에 미치지 않을 경우는 그 석수에 따라 減捧한다.
군 자 감	2 석	
광 흥 창	2 석	
풍 저 창	2 석	

작청[作廳] 【補】 각 吏屬들이 회합하여 국세징수의 사무를 취급한 곳으로 지방관아의 하나이다.

※ 관련용어: 이청[吏廳]

장교청[將校廳] 【補】 장교를 두고 군무를 관장한 곳이다.

장목전[長木廬] 목재, 목관류를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장색[匠色] 【補】 工匠, 皮匠, 柳匠의 따위를 말하고 賤民의 일종이다.

장악둔[掌樂屯] 장악둔은 전 掌樂院 소관 둔토로, 장악원은 聲律의 교열을 관장한 관청이다. 국초부터 설치된 것으로 본원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이에 부속시켰다. 1895년(개국 504)에 장악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 소관둔토는 궁내부에 이속되었다. 이후 궁내부에서 宣禧宮으로 옮겨졌는데 1901년(광무 5)에 다시 經理院으

로 이속되었다. 동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장용둔[壯勇屯] 전 장용영둔으로 1793년(정조 17)에 장용영을 신설하고 軍餉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양향둔과 동일하다. 장용둔을 설치할 당시에 양향청의 소관둔토 중에서 공주 등 15읍 소재 전답 1545결 30부 7속을 이속하였다. 1802년(순조 2)에 장용영이 폐지되자 그 소관 각 둔은 각 관청에 移付되었다.

장원서둔[掌苑署屯] 전 장원서 동산으로 장원서는 園囿花果를 관장한 관청이다. ‘장원서 東山’은 과목과 화초를 재배하고 과실을 供上하기 위하여 국초부터 설치된 것으로, 경기도[畿甸] 각 군에 과목과 화초를 심기에 적합한 땅을 골라 外東山을 정하여 東山直을 두고 그로 하여금 심을 수 있는 花木을 채택하고 또 토산 과실을 적납케 하였다. 장원서 동산을 설치한 당초의 목적은 위와 같았으나 후에 관리의 감독이 이완해지고 재배의 방법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 땅이 황폐해지자 전답으로 起耕된 것도 적지 않았다. 1882년(고종 19)에 장원서는 司饗院과 합병되고 후에 사옹원이 폐지되자 종래 소관한 토지는 공상 각 司田과 함께 궁내부 種牧課에 이속되었으나,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내장원에서 이를 查執하였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장전[長田] 驛에 역장을 두고 그 사무를 統理시켰는데 그 봉급, 수당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전토를 주었다. 이를 ‘장전’이라고 한다.

장충단[獎忠壇] 서울 남부 南水洞에 있다. 전쟁에서 사망한 장군과 병사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文獻備考》에 “1900년(광무 4) 9월에 장충단을 남수동에 설치하고, 증 군부대신 충의공 고 부령 홍계훈, 고 진남영 영관 엄도희, 고 무남영 영관 이경호를 주향하게 하고, 고 통위영 대관 김홍제, 고 장위영 대관 이학승, 고 진남영 대관

이종구를 종향하게 하며, 봄과 가을에 제사지내는데, 모두 전망한 사졸에게 배식하여 술을 바친다.”⁵⁶⁾라고 되어 있다.

장표[掌標] 일종의 면장이다. 1750년(영조 26)에 선세를 개정하였을 때 장표 없이 行商을 한 자는 선박 및 재화를 몰수하고 선주는 流刑에 처하였다.

장흥고[長興庫] 방석과 기름종이[席子 油菴紙地] 등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서부 積善坊 長興洞에 있다.

재상전[災傷田] 천재 때문에 재해를 당하여 평년의 수확을 얻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재역전[再易田] 3년마다 한 번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강원도 지방에서의 화전에 그 예가 많다.

※ 관련용어: 간년경[間年耕]

재인[才人] 【補】 기예,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일종의 천민으로 전라도에 많다.

재인청[才人廳] 【補】 재인이 음악을 연주하는 곳으로 그 건물은 보통 군아의 부속물이다.

저전[楮田] 제지의 원료인 닥나무를 심는 밭을 말하고 조선 초부터 정부는 닥나무의 수요가 많은 것을 알고 닥나무의 적산지를 골라 이를 식재하여 제지의 원료로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1600년대부터 전도 일반에 ‘찬공’(물품 공납)의 제도를 폐지하고 ‘大同’(논 1결당 쌀 조선의 되 12두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저전의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저전은 고래로부터 계속 여전히 면

56)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今上光武四年九月，設獎忠壇於南水洞，以贈軍部大臣忠毅公，故副領洪啓薰 故鎮南營領官廉道希，故武南營領官李璟鎬主享，以故統衛營隊官金鴻濟，故壯衛營隊官李學承，故鎮南營隊官李鍾九從享，春秋享祀，并以戰亡士卒配食致酌”；上-832면.

세로 되어왔다. 저전이 많은 곳은 전라, 경상, 충청 및 황해의 4도인데 그 군별 및 장소, 본수 등은 현재 미상하다.

저치미[儲置米] ‘상정미’ 참조.

적전[籍田] 적전이란 왕실 특유의 親耕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이것을 설정한 목적은 국왕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여 일반 백성에게 그 모범을 보이고 勸農과 耕食을 장려하려는 취지인 것 같다. 《文獻備考》에 “고려 성종 때에 비로소 적전을 두었다. 983년(성종 2) 봄 정월에 왕이 환구에서 祈穀하여 태조를 배향하고, 몸소 적전을 갈아 신농을 제사지내어 후식을 배향하였다. 기곡하고 적전하는 예는 이것이 처음이다.”⁵⁷⁾며, 또 “서적전은 개성부 동쪽 20리에 있는데, 마을은 ‘典農’이고 官廨는 ‘馨香閣’이라 한다. 창고가 있는데 제사에 쓰는 각종 곡식을 저장한다. (중략) 동적전은 동교 10리에 있는데 또한 ‘전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즉 선농을 제사지내고 친경하는 땅이다. 관혜는 ‘苾芬閣’이라 한다. 창고가 있는데 제사에 쓰는 각종 곡식을 저장하고, 종묘 이하의 ‘무시별제’의 粢盛 및 종묘의 ‘六穀薦新’에 바치도록 하였다.”⁵⁸⁾라고 되어 있다.

전[田] ‘부田’이라고도 한다. 소위 일본의 밭에 해당하고 곡류 및 채소류를 재배한다. 황해도 瑞興, 谷山, 遂安 지방에서는 주로 밤을 재배하고 강원도 지방에서는 마 및 담배를 재배하는 곳이 많다. 담배를 재배할 때는 가장 좋은 전을 고르는데, 이들을 특히 ‘南草田’ 또는 ‘煙草田’이라고 한다.

전[殿] 보통 왕실 건물의 뜻으로 왕이 거주하는 곳 또는 왕이 잠자는 곳을 말한다. 곳에 따라 客舍를 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칭

57) 《增補文獻備考》 권62 <禮考 9> “高麗成宗 始置籍田. 二年春正月, 王祈穀于園丘, 配以太祖, 躬耕籍田, 祀神農, 配以后稷. 祈穀籍田之禮始此”; 上-813면.

58) 《增補文獻備考》 권62 <禮考 9> “西籍田, 在開城府東二十里, 村曰典農, 有官廨曰馨香閣. 有庫貯祭用各穀 … 東籍田, 在東郊十里, 亦名典農, 卽祀先農, 親耕之地, 有官廨曰苾芬閣, 有庫貯祭用各穀, 以供宗廟以下無時別祭粢盛及宗廟六穀薦新”; 上-814면.

이 아니다. 그 건물 및 부지는 왕실유 또는 국유이다.

전권[田券] 밭의 문기를 말한다.

전당[典當] 일본에서의 質權, 抵當權을 합친 것과 같은 것으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物上擔保權이다.

전당포[典當鋪] 일본의 소위 質屋이다. 단, 그 차이는 동산 이외에 토지, 가옥 등 부동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점이다.

전묘위토[殿廟位土] 향사의 비용 기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殿, 廟, 陵, 園, 墓에 부속시킨 일정한 토지로서,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제실 또는 정부에서 매수, ②제실용 및 국유에서 이속, ③貴戚 또는 道臣이 헌상. 각 전, 묘, 능, 원, 묘위토는 당초 획급한 이후에는 다시 변동이 없었는데, 1897년(광무 1)에 이르러 궁내부 장례원에서 이를 조사하여 각 전, 묘, 능, 원, 묘위토를 균일하게 제정할 목적으로 位土가 부족한 곳은 부근에 소재한 각 驛土를 이부하였으나 결국 균일화되지는 못하였다. 그 관리는 종래 각 전, 묘, 능, 원, 묘의 관리자가 하고 타인은 간섭할 수 없었다. 1907년(광무 11)에 궁내부에서 이를 정리할 목적으로 각 享祀經費整理所를 설치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들 각 위토는 1908년(융희 2)에 칙령 제39조 『宮內府所管 및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 및 帝室債務의 整理에 關한 件』⁵⁹⁾에 의하여 국유로 이속되었다.

※ 관련용어: 능원묘위토[陵園墓位土]

전미[田米] 조, 수수를 말한다.

전생서둔[典牲署屯] 전생서둔은 전 전생서 소관둔토이다. ‘전생서’는 제사용 犧牲을 기르는 것을 관장한 곳으로, 국초부터 설치된 것이다. 1637년(인조 15)에 ‘司畜署’를 폐지하여 이것에 속하게 함에 따

59) 1908. 6. 25. 칙령 제39호; □□近代法(VI)□□, 491면.

라 희생만이 아니라 다른 가축도 기르게 되어 소·양 등의 방목 및 사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 둔토를 만들었다. 그 설정방법은 절수이다. 1894년에 전생서가 폐지됨에 따라 그 소관둔토는 궁내부에 이속되었으나 동부는 조사에서 이를 탈루하여 그 후의 연혁은 미상이다.

전설사[典設司] 천막 등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전세[田稅] 토지에 과한 조세이다. 고려 초까지는 田租의 범만 행해졌는데 1069년(고려 문종 23)에 이르러 전조 외에 전세를 정하여 1결마다 쌀 7승 5합을 징수하였다. 그 후 1277년(고려 충렬왕 3)에 공사전의 조세를 개량하여 전조는 水田의 경우 1결당 매조미쌀(현미) 30두, 旱田의 경우 1결당 황두(콩) 2두로 하고 전조와 전세를 나누었다. 조선 초에 이들을 합하여 같이 전세로 부르게 되었다.

※ 관련용어: 전조[田租]

전세[傳貫] ‘세가’ 참조.

전옥서[典獄署] 옥수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전의감[典醫監] 의약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전적[田籍] 토지면적, 소재지 등의 표시를 말한다.

전종[田種] 토지의 종목을 말한다.

정무사[靖武祠] 남부 明哲坊 光熙門 내에 있다. 1885년(고종 22)에 처음으로 건설되었는데 淸나라 欽差 吳長慶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정문[旌門] 정문은 효자·절부를 정표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으로, 대부분은 그 자손이 건설하거나 지방의 유지가 돈을 주렴하여 건설한 것이다. 그 소속은 일정하지 않다.

정전[井田]箕子 때에 井田制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소위 정전제하고 함은 어떤 토지를 아홉 개의 구역으로 구획하고 그 중앙의 한 개의

구역에서 생기는 수확을 관에서 취득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여덟 구역에서 생기는 수확은 이를 경작자가 취득하는 토지 이용방법으로, 그 중앙의 구역을 ‘公田’으로 하고 다른 8획을 ‘私田’으로 한다. 이것은 조선에서의 조세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正田] 매년 경작하는 토지의 뜻이고 상등급 전의 부류에 속한 것이다.

※ 관련용어: 불역전[不易田]

제언[堤堰] 수전 관개용으로 천연수를 모아두기 위하여 인공적 설비를 가한 장소로서, 조선 초에 이미 정부에서 각지에 제언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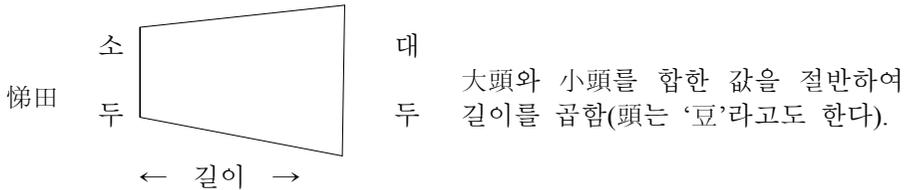
제언답[堤堰畓] 원래 제언이었던 곳을 함부로 경작하여 水田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당초 ‘제언사’를 두고 그 보호에 노력하였으나 1894년 이후는 점차 제언의 감독이 허술하게 되고 백성의 개간과 경작을 묵인하며 심지어는 내수사 또는 각 궁에서 허가를 얻어 경작하거나 그 경작지를 백성에게 대여하여 수조함에 이르렀다. 제언의 소재군명 및 그 명칭은 현재 자세히 알기 힘들으나 그 유명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황해도 연안군 남대지, ②충청남도 홍주군 영덕제, ③경상북도 함창군 공검치, ④전라북도 김제군 벽골제. 이상은 각지 제언 중 큰 것으로 지금도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주위 4리(일본 리)에 달한 것이 있다. 지금 가령 각지의 제언의 면적을 평균 5정보로 계산하면 3,695곳의 총면적은 18,475정보에 달한다. 그 基地에 대한 지세는 면제되었다.

제언사[堤堰司] 조선 초에 각 도에서 제언을 관리케 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아이다. 각 도 제언의 소재장소나 숫자 등을 각 군에서 각 도로, 각 도에서 이를 제언사로 보고하는데, 파손된 곳은 봄과 가을

에 수축하고 제방 내에서 함부로 경작하는 것을 엄금함으로써 그 보호에 노력하였다.

제전[祭田] 제전은 고려왕조에서의 四王廟의 제사용으로 부속시킨 토지로서, 그 하나인 崇義殿은 경기도 마전에 있다. 《經國大典》에 “송의전의 제전은 12결”⁶⁰⁾이라고 되어 있다.

제전[梯田] 양전할 때에 형상에 따라 명명한 토지의 명칭으로 小頭 [上底]와 大頭[下底]를 더한 값을 절반하여 길이를 곱하여 면적을 구한다(사다리꼴).



조[租] 과거 세제의 하나로서 논에 과하는 것을 말한다.

조[調] 호에 과하는 조세이다. 상고의 세제의 하나이다.

조경묘[肇慶廟] 조선왕조의 시조의 발상지로서 전라북도 전주에 시조를 숭경하기 위하여 1771년(영조 47)에 건설한 것으로, 전주에 있는 경기전의 북쪽에 있다.

조지서[造紙署] 【補】 왕실용 종이, 자문지 등 여러 용지를 제작한 곳으로 彰義門 밖 蕩春臺에 있다.

종계전[宗契田] 조선에서는 옛날부터 조상을 존중하고 그 제사가 끊이지 않기를 위하여서 동족들이 서로 모아 돈을 출연하고 계를 조직해서 그 계금으로써 전답을 구입하여 그 수입을 조상의 제사의 비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구입된 전답을 종계전이라고

60) 《經國大典》 <戶典> [諸田] 『祭田』 “崇義殿 十二結”

하고 그 관리는 보통 동족 중에서 宗家에 해당하는 자가 담당하였으며, 그 처분을 할 때에는 동족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 관련용어: 종계답[宗契畓], 종계산[宗契山]

종묘[宗廟] 종묘는 조종의 신위를 봉안하는 장소로서 ‘太廟’라고도 하고 동부 蓮花坊 廟洞에 있다.

종묘서[宗廟署] 【補】 宿衛 및 寢廟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太廟 내에 있다.

종친부둔[宗親府屯] 전 종친부 소관둔토로서 ‘宗親府’는 列聖御譜와 임금의 초상[御眞]을 공경스럽게 모시면서 황실의 일을 관장하는 관아이다. 국초부터 설치된 것으로, 이들 일체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토를 설치하였다. 그 토지는 제실에서 하사된 것이다. 1895년(개국 504)에 종친부를 ‘宗正院’으로 개칭하여 궁내부에 이속하고 그 둔토를 ‘종정원둔’이라고 칭하였다. 1907년(융희 1)에 종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 소관둔토는 제실재산정리국에 옮겨지고 동국에서 이를 정리하였다.

좌고[坐賈] 일정한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을 말한다.

주창[州倉] 옛부터 각 주에 설치된 結米收納 창고이다.

죽전[竹田] 죽전은 조선 초기에 왕실용 푸른 대나무[靑竹] 및 군기용 화살대[箭竹] 등의 공급을 위해서 특별히 대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땅을 골라 관리를 파견하여 대나무를 심고 기른 토지로서, 그 토지를 관죽전으로 하고 지세를 면제하였다. 官竹田은 삼남 및 강원도 영동지방에 많았다고 하는데 그 군명 및 장소 숫자 등은 미상하다. 처음에는 죽전에서 賭稅로서 청죽 및 전죽을 상납케 하여왔는데 1894년(개국 503)에 이 상납이 폐지된 후부터는 궁내부 내장원에서 代錢을 정하여 죽전세로서 징수하였다. 그 후 1907년(융희 1)에 이

르러 이 세의 징수사무는 탁지부 소관으로 옮겨졌다.

※ 관련용어: 관죽전[官竹田], 청죽전[靑竹田]

중도지[中賭地] 중도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小作에서만 보이는 관습이다. 주로 논에서 보이고 밭에는 보이는 예 드물다. 중도지에서의 직접적인 借地者는 소위 ‘中畝主’로 지주에 대하여 차지권을 가지는데, 그 차지권은 지주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반면에 그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든지 타인에게 임대하든지는 완전히 자유로 지주의 승낙을 얻을 필요는 없다. 실제 대체로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므로 중도지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도지는 모두 無期限이고 중답주가 지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지주는 임의로 借地權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만약 지주가 이를 소멸시키고 싶으면 매수할 수밖에 없는 반면 중답주는 언제나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중답주의 지주에 대한 의무는 매년 정한 차지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이를 ‘元賭地’라고 한다. 그 액수는 수확의 4분의 1을 통례로 하고 흉작의 경우는 그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修繕에 대해서는 대수선은 지주의 비용으로 하고 기타는 중답주의 부담이라고 한다. 중답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는 보통 소작의 경우의 지주와 소작인 관계와 차이가 없고, 중답주가 거두는 소작료를 ‘中賭地’라고 한다.⁶¹⁾

증필[證筆] 증인이 스스로 붓을 들고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문기면에 ‘執筆’이 없고, 증인을 증필로 명칭을 바꾸고 매도인과 連署한다.

지계[地契] ‘지권’ 참조.

지계아문[地契衙門] 구 量地衙門으로서 토지측량을 관장하는 관아이다. 1901년(광무 5)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61) 이 부분은 앞의 관습조사보고서의 제35문 “永小作權”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앞의 역서, 187-193면).

지권[地券] 1901년(광무 5)에 ‘지계아문’을 두고 전국에 지계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1903년(광무 7)에 충청남도 및 강원도의 일부에 시도하였으나 취소되었다. 또 별도로 外國人 居留地 및 거류지 밖 10리(대한제국 척도) 내의 땅에 대하여 지계를 발행하였다.

※ 관련용어: 지계[地契]

지목[地目] 옛 조선에서는 지목으로서는 단순히 田뿐이고 이것을 水田과 旱田으로 구분한 듯하다. 최근에는 田畓의 두 가지로서 모든 것을 이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즉 田陸의 稻田, 牟田(보리), 雜穀田, 蘆田, 火田, 柴田, 岱土, 果田, 楮田, 松田, 竹田, 鹽田, 桑田, 基田(官有建物敷地, 市場敷地 등), 기타 답이 아닌 토지는 모두 이를 밭에 편입하였다. 현재는 畓, 田, 宅地 및 雜地의 4 지목으로 한다.

지빙[持憑] 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 옛말이다.

지상선[地上船] 부근의 일정한 장소만 운행하는 작은 배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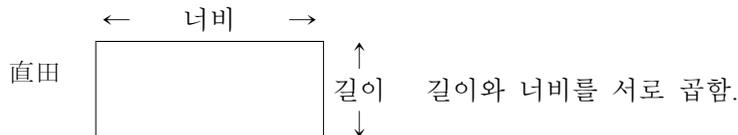
지인청[知印廳] ‘통인청’ 참조.

지자청[持者廳] 【補】 京司의 公牒을 거행하는 일을 관장한 곳이다.

지주[持主] 토지와 건물의 현재 소유자의 뜻이다.

직로[直路] 평안도 中和에서 義州에 이르는 종전에 청나라 사절이 왕래한 도로를 말하고, ‘직로 12군’이란 그 연도의 각 군을 지칭한다.

직전[直田] 토지를 측량할 때 토지의 형상에 의하여 명명한 것으로, 길이와 너비를 곱하여 면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직전[職田] 직전이라고 함은 官職位階 기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왕실이 일정한 전토를 사급한 것으로 소위 食祿田이다. 이

제도는 667년(신라 문무왕 7)에 文武百官에게 일정한 전토를 사여한 것에서 시작하여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렀다. 《經國大典》에 “王子大君 225결, 君 180결, 正1품 110결, 宗1품 105결, 正2품 95결, 宗2품 85결, 正3품 65결, 당하관 正3품 60결, 宗3품 55결, 正4품 50결, 宗4품 45결, 正5품 40결, 宗5품 35결, 正6품 30결, 宗6품 25결, 正宗7품 각20결, 正宗8품 각15결, 正宗9품 각10결”⁶²⁾이라고 되어 있다.

진두[津頭] 渡船場을 말하고 종래 조선에서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官船을 갖추어 鎭別將을 두고 방비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진두는 보통 國有不課稅地이다.

진둔[鎭屯] 진둔은 전 各道와 各鎭의 둔으로, 과거 조선의 군제는 兵馬, 水軍의 兩節度使를 두고 군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또 연도 연해의 요충지에 鎭堡를 설치하여 산성을 쌓아 僉使, 萬戶, 權管, 別將 등의 邊將을 두고 방어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 각 진의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진둔을 설치한 것이다. 국전에 의하면 巨鎭에는 전 10결, 鎭에는 전 5결을 정급하였는데 후에 정식 없이 설치된 것이 생겼다. 그 방법은 각 병영둔과 같다. 1895년(개국 504)에 각 진보가 폐지됨에 따라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 대신의 관리에 속하였는데 당시 탁지부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1897년(광무 1)에 이르러 군부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같다.

진무영둔[鎭撫營屯] 진무영둔은 전 江華留守營屯이다. 1700년(숙종 26)에 강화부에 유수를 두고 鎭撫使라고 칭하고 군향 및 기타 경비

62) 《經國大典》 <戶典> [諸田] 『職田』 “○大君二百二十五結 王子君一百八十結 ○一品正 一百十結, 從 一百五結 ○二品正 九十五結, 從 八十五結 ○三品堂上官 六十五結, 正 六十結, 從 五十五結 ○四品正 五十結, 從 四十五結 ○五品正 四十結, 從 三十五結 ○六品正 三十結, 從 二十五結 ○七品正 · 從 各二十結 ○八品正 · 從 各十五結 ○九品正 · 從 各十結”

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매수, ②타관에서 이속. 1895년(개국 504)에 진무영이 폐지되자 그 소관둔토는 總理營屯처럼 궁내부 내장원에서 관리하였는데 1900년(광무 4)에 이르러 경선궁에 이속되고 그 후 1908년(융희 2)에 경선궁 소속 부동산이 국유로 이속됨과 동시에 탁지부의 관리로 옮겨졌다.

진부둔[津夫屯] 조선 초부터 국도에 해당하는 渡津에 渡船을 두고 ‘진부’(뱃사공의 뜻)를 정하여 관리의 여행을 편리하게 한 것으로 진부의 급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부둔’을 설치하였다. 진부둔은 국전에서 大渡는 10결 50부, 中渡는 7결, 小渡는 3결 50부로 정하고, 그 설정방법은 각 관둔과 같다. 진부둔은 1895년(개국 504)에 지방 제도가 개정되었을 때 이를 감독한 관리가 없었으므로 저절로 폐지되었는데,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내장원에서 이를 조사하여 賭稅를 결정하였다. 동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진어영둔[鎭禦營屯] 진어영둔은 전 春川留守營屯이다. 1888년(고종 25)에 춘천부를 승격시켜 유수영을 설치함에 따라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他廳으로부터의 이속이다. 1895년(개국 504)에 진어영이 폐지되자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의 소관에 옮겨졌는데 1901년(광무 5)에 이르러 궁내부 경리원에 환속되었다. 동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같다.

진연단위전[津淵壇位田] 진연단은 하늘 또는 山川 등을 제사지내는 장소로서 그 제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토지를 ‘진연단위전’이라고 한다.

진영둔[鎭營屯] 진영둔은 전 각 道營屯이다. 일찍이 조선 인조 때에 鎭營將을 각 도에 두어 討捕使를 겸임케 하고,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그 설정방법은 자세하지 않으나 모두 屬公(국가에 귀속함)된 토지였다. 1895년(개국 504)에 각 진영이 폐지되어 그 소관둔토는 귀속하는 곳이 없었는데, 1897년(광무 1)에 이르러 군부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동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진전[陳田] 起墾과 未墾,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묻지 않고 황폐된 전답을 말한다.

진휼청둔[賑恤廳屯] 전 진휼청 소관둔토로 진휼청은 서울과 지방의 救恤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그 둔토는 구휼자금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공한지 축언, ②매수. 진휼청은 선혜청의 부속관아이므로 그 소관둔토를 또한 ‘惠屯’이라고 한다. 1894년(개국 503)에 선혜청의 폐지와 함께 진휼청도 같이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각 둔과 같이 내장원으로 옮겨졌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같다.

※ 관련용어: 혜둔[惠屯]

집도[執賭] 전지의 소유자가 매년 지배인을 현지에 파견하여 벼의 결실의 정도를 순찰하고 賭額을 결정하는 것이 집도이다. 이는 미리 수확고를 추산하여 田地를 매매할 경우에 친족 등 관련자 등이 문기를 위조하여 실제 면적을 속이는 것과 같은 간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사청[執事廳] 【補】 장령을 받들어 檢飭, 巡牢의 일을 관장한 곳이다.

집필[執筆] 집필은 단순히 붓을 들고 문기를 작성한 자의 명칭으로, 일본의 代書人, 公證人과 같이 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다. 우연히 당사자의 의뢰를 받고 하는 것이고 문기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책임도 없다.

(ㄷ)

차사원[差使員] 징세를 위하여 서울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收稅吏를 뜻한다.

참봉청[參奉廳]【補】 참봉이라는 관을 두고 史庫의 수직을 통할한 곳이다.

채전[菜田] 보통 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대에 접속하거나 가대의 부근에 존재하는 밭이고 주로 채소를 재배하는 용도로 제공된 토지를 말한다.

책방[冊房]【補】 군수의 비서의 대기소로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천반포락[川反浦落] 강가 등의 토지로서 하수 범람 때문에 유실되어 흔적이 없는 것을 말한다.

※ 관련용어: 포락지[浦落地]

첩문[帖文] ‘체문’ 참조.

청둔[廳屯] 청둔은 전 각도, 각읍의 鄉廳(鄉長), 將校廳(巡校), 通引廳(給仕), 使令廳(使傭), 官奴廳(使童) 등의 각 둔토로, 각 청의 경비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각 청의 공공재산으로 매수, ②관찰사 및 군수의 의연금으로 매수, ③범죄인에게서 몰수 및 무주전답을 귀속. 각 청둔은 종래 당해 청에서 관리하여 소관관청에서 간섭하지 않았다. 1895년(개국 504)에 지방제도를 개정하였을 때 각 청둔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으나 1897년(광무 1)에 이르러 일부는 군부에서 조사하고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다시 궁내부 내장원에서 조사하였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청성묘[淸聖廟] 황해도 海州 동문의 밖에 있고 伯夷와 叔齊를 제사지내는 곳인데 이 주에 首陽山이 있기 때문이다.

청죽전[靑竹田] ‘죽전’ 참조.

청직[廳直] ‘통인청’ 참조.

체문[帖文] 일종의 허가장이다. 조선에서는 고래로부터 인삼의 私賣를 금지한 결과 체문 없이 매매한 자는 潛商律로 논하고 그 인삼은 모두 몰수하였다.

※ 관련용어: 첩문[帖文]

초장[草場] ‘시장’ 참조.

※ 관련용어: 초평[草坪], 시장[柴場], 시산[柴山]

총리영둔[摠理營屯] 총리영둔은 전 水原 留守營屯이다. 1793년(정조 17)에 수원부에 유수영을 설치한 이후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매수, ②다른 관청에서의 이속, ③閑曠地의 축언. 健陵, 隆陵 및 華寧殿의 수리 및 기타 수호 등을 장리하였을 때부터 그 소관둔토를 ‘香炭屯’이라고 하였다. 또 총리영이 화성(수원성)에 있으므로 ‘華城屯’이라고도 하였다. 1895년(개국 504)에 총리영이 폐지되자 그 소관둔토는 궁내부 내장사에서 관리하고 1896년(건양 1)에 내장원에서 선회궁에 이속되었다가 1901년(광무 5)에 다시 내장원에 환속되었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 관련용어: 향탄둔[香炭屯], 화성둔[華城屯]

총융둔[摠戎屯] 전 총융청둔이고 1624년(인조 2)에 ‘총융청’을 설치하고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미상하다. 처음에 長湍, 積城의 閑曠地에 백성을 모아 논을 개간·경작하여 백성의 身役을 면제하고 농우를 주었으며, 경

작에 따라 도세를 징수하게 되었고, 그 후 다른 관청의 소유로 이속된 경우가 있거나 또는 본청에서 매수한 경우가 있어 명료하지 않다. 1881년(고종 18)에 총융청이 폐지되고 장어영에 합병되었는데 이듬해에 장어영이 폐지됨에 따라 총융청이 부설되었고 그 후 다시 ‘經理營’이라고 개칭되었다. 이 개칭 이후는 그 소관둔토는 ‘경리둔’이라고 하였다. 1894년(개국 503)에 경리영이 폐지되고 군부에 속하게 됨에 따라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에 이속하게 되었다.

※ 관련용어: 경리둔[經理屯]

충훈둔[忠勳屯] 충훈둔은 전 충훈부 소관둔토이고 충훈부는 여러 功臣과 관련된 부서이다. 勳臣의 급여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초부터 이를 설치하였고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국유지의 하사, ②국사범인 재산의 몰수. 1894년(개국 503)에 충훈부가 폐지되자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의 관리에 속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이듬해부터 궁내부 내장원에서 관리하다가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모두 내장원으로 이속하였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취고수청[吹鼓手廳] 【補】 ‘취고수’를 두고 表文을 封進할 때 및 監司가 도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악기를 불고 등불[燈籠]을 관장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칠전[漆田] 옷나무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옷은 국내에 필요한 물품이므로 정부는 靑竹 및 옷나무의 재배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 조선시대 초기부터 칠전을 설치하여 그 재식·배양을 장려하였다. 황실용으로서는 정부는 해마다 일정한 옷을 상납케 하였는데, 17세기에 鄉貢이 폐지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大同米의 제도를 정하였으나 칠전은 고래로부터 그대로 면세되었다. 칠전은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및 평안의 6도에 존재하였는데 그 군별 장소 등은 자세하지 않다. 1899년(광무 3)에 내장원에서 국유지를 조사하였을 때 국유의 칠전을 조사하였으나 그 수는 미상하다.

(ㄱ)

칸[間] 가옥의 건평을 표시하는 단위로서 보통 8척 평방을 1칸으로 한다.

(ㄷ)

타작[打作] 병작과 같다. ‘병작’ 참조.

탈고신[奪告身] 과거에 稅米를 수송할 때에 漕運郡에서 發船期를 소홀히 하였을 때 당해 군수에게 부과한 일종의 懲戒罰로 일정기간 停職되고 징계 중에는 복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태[太] 퉁의 뜻이다.

태국신당[太⁶³國神堂] 《文獻備考》에 “개성부 서쪽 5리에 있다. 아라비아국 세자가 본국에서 원통하게 죽었으므로 신당을 세워 이에 제사지냈다.”⁶⁴라고 되어 있다.

토공[土貢] 그 토지에서 산출된 貢物이라는 의미로서 舊記에 “1410년(태종 10)에 貢案을 상정하여 여러 토공(베, 모시, 솜, 밀랍, 기름, 기타 잡물)을 각기 그 생산되는 읍민으로 하여금 京司에 직납시켰다.”⁶⁵라고 되어 있다.

통례원[通禮院]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궁중에 설치하고 朝貢, 祭祀, 贊謁 등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처음에 ‘閤門’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통례원이라고 개칭하였다.

※ 관련용어: 함문[閤門]

63) 《增補文獻備考》에서는 “大”임.

64) 《增補文獻備考》 권64 <禮考 11> “在開城府西五里, 回回國世子寃死於本國, 故立神堂以祀之”; 上-841면.

65) 《萬機要覽》 <財用篇 3> [大同作貢] “國初, 凡百土貢略倣麗朝之制, 太宗朝始定貢賦, 世宗朝又定貢案, 隨其邑產使土民直納京司矣”

통선[桶船] 모습이 통을 닮은 둥근 배를 말한다. 1750년(영조 26)에 각 도의 船隻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였을 때 정한 일종의 선명이다.

통영둔[統營屯] 통영둔은 전 統制營屯이다. 선조 때에 경상도에 통제사를 두고 경상, 충청, 전라 3도의 수군[舟師]을 통할하도록 하고 군향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통제사가 정부에 청원하여 贍餉庫를 두고 매년 別餉耗 1천석을 請得하여 買上·設屯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1895년(개국 504)에 통제영이 폐지되자 그 소관둔토는 탁지부의 관리에 속하였다가 1897년(건양 2) 固城地方隊에 이속되었고, 1899년(광무 3)에 다시 탁지부에 속하였다가 동년 다시 내장원에 이속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같다.

통인[通引] ‘인신직청’ 참조.

통인청[通引廳] 청직의 대기소이고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廳直’이라고 함은 오늘날의 급사이다.

※ 관련용어: 지인청[知印廳], 청직[廳直]

투탁도장[投託導掌] 內需司 및 各宮에 소속된 토지를 관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투탁도장은 그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다. 각궁, 司庄土의 結稅는 종래 면세된 예가 있으므로, 다액의 결세를 부담하고 있는 백성은 자기 토지의 면세를 기도하여 해당 전답을 각 궁이나 사에 投託하여 그 면세된 代金을 해당 궁, 사에 납부하였을 때 宮司에서는 그 전답을 매득한 것으로 호조에 보고해서 면세의 특전을 얻은 경우가 있었다. 또 우매한 백성이 그 소유전답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희망하여 해당 전답을 각 궁, 사에 투탁하여 면세를 기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토지는 외관상으로 소유권은 각 궁, 사에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백성의 사유이다.

(Ⅴ)

과[把] 벼 한줌을 과라고 하고 원래 수확을 헤아리는 표준이었다. 고래로부터 조선의 田制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헤아리고 토질의 良否에 따라 結負를 정하게 되며 이를 면적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하였다.

과발소[擺撥所] ‘발소둔’ 참조.

패전[牌田] 고래로부터 왕실에서 宮家 또는 공신에게 사급한 것으로 사패라는 문서를 주었다. 사패에는 永世히 전할 수 있는 것과 한 세대에 한정된 것이 있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奴婢土田賜牌式 教旨 惟爾某 有某功 將臧獲幾口 土田幾結 特賜賞 爾可傳永世者<割註: 只賜己身 則可傳永世者 改爾其受之> 年 月 日

노비토전사패식 교지 그대 아무개는 아무 공이 있어 노비 몇 구와 토지 몇 결을 특별히 그대에게 상으로 주어 영구히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한다<할 주: 단지 자신에게만 줄 때는 ‘영구히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한다’를 ‘너는 이를 받을지어다’로 고친다>. 년 [어보] 월 일 * 《경국대전》 <예전> [奴婢土田賜牌式]; 원문에 따라 수정하였음

※ 관련용어: 사패전[賜牌田]

패지[牌紙] 小作證書와 같은 것으로 지주가 경작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다.

作 子 某
 某面某洞某字<田幾日耕, 畝幾斗落> 契定作者 著實作事
 年 月 日 <田畝>主 某捺章 / 手決

경작자 아무개
 아무면 아무동 아무자<밭이면 며칠갈이, 논이면 몇 마지기> 계약으로
 경작자를 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일
 년 월 일 <밭/논> 주인 아무개 날인 / 수결

패지[牌旨] 패지란 奴僕에게 토지·가옥의 매각방법을 명한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그 문서에 의하면 마치 매도의 권한을 준 委任狀처럼 보이지만 종래의 관습에서는 노복은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것을 제시하여 買受人을 구하는데,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패지를 교부하고 이를 주인에게 알린 뒤에 주인의 승낙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방매문기를 작성하고, 여기에 문권을 첩부하여 대금의 교환과 함께 매수주에게 교부해서 매매를 끝낸다. 패지의 文例는 다음과 같다.

奴太云處
 無他 要用處 桃渚洞四巨里契在 垡田半日耕 果園林基地 并以 願買人處
 捧準價納宅是遣 本文記 并以 許給永々 放賣宜當事
 上典 李
 庚戌 十月 日

종 태운에게
 다름이 아니라, 쓸모가 있어 도저동 사거리계에 있는 집터와 밭 한나절
 갈이와 과수원 땅을 함께 사려는 사람에게 값에 준하여 나에게 바치고
 본문기와 함께 허급하여 영구히 방매하는 것이 마땅할 일.
 상전 이
 경술년 10월 일

패칙[牌飭] 패칙이란 각 공방에서 관찰사 또는 군의三公兄(吏屬의 長) 등에게 명령 또는 위탁할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로서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嘉山三公兄處

無他 本宮庄土在於本郡石浦洞 而泥生處之 狄島芦坂與黑鴨庄土 再昨年 既已 尺量推尋是在果

明溫公主宮 導掌魚容河 誣訴 該宮昨年秋收條盡爲奪去 猶有不足 本宮 導掌金景俊 捉囚本邑 期欲刑配云 豈有如許道理 茲以牌飭爲去乎 到卽 告于汝矣宮家 後以此意嚴飭 魚容河所奪穀 一々還推出給 於金景俊處 爲旆 魚漢段 嚴刑遠配 以杜後弊是遣 金景俊卽爲放送 宜當向事

丁亥 八月 日

景祐宮

가산 삼공형*에게

다름이 아니라, 본궁[景祐宮]의 장토는 본군 石浦洞에 있어 수해가 잦은 곳에 있는데, 狄島 芦坂[갈들]과 黑鴨[검은 오리]의 장토가 재작년에 이미 측량을 하여 찾았다.

明溫公主宮의 도장 魚容河가 거짓으로 고소하여 이 궁의 작년 가을 걷이를 모두 빼앗아 가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본궁의 도장 金景俊을 본읍에 잡아가두어 형벌로 유배를 보내려고 기도한다고 하니,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는가? 이에 패로써 엄히 申飭하오니 (이 패가) 도착하는 즉시 너의 궁가에 알려져 이후로 이 뜻으로 신척할 것이며, 어용하가 빼앗은 곡식은 일일이 되찾아 김경준에게 돌려주며, 어가눔은 엄히 형벌로 다스려 멀리 유배를 보내어 뒷날의 폐단을 막고 김경준을 즉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

정해년 8월 일

경우궁

* 삼공형: 조선시대에 고을에 소속되어 있는 아전들의 우두머리인 호장, 이방, 수형리

평시서[平市署] 1392년(조선 태조 1)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설치한 중앙관아로서 市廛의 단속, 도량형의 검사, 물가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관아이다.

폐사전답[廢寺田畓] 조선 초기에 각지에 國寺(願堂 및 造泡寺 등)를 건립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답을 사찰에 부속시켰는데 국사가 폐지된 후 각 국사에 부속된 전답은 다시 국유로 하였다. 이들 부속전답에는 당초부터 지세를 면제하여왔는데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내장원에서 이를 조사하여 賭租를 징수하였다. 그 이후의 연혁은 각 둔토와 같다.

포단[醕壇] 포신(災害의 신)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文獻備考》에 “조선왕조의 포단은 마보단과 단을 같이하고 포신을 제사지낸다.”고 하며, 또 “각 도에서 충재가 발생하면 예조에서 계품하여 향·축·폐를 해당 관사로 하여금 내려보내게 하고, 각각 그 도의 중앙에 단을 설치하여 날을 가려서 설행한다.”⁶⁶⁾라고 되어 있다.

포둔[砲屯] 포둔은 전 各道 各郡의 砲軍屯이다. 원래 수군과 육군의 편제는 정연하였으나 연대가 오래되어 점차 훈련의 제도가 해이해지고 이런 군대로서는 도저히 불우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하므로 1863년(철종 14)에 海警이 있었을 때부터 각 도군의 砲手(사냥군)를 선발하여 군적에 편입하고 이를 ‘別砲軍’이라고 하였다. 포군의 급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둔을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公有地의 이속(폐지된 서원토의 종류), ②민유지의 속공(부민의 기부). 1874년(고종 11)에 포군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관둔토는 각 도와 군에 이부되었으나 경기 沿海의 각 둔토에 한하여 海防營(京營)에 이부되었다. 각 도군에 이부된 것은 아무 변

66)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10> “本朝醕壇, 與馬步同壇, 享醕神 … 各道有蟲災, 則禮曹啓稟, 香祝幣令該司下送, 各其道中央設壇, 卜日設行”; 上-829면.

혁 없이 1895년(개국 504)에 이르러 탁지부의 관리에 속하였으나, 당시 조사를 하지 않아서 1897년(광무 1)에 군부에서 조사하였다. 1897년 이후의 연혁은 각 둔과 같다. 해방영에 이부된 것은 1888년(고종 25)에 해당 영이 폐지됨에 따라 親軍營에 移附되었는데 1894년(개국 503)에 친군영이 폐지됨에 따라 궁내부 내장사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내장사에서 관리한 포둔은 경선궁에 이속되어 通津 소재둔만 1907년(융희 1)에 각 둔과 같이 징수사무를 탁지부에 위탁하였다가 후에 국유로 이속되는 것과 함께 탁지부의 관리로 옮겨진 것은 각 둔과 같다.

포락지[浦落地] ‘천반포락’과 같다. ‘천반포락’ 참조.

포량미[砲糧米] 1866년(고종 3)에 沁營(강화부)에 포군을 신설하고 군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결에 대하여 종래의 田稅, 大同, 三手米 이외에 경기 및 삼남에 한하여 水田, 旱田을 통하여 1결당 쌀 1두씩을 과징하였다. 이것을 포량미라고 한다.

포청[捕廳] 捕校를 두고 跟捕·警務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外廳은 邑廳에 소속한 관아이다.

풍사단[風師壇] 바람신의 제단이다. 《고려사》에 “풍사단은 높이가 3척이고 사방으로 섬돌을 냈다. <중략> 국성(개성)의 동북 영창문의 밖에 있고, 입춘 후의 丑日에 제사를 지낸다.”⁶⁷⁾라고 되어 있다.

피한[皮漢] ‘백정’이라고도 하고 소·양·돼지·개를 도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천민이다.

※ 관련용어: 백정[白丁]

필가[筆價] ‘고복채’ 참조.

67) 《高麗史》 권63 <禮 5> [吉禮小祀] “風師壇, 高三尺四出陛 … 在國城東北令昌門外, 立春後丑日祀之”

(ㅎ)

학계[學契] 지방의 유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논, 밭을 구입하고 그 수확으로 契員의 자제의 교육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組合과 같은 것이다.

학전[學田] 成均館, 四學, 鄉校 및 賜額書院에 부속시킨 토지를 말한다. ‘향교전’ 참조.

한림원[翰林院] ‘승정원’ 참조.

한전[旱田] ‘田’과 같다. 밭을 뜻한다.

합문[閤門] ‘통례원’ 참조.

해서[海西] 황해도의 별칭이다.

해포[海埔] 해안의 갯벌로 이를 매립함으로써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된 것을 말한다.

행심[行審] ‘양안’ 참조.

향교[鄉校] 옛 성현을 제사지내고 또한 유생이 講學하는 장소로서 각 府·郡에 설치된 것으로 그 부지는 묘와 같이 국유불과세지이다. 향교는 大成殿, 明倫堂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성현의 영위를 봉안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후자는 유림이 정시에 모여서 경학을 익히는 곳이다.

향교전[鄉校田] 鄉校 및 文廟에 부속된 學田을 말하고 그 수익으로 문묘 또는 향교의 경비에 충당한 것이다. 그 성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문묘에서 구입한 것, 유림이 기부한 것, 군수 등이 기부한 것이 있다. 향교전의 소속에 대해서는 종래 여러 설이 있

다. 향교의 소유 또는 문묘의 소유로 주장한 설이 있고, 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 충청남도 公州에서는 일찍이 향교의 소유로서 이에 과세한 적이 있었다. 또 定州 郭山지방에서는 향교전을 ‘鄉土’라고 하고 군수가 대대로 관리해왔으므로 일반백성은 이것을 군유지로 생각한 것 같다. 1910년(융희 4) 4월에 學部令으로 『**鄉校財産管理規則**』⁶⁸⁾이 발표되자 향교의 재산은 부윤, 군수가 관리하고 그 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매년 그 수지예산을 만들어 道長官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 관련용어: 학전[學田]

향사당[鄉射堂] 【補】 士林이 활쏘기를 익히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향청[鄉廳] 【補】 향청은 고려의 제도에 따라 조선 초기에 각 府, 郡, 縣에 설치한 것으로 처음은 ‘留鄉所’라고 하고 후에 가끔 이를 폐치하다가 1489년(성종 20)에 제도를 개정하여 향청으로 부르고 座首, 別監 등의 직위를 둔 이래 이를 답습하였다. 1896년(건양 1)에 지방제도를 개정하였을 때 향청을 폐지하여 鄉長을 두게 되었다. 향청의 직무의 주된 것으로는 ①풍속을 규찰하는 일, ②수령의 자문에 응하는 일, ③상의를 하달하고 민의를 상달하는 일 등이다. 그 조직은 오로지 지방 토착 인사로 구성되고 군의 기강을 유지하고 민속을 바로잡으며 백성의 이익을 대표하여 지방관의 專橫을 견제하고 상하의 의사를 소통하여 관민의 융화를 기하며 수령을 보좌하여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등 중요한 地方自治機關으로 볼 수 있다.

향탄둔[香炭屯] ‘총리영둔’ 참조.

향탄산[香炭山] 【補】 제향에 필요한 땃감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 陵, 園, 墓에 부속시킨 일종의 位田이다. 당초에는 ‘山監’, ‘山直’ 등을 두고 산림의 보호·禁養에 노력하였는데, 후에 기강이 이완해지면서

68) 1910. 4. 28 學部令 제2호; □□近代法(IX)□□, 415면.

遠隔地는 物納을 폐지하여 金納으로 하고 火田을 기경하는 등 점차 황폐되어갔다.

허결[虛結] ‘無土結’과 같다. ‘무토결’ 참조.

혈소청[歇所廳] 【補】 각 營 각 郡의 吏胥[아전]의 대기소로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협선[挾船] 傳馬船의 뜻이다. 조선시대 중엽에 일종의 船稅를 신설해서 선척을 점검·낙인하고 船籍을 작성하여 수세하던 것에서 나온 선명이다.

형방청[刑房廳] 【補】 사송, 형옥 등의 일을 관장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혜둔[惠屯] ‘진홀청둔’ 참조.

혜민서둔[惠民署屯] 혜민서둔은 전 惠民署 藥田이다. 혜민서는 의약의 공급과 서민의 치료를 관장한 관청으로 조선 초에 이를 설치하고 약초를 재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부속시킨 것으로 그 種 藥田에는 고래로부터 과세하지 않았다. 1882년(고종 19)에 혜민서가 폐지된 후 그 소관둔토가 어느 관청으로 이속되었는지는 문서로 알 수 없으므로 오늘날 자세히 알지 못한다.

호고둔[戶庫屯] 관찰부시대에 小吏에게 급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찰부의 경비로 구입한 토지를 말한다.

호마고둔전[戶馬庫屯田] 원래 관찰부에 배치된 馬匹을 기르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찰부의 경비로 구입한 토지를 말한다.

호마청[戶馬廳] 【補】 각 처에서 왕래하는 공용의 마필·마부 등의 일을 관장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호방청[戶房廳] 【補】 농지의 형태, 관개시설의 수시 수리 및 세금납부의 검칙, 結政·穀政을 관장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호수[戶首] 조선 초기에 설치된 租稅徵收을 위한 하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田 8結에서 1夫를 내고 佃夫 중에서 성실·근직한 자를 골라 戶主로 정하고 8結 내의 납세액을 수납시키고 이를 ‘矣(주비)’라고 속칭하였다. 그 후 기강이 弛廢됨에 따라 군수의 전단으로 8결 1부에 한하지 않거나 전부가 근직한지 관계없이 結數가 많은 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백성은 이 ‘주비’의 부역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납부액을 곧바로 납부한 후 이 부역을 다음의 미납 多結者에게 轉位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호조둔[戶曹屯] 호조둔은 전 호조 소관둔토로서(호조는 후의 度支部이다) 각 능, 원, 묘의 祭官의 여비와 각 궁방의 祭需의 공급 및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1803년(순조 3)에 각 능, 원, 묘의 祭官의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왕실에서 내수사 소관 중의 전주, 익산 및 남해의 삼읍둔전의 하부, ②각 궁방의 폐지에 따라 해당 각 궁방의 소관토지의 이속, ③매수. 그리고 이것 이외에 戶曹屯이 있다. 그것은 종래 호조에서 과세한 각 군의 蘆田 및 火田과 각 궁사에서 이속한 노전 및 화전이다. 호조는 1894년(개국 503)에 탁지부로 개칭되고 그 소관둔토 역시 탁지부에 속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호패[號牌] 【補】 한국에서 처음으로 男丁에게 호패를 준 것은 1390년(고려 공양왕 2)이다. 이후 500여 년간 폐지하거나 부활하거나 수많은 변천을 거쳤다. 가장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존치되었지만, 1880년대부터 점차 이폐되어 드디어 1894년 갑오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호포[戶布] 戶稅의 전신으로 고래로부터 수많은 변천을 거쳤다. 1871년(고종 8)에 洞布를 ‘호포’로 개칭하고 물납을 폐지하여 호마다 3냥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1894년(개국 503)의 갑오개혁 때 다시 1호

당 3냥으로 증가하여 봄과 가을 두 번 징수하기로 하고, 이듬해 9월에 법률 제15호로 『地稅 및 戶布錢에 關한 件』⁶⁹⁾을 공포해서 납세액 및 납세기를 정하였다. 이 개혁에서 새로 호수를 조사하지 않고 종래의 戶總에 따라 징수함에 따라 隱漏戶가 매우 많았고 또 漢城 및 각 觀察道, 郡衙 소재지에서는 고래로부터 부역을 많이 과해왔으므로 이 세를 면제하였다.

※ 관련용어: 호포전[戶布錢]

혼인계[婚姻契] 지방의 유지가 규약을 만들어 서로 돈을 출연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그 수익으로 계원의 자녀의 혼인의 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각 지방마다 행해진 것은 아니다.

화성둔[華城屯] ‘총리영둔’ 참조.

화전[火田] 산지의 초목을 태워 경작하는 것으로 주로 조, 메밀류를 재배한다. 전답이 적은 산간지방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많이 볼 수 있다. 강원도 春川, 金城, 金化 지방에서는 도로에 가까운 산야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개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피전[樺皮塵] 염색의 원료인 염분류를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환구단[圜丘壇] 광무황제가 卽位大典을 행한 곳으로 구 南別宮이라고 부르는 남부 會賢坊 小公洞에 있다. 《文獻備考》에 “1897년(광무 1)에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이끌고 황제에 즉위하기를 상소하니, 임금께서 마침내 9월 17일에 환구단에서 천지에 대해 함께 제사하였다. (중략) 동지와 설날에 곡식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예를 행하여 정전으로 삼았다.”⁷⁰⁾라고 되어 있다.

69) 1895. 9. 5. 법률 제15호; □□近代法(I)□□, 560면.

70) 《增補文獻備考》 권54 <禮考 1> “今上三十四年, 議政沈舜澤率百官, 上疏請卽皇帝位, 上遂以九月十七日, 合祀天地于圜丘 … 行冬至及元日祈穀祭之禮, 以爲定典”; 上-722면.

환모[還耗] 고래 조선에서 중요한 수입이었던 三稅(田, 軍, 還)의 하나이다. 舊記를 보면 “고구려 때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官穀을 내고 각 民戶數의 다소에 따라 차등 있게 賑貸하고, 그 해의 10월에 환납하도록 한 예가 있다. 그 후 조선 초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각 도에 義倉을 두고 官곡을 저축하여 散斂의 법을 시행하고, 이를 還上[환자]라고 하였다. 그 후 참새나 쥐로 인한 감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元穀에 대하여 10분의 1을 취하는 예를 만들어 이를 ‘耗’라고 하였다.”⁷¹⁾라고 되어 있다.

환퇴[還退] ‘권매[權賣]’ 참조.

활인서둔[活人署屯] 전 활인서의 소관둔토이다. 활인서는 한성 내의 병자의 구호를 관장한 관청으로 조선 초기부터 설치되었고,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것을 설치하였다. 활인서는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고 폐지 이후의 소관둔토가 어느 관청에 속하였는지는 불명하나, 1894년 이후에는 한성에 있는 것은 宮內府가 관리하였으며 지방에 있는 것은 탁지부가 관리하다가 1899년(광무 3)에 이르러 내장원에 이속되었다.

황첩[黃帖] 옛날 인삼상인이 강계군(인삼의 산지)에 내려갈 때 호조가 ‘황첩’이라는 것을 발급하고 일정한 세를 징수한 것으로, 황첩은 오늘날의 印紙에 상당한 것이다. 그 세율은 황첩 1장당 전 3냥이다.

획급[劃給] 배급의 뜻이다. 舊記에 “각 도·군은 수요를 적당히 헤아려 획급하고 남은 것은 각 군에 저장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한다.”⁷²⁾라고 되어 있다.

71) 《萬機要覽》 <財用編 3> [糶糴]. “高句麗故國川王時, 每年三月至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少賑貸有差, 至十月還納, 以爲式. 此爲糶糴之始也. 國初因麗制, 各道置義倉, 以穀斂散, 是謂還上... 還穀之有耗, 本爲雀鼠耗, 而取於民什一, 以補其縮之謂也.”

72) 전거를 찾을 수 없지만, 《萬機要覽》 <財用編 3> [大同作貢] 『各道劃給』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훈둔[訓屯] ‘양향둔’ 참조.

훈련둔[訓練屯] 훈련둔은 전 訓練都監屯土이다. 1593년(선조 26)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양향청을 두고 군향 및 기타 복장·기계 등의 마련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본도감에서 별도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그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閑曠地를 절수, ②매수. 훈련도감은 1881년(고종 18)에 폐지되고 武衛營에 합병되었는데, 이듬해 무위영을 폐지하고 다시 훈련도감을 복설한 뒤 얼마 안 되어 다시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그 소관둔토는 親軍營에 이속되었다. 훈련둔은 친군영에 이속됨으로써 ‘親屯’으로 개칭되었는데 1894년(개국 503)에 친군영이 폐지됨에 따라 탁지부에 이속되었다.

훈련원[訓練院] 원래 군사의 試才, 무예의 연마, 武經習讀의 일을 관장한 곳으로 남부 明哲坊에 있다. 《文獻備考》에 “1392년(태조 1)에 훈련원을 두었다. <중략> 군사의 시재, 무예의 연마, 무경습독의 일을 관장하였다.”⁷³⁾라고 되어 있다.

훈련청[訓練廳] 【補】 군사의 무술연습소로서 지방관아의 일부이다.

흡창청[吸唱廳] 【補】 흡창은 사환과 같은 것으로 약간 상급이다. 흡창청은 그 대기소이다.

※ 관련용어: 급창청[及唱廳]

73) 《增補文獻備考》 권226 <職官考 13> “本朝太祖元年, 置訓練院 … 掌軍士試才·鍊藝·武經習讀之事”; 下-635면.